ISSN 2005-3959

韓國服飾

第35號

단국대학교
石南善紀念博物館

韓國服飾

第35號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차 례

조선시대 어진(御眞)과 어의(御衣) 박 성 실 | 난사전통복식문화재연구소 | 4

명대(明代) 황제 예복의 착장법[穿着法] 연구
–황제의 면복(冕服)과 상복(常服)을 중심으로– 자오렌상 | 중국사회과학원 | 36

일본 근대 황실전통의상의 구성과 착장에 대하여 우에키 도시코 | 분카가쿠엔대학 | 70

한국복식 발간 규정

조선시대 어진(御眞)과 어의(御衣)

박 성 실
난사전통복식문화재연구소

논문요약

어진은 왕의 초상화, 예진은 왕세자의 초상화를 말하여 어의는 어진과 예진에서 예복으로 착용하고 있는 관복과 관복 속에 입은 평상의대를 의미한다. 어의 복원 대상은 태조와 영조 익선관본 어진, 익종(효명세자)의 면복본 어진, 철종의 군복본 어진, 고종의 통천관본 어진 등이다. 조선 전기의 관복은 주청과 사여를 통하여 명 친왕제 관복제도를 수용하였으며『국조오례의서례』에 도설(圖說)로 남겨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명의 멸망과 함께 후기에는 조선식의 관복제도가 정비되었으며 대한제국시기에는 황제의 관복제도를 시행하여 황제국의 위상을 갖추었다. 어진 관련 의궤들이 남아있으나 복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복 관련 고증 자료는 면복의 현의와 중단을 제외하고 유물자료는 남아있지 않아 관찬사료를 이용하였다. 평상의대 부분은 국상 시 염습의대 기록에 근거하였으며 유물은 불복장 유물과 왕가의 후손 출토복식을 참고로 하였다.

태조의 청포 곤룡포, 홍정옥대, 흑화 일습의 어진은 명 황제의 고명(誥命)을 받기 이전 사신을 맞이할 때 길의장(吉儀仗) 차림이며 곤룡포-답호-철릭-저고리-바지(개당고형)-한삼-속바지(합당고형)-백말로 일습을 갖추었다.

영조의 홍포 익선관본 어진은『국조속오례의보서례』도설과 유물은 선조의 후손 밀창군과 탐릉군의 출토유물과 영조 염습의대를 참조하였다. 곤룡포-답호-중치막-장유(장의)-바지-고의-백말로 일습을 갖추었다.

익종(추존)의 7장 면복(왕세자용) 어진은 관찬자료, 도설자료, 임오년 발기, 현의와 중단 유물 등을 참조하였다. 현의-백사중단-창의-장의대(장유)-저고리-바지(동의대)-한삼-고의-백말-적말로 일습을 갖추었다.

철종 군복본 어진은 선행연구와 관찬자료, 궁중자수본, 탐릉군 출토배자, 국말 유물, 궁중발기, 철종 염습의대 등이 참조되었다. 용보부착 쾌자(전복)-용보부착 동다리(협수)-배자(협수전복)-장유-바지-한삼-고의-백말로 일습을 갖추었다.

고종 통천관복 어진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진과 사진을 참조하고 관찬자료,『대명회전』『대한예전』,「예복」, 1938년 장서각 문서, 염습의대 등을 참조하였다. 강사포-백사중단-전복-주의-저고리-바지-한삼-고의로 일습을 갖추었다.

어진의 어의 복원은 처음 시도된 것으로 시작의 의미를 두고 추가로 보완될 것이다.

주제어 : 어진, 어의, 태조, 영조, 철종, 익종, 고종

I. 머리말

어진(御眞)은 왕의 초상화를 말하며 어의(御衣)는 외의(外衣)로 입은 관복(冠服)과 관복 속에 입혀진 평상복 의대(衣襨)를 포함하는 광의(廣義)의 의미로서, 이 글에서 편의상 명칭이다.

투고일 : 2016. 4. 15 심사개시일 : 2016. 4. 20 심사완료일 : 2016. 5. 2 게재확정일 : 2016. 5. 13

의대는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을 포함하는 적통의 평상복을 명칭하며 국초 태상왕[태조]의 의대부터 확인된다. 조선시대 어진은 또 한분의 왕으로 예우하였으며 어진을 이봉(移奉)할 때는 왕의 의장을 갖추었고 화재로 인하여 어진을 봉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소복을 입고 거애한 기록도 보인다. 어진 제작은 국왕 생존시 그려지는 도사(圖寫), 승하 이후에 그려진 추사(追寫), 기존본을 범본으로 하여 신본을 그릴 때는 모사(模寫)로 구분된다. 어진을 도사할 때에는 "一髮不相似, 卽非其人"[1] 이라 하여 터럭 하나라도 닮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그려져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어진은 복식 유물은 아니지만 관복의 부속제구를 포함한 착장된 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고증자료이다. 현재 박물관에 소장된 관복 유물들이 모두 대한제국시기의 황실 유물임을 감안할 때는 더욱더 높게 평가된다. 『선원전 영정수개등록』(1935)에는 봉안된 어진이 총 46점에 이르렀다고 하나 한국전쟁으로 부산에 피신해 보관 중이던 어진이 대부분 전소되었고 현재는 일부만이 남아있다.

지난해 말 국립고궁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보존처리를 마친 어진과 진전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특별전을 개최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2] 금번 전시에서 조선시대 왕의 관복본 어진 5본과 대한제국시기 황제 익선관본 어진 3점이 공개되었다. 태조 어진 익선관본 청포본(국보 제317호)과 홍포본, 영조 어진 익선관본(보물 제932호), 익종(효명세자)어진 면복본, 철종 어진 군복본(보물 제1492호), 고종황제 어진 익선관본 황포본 2점과 순종황제 어진 익선관본 황포본 등이다. 익종 어진과 철종 어진은 반소(半燒)된 상태로 남아 있다. 금번 어의 복원 대상은 태조 익선관본 청포본, 영조 익선관본, 익종 면복본, 철종 군복본과 금번 특별전에 전시되지는 않았으나 고종의 통천관복을 포함하였다. 이 글은 어의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착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Ⅱ. 관복의 수용과 제도적 완성

조선의 관복제도는 명(明) 제도에 준하였으며 공민왕 19년(1370) 명 태조로부터 왕, 왕비, 배신의 관복이 처음으로 사여되었다. 공민왕(1330-재1351-1374)은 집권 말기 원의 세력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명과의 외교문제를 논의하고자 17년(1368) 원의 황제가 상도(上都)로 피신했다는 소식에 백관들을 모아 대명 외교를 논의하기에 이른다.[3] 1369년 명 태조는 부보랑(符寶郞) 설사(偰斯)를 보내 보새(寶璽)와 비단, 친서를 내렸으며 황제로 등극한 사실과 연호를 홍무(洪武)라 한 내용을 글로 써서 알려왔다.[4] 1370년 공민왕 19년 5월 태조 고황제는 공민왕에게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 금인(金印)과 함께 봉사조근지복(奉祀朝覲之服)으로 9류면(九旒冕) 9장복

1) 仁宗實錄 인종1年 3月 25日. 領議政尹仁鏡等, 奉審大行大王影幀于書筵廳…古人云: '一髮不相似, 卽非其人'.
2)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전』, 2015.12.8.-2016.2.14. 어진, 어진화사, 어진제작 과정과 관리 등 관련자료들이 제시되었고 전공 부분 논문 조선미 「조선왕실의 어진」, 안선호 「조선시대 진전건축과 운영」, 김세은 「조선시대의 진전의례」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어진의 어의를 심도있게 관찰해 볼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원본을 보지 않고 복원이 완료된 상태였으나 반소된 익종 어진의 경우와 같이 새로 제작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여 원본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3) 高麗史 卷28, 恭愍王 17年 9月. 王聞元帝奔上都, 會百官, 議通使大明可否.
4) 高麗史 卷28, 恭愍王 18年 4月. 太祖高皇帝遣符寶郞偰斯賜璽書及紗羅段匹…今年正月, 臣民推戴, 卽皇帝位, 定有天下之號曰大明, 建元洪武.

(九章服)일습, 수군신조하복(受群臣朝賀服)으로 7량원유관(七梁遠遊冠) 강사포 (絳紗袍)일습을 사여하였다. 태조비 효자황후(孝慈皇后)는 공민왕비에게 7휘2봉관(七輝二鳳冠)과 심청색 9등적의(九等翟衣) 일습의 관복을 보내왔다. 이와함께 군신(群臣)이 제사지낼 때 입는 관복도 함께 사여하였는데 모두 중조에 비해 2등을 낮춘 제도로 조정된 것이었다.[5] 이 제도는 조선시대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우왕 13년(1387) 5월에는 설장수가 명나라에 입경하여 황제에게 의관(衣冠) 문제로 2차에 걸쳐 표문(表文)을 올렸으며 국왕의 조복과 제복, 배신의 제복은 등급에 따라 하사 받았으나 편복은 아직 고제로서 고치지 못하고 있다하자 황제는 설장수(偰長壽)에게 사모(紗帽)와 단령(團領)을 내려주었으며 이를 입고 귀국하여 비로서 중국의 의관제도를 알게 되었다고[6]한다. 명 황실의 관복 사여(賜與)는 관복의 의례적 가치 이전에 외교 정책의 일환이었다. 한국의 관복 역사는 당 태종 22년, 신라 진덕여왕 2년(648) 김춘추(金春秋)가 입당(入唐)하여 당 의례를 청하고 의대(衣帶)를 사여받아 중국 의관(衣冠)착용하기 시작하면서[7]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과는 지정학적인 관계속에서 중국 왕조의 교체에 따라 관복의 사여가 이루어졌고 명대에 이르기까지 관복의 외교는 지속되었다. 관복 안에는 전통적인 우리옷을 입어 2중적인 구조를 형성하였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유교국가를 표방하였으며 동양문화권에서 유교적인 의례는 수신과 치국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관혼상제는 국가의 대법이므로 국법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충신 효자 등 인륜의 도리를 권장하였다.[8] 반면 왕실은 정치적 권위와 사회질서 안정을 구현하고자 왕실 전례의 전범으로 고려에 이어 오례(五禮)를 규정하였고 행례시 필요한 왕의 관복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조선시대 왕의 관복은 대례복으로 법복(法服)인 면류관(冕旒冠)과 곤복(袞服), 조복(朝服)인 원유관(遠遊冠) 강사포(絳紗袍), 상복(常服)인 익선관(翼善冠) 곤룡포(袞龍袍)이며 그밖에 융복(戎服)이 있다. 『연경제전집』 전하복색에도 면복, 강사포, 곤룡포, 병사(兵事)를 볼 때 홍철릭, 특히 곤룡포는 황단에 참배시 흑원령포, 능 참배시 참포, 시조복 곤룡포로 구분하였다.[9]

명(1368-1644년)의 치세시 조선의 왕은 국초부터 즉위와 함께 황제로부터 고명(誥命), 인신(印信)을 사여받고 국정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미수고명(未受誥命)이면 왕으로 책봉될 때까지 임시로 왕을 대행하였으며 관복의 종류와 색상도 달리하였다.[10] 또한 외교문서에도

---

5) 高麗史 卷28, 恭愍王 19年 5月. 太祖高皇帝, 賜冕服. 圭九寸, 冕靑珠九旒, 靑衣纁裳九章, 畫龍·山·華虫·火·宗彝五章在衣, 繡藻·粉米·黼·黻·四章在裳. 白紗中單, 黼領靑緣袖襴. 蔽膝, 纁色, 繡火·山二章. 革帶, 金鉤艞, 玉佩. 赤白縹綠四綵, 綬, 小綬, 二間施金環. 大帶, 表裏白羅紅綠. 白襪赤履. 奉祀朝覲之服也.
恭愍王十九年五月 太祖高皇帝 賜遠遊冠七梁, 加金博山, 附蟬七首, 上施珠翠, 犀簪導. 絳紗袍, 紅裳, 白紗中單, 黑領靑緣袖, 裙, 襦, 紗蔽膝, 白假帶, 方心曲領, 紅革帶, 金鉤艞, 白襪黑舃, 受群臣朝賀服.
恭愍王十九年五月 太祖高皇帝孝慈皇后, 賜冠服. 冠, 飾以七翬二鳳, 花釵九樹, 小花如大花 之數. 兩博鬢九鈿, 翟衣靑質, 繡翟九等. 素紗中單黼領, 羅縠爲緣, 以紅色. 蔽膝如裳色, 領緣, 繡翟二等. 大帶隨衣色, 革帶, 金鉤艞, 珮綬, 靑襪, 靑舃.
恭愍王十九年五月 太祖高皇帝, 賜群臣陪祭冠服, 比中朝臣下九等, 遞降二等, 王國七等.

6) 高麗史 卷136, 列傳 卷第49, 禑王 13年 5月. 長壽叩頭, 聖旨, "如何? 你有甚說話麼?" 長壽奏, "臣別無甚奏的勾當, 但本國爲衣冠事雨次上表, 未蒙允許…國王朝服祭服·陪臣祭服, 都分著等第賜將去了, 只有便服不曾改舊樣子…長壽服帝所賜紗帽團領而來, 國人始知冠服之制.

7) 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志 第二 色服. 至眞德在位 二年, 金春秋入唐, 請襲唐儀 皇帝詔可之, 兼賜衣帶. 遂還來施行, 以夷易華. 三年, 春正月, 始服中朝衣冠.

8) 太祖實錄 태조1年 7月 28日. 一, 冠婚喪祭, 國之大法. 仰禮曹詳究經典, 參酌古今, 定爲著令, 以厚人倫, 以正風俗 一, 忠臣、孝子、義夫、節婦, 關係風俗, 在所奬勸.

9) 成海應, 研經齋全集外集, 卷五十六. 筆記類: 蘭室譚叢 殿下服色 上以冕服與祭. 以遠遊冠絳紗袍省誓莅. 以翼善冠黑圓領袍拜皇壇. 以翼善冠黫袍謁陵. 以翼善冠 袞龍袍視朝. 紅帖裏鬃笠視兵事.

10) 世宗實錄 135권, 五禮 凶禮儀式. 迎賜謚祭及弔賻儀…使者將至, 殿下具冕服, 未受誥命, 則雅靑團領袍、翼善冠、靑鞋、素玉帶.

권지국사(權知國事) 또는 권서국사(權署國事)로 기록하였다. 태조는 즉위와 함께 국호를 청하는 문서, 표문의 작성시 권지국사로 하였으며 태조 4년(1395)에도 고명과 조선국 인신을 청하였으나[11] 받은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후술 할 태조 익선관본 어진 청포본과 연관이 있다. 태종은 권서국사로 고명, 금인, 금인지를 받았다.[12] 이후 세종과 인종을 제외한 왕들이 짧게는 한달[인조] 길게는 해를 넘겨[광해군] 권지, 권서국사를 지냈다. 고명과 더불어 대사(大事)에 착용되는 법복[면복]의 주청(奏請)과 반사(頒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조 최초의 면복 사여는 태종 2년(1402) 건문(建文)황제였으나[13] 정난(靖難)의 변[14]으로 인해 건문제는 변란 중에 목숨을 잃었다. 태종 2년에는 영락제가 사신을 보내 홍무 35년 6월 17일 황제로 즉위하고 명년을 영락 원년으로 한다는 조서를 보냈다.[15] 이어서 3년(1403) 4월에는 영락제가 고명을 내린 것에 사례하고 건문제가 보낸 고명과 인장을 환납하였다.[16] 3년 10월에는 면복과 중궁의 관복, 태상왕의 표리 등이 일습으로 사여되었다.[17] 따라서 정상적인 대명 외교는 태종 3년 영락제의 즉위와 더불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조3년(1625) 사여된 고명과 면복을 마지막으로 명나라와의 관복 외교는 중단되었다. 한편 『국조오례의서례』(1474)에는 길례 면복과 가례 원유관복 일습을 도설로 남겨놓아 언제라도 제작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또한 내용 중에 부분적으로는 조선식의 제도를 반영하였다. 일례로 『국조오례의서례』 면복 일습에 방심곡령을 포함하였고 원유관복에는 방심곡령이 제외되어 있다.[18] 또한 장문(章紋)이 직성(織成)임에 반해 조선은 수(繡)와 회(繪)로 되어 음양으로 구분하였다.

명 · 청의 왕조 교체로 관복 사여는 중단되고 조선 중기부터 조선식의 관복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왕비의 법복은 인조와 계비 장렬왕후의 가례시(1638) 조선식의 적의(翟衣)일습 도설이 있다. 역대 『가례도감의궤』(1627-1906) 에는 간택된 왕비나 세자빈이 착용할 적의는 모두 새로 만들어 구체적인 기록을 남겼으나 왕의 면복, 강사포, 곤룡포 등 관복은 매일 또는 다양한 의례에 착용함에 따라 상의원에서 관리하였고 면복장인을 두어 필요시 제작하였다.[19] 때문에 가례시 의궤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숙종대와 영조대에 면복제도의 개정이 있었으며 부속제구를 연경에서 구매하여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20] 반면 혼례에 대한 과도한 사치가 문제되어 나라에서 본보기를 보이고자 영조대에 편찬된 『국혼정례』(1749), 『상방정례』(1750)에 구체적인 기록이 있으며 『국혼정례』 어제 권제에는

11) 太祖實錄 태조1年 8月 29日. …遣前密直使趙琳赴京進表曰: 權知高麗國事臣某言… 밀직사를 보내 태조가 즉위하게 된 사유를 알리는 표문에서 고려 권지국사라 하였다.; 태조4年 11月 11日. 遣藝文春秋館太學士鄭摠, 齎閑良、耆老、大小臣僚上禮部申, 赴京請誥命印章…今旣改號朝鮮, 表文仍稱權知國事…乞賜頒降國王誥命及朝鮮印信施行.

12) 太宗實錄 태종1年 6月 15日. …上服絳紗袍、遠遊冠, 受群臣賀…建文三年四月十五日, 準朝鮮國權署國事李咨…誥命一道, 朝鮮國王金印一顆, 四角篆文, 幷金印池一箇.

13) 太宗實錄 태종2年 2月 26日. 帝遣鴻臚寺行人潘文奎來, 錫王冕服.

14) "靖難之變"은 명 태조의 황태가가 요절하여 손자 건문제가 즉위하였는데 건문제 원년(1399) 8월 숙부인 연왕[영락제]이 반란을 일으켜 남경이 함락되고 1402년 7년 건문제가 실종되자 스스로 황제위에 올라 영락제가 되었다. 이 4년간의 政爭을 말한다.

15) 太宗實錄 태종2年 10月 12日. …朕以宗廟, 社稷之重, 已於洪武三十五年六月十七日, 卽皇帝位, 大赦天下, 改明年爲永樂元年.

16) 太宗實錄 태종3年 4月 21日. …遣右政丞成石璘、承樞府提學李原、藝文館提學李廷堅如京師. 石璘、原謝賜誥命印章也. 緻納建文所錫誥命印章.

17) 太宗實錄 태종3年 10月 27日. 朝廷使臣黃儼 · 朴信、翰林待詔王延齡、鴻臚寺行人崔榮至, 齎冕服及太上王表裏、中宮冠服、元子書冊而來….

18) 『國朝五禮儀序例』(1474) 吉禮 殿下冕服 도설은 『世宗實錄』 五禮 吉禮 序例 殿下冕服(依永樂元年賜與之制)이며 明 제도에 없는 方心曲領을 포함시켜 嘉禮와 吉禮에 착용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반면 『三才圖會』 황태자복에는 형태가 다른 방심곡령이 포함되어 있다.

19) 宣祖實錄 선조33年 11月 20日. …故平時尙方, 有冕服匠人云, 自此製造….

20) 英祖實錄 영조23年 2月 6日. 議定冕服制度…尙方舊有冕服圖, 乃皇朝所頒, 而制久多失, 組綬珮帶, 皆取貿燕市, 多不中式…; 19年 4月 14日. 肅宗三十九年大帶釐正時, 依古禮用深靑廣多繪, 後綬則用中國紅花錦. 上之二十二年禁紋緞後, 令尙方織造赤、靑、玄、縹、綠緞而無紋. 凡十五條下端網垂, 仍以後綬所織絲結之分爲三段.

『탁지정례』를 만들자마자 『국혼정례』를 완성하여 비용을 줄이자는 나의 의도가 이루어졌으나 '초의초식(草衣草食)' 교훈이 아직 뜻깊게 남아있기 때문이라 언급하고, …내 겨우 사치금지 한다고 무늬있는 비단만 금지하였으니 부족한 처사이다. …순(舜)임금도 성덕으로 곤면에 12장을 그렸으니 구장을 그리는 것은 합당한 문장(文章)이라 하였다.[21] 『상방정례』 왕세자 면복 자료에는 자수 자료는 생략되고 그림 자료가 있다. 따라서 본 행사의 익종 어진 장문은 모두 그려서 완성하였다. 그밖에도 왕의 관복은 국상(國喪)의 상기가 끝나면서 담제(禫祭) 후에는 면복, 곤룡포, 강사포를 상의원에서 새로 직조하여 만드는 관행이 있었다.[22]

고종 34년(1897) 대한제국의 성립과 황제국으로의 출발은 복식사적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대한제국(1897.10.12.-1910.8.29)은 고종과 순종 황제가 재위한 13여년의 단기 황조였으나 조선 500년간 지속된 제후국의 장수왕조에서 황제국으로 격상되면서 특히 관복은 황제의 위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조선은 명의 멸망 이후 명 제도에 준한 조선식의 관복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복식은 색상을 바꾸거나 문장(紋章)을 추가하여 가능하였다. 다홍 곤룡포는 황룡포로, 구류면 구장복은 십이류면 십이장복으로, 강사포는 중단 에서 격상되었다. 반면 황후의 법복인 적의(翟衣)는 조선식의 다홍 적의에서 명 황후의 심청색 12등 적의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복잡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한지를 청염(靑染)하여 적의본을 만들어 보았고[중요민속문화재 제67호], 이어서 금속사(金屬絲)와 색사로 적문(翟紋)과 봉문(鳳紋), 이화문을 제직하여 9등 적의를 만들어 보았다[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또한 1919년 1월로 예정되었던 영친왕의 가례는 고종의 승하로 연기되었으나 당시에 만든 윤황후의 심청색 12등 적의와 영친왕비의 9등 적의감을 일본에서 제직하여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 처음으로 12등 적의를 착용한 분은 명헌태후(1831-1903)[23]이며 이는 오례가례 납비의, 책비의를 따른 것이다. 그밖에 순종황제비 윤황후의 황원삼(중요민속문화재 제49호)이나 병오년(1906) 가례시 황태자비(윤비)가례시 홍원삼(중요민속문화재 제48호)은 모두 대한제국시기 조선식으로 새로 제정된 황후와 황태자비 상복(常服)이다. 고종황제는 황제로 등극하는 날 처음으로 12류면 12장복을 입었으며 황후와 황태자를 책봉하였다.[24] 통천관 강사포는 등극 다음날 황제 즉위에 대한 조서를 반포할 때 처음 착용하였다.[25] 황(룡)포는 등극일 하루 전에 진전(進展)에 갈 때 입었으며 다음해 진전 친행시부터 황룡포라 기록되어 있다.[26] 등극과 관련된 의례와 관복은 『고종대례의궤』에 구체적인 기록이 있다.[27] 대한제국의 관복은 조선시대 관복과 큰 차이를 보여 복식사적 시각에서는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은 구분되어야 한다. 고종황제의 대한제국이 없었다면 관복 유물은 존재할 수 없었다. 복식사적인 측면에서도

---

21) 국립문화재연구소(2007). 국역 國婚定例. 서울: 국학자료원. pp.21-23. 어제국혼정례권제 참조. 국학자료원 범례에는 매우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22) 承政院日記 숙종2年 6月 25日. …前頭顯宗大王禫祭後, 自上所御冕服·袞龍袍·絳絲袍, 令尙衣院, 豫爲織造. 경종2年 3月 25日. 영조2年 6月 15日. …禫後殿下所御冕服·袞龍袍·絳紗袍, 令尙衣院織造, …今亦依丙辰·壬寅年例, 勿設別廳. 정조2年 3月 6日. 고종17年 5月 15日. …自都監造成禫後自上所御袞龍袍·冕服·絳紗袍, 依前例, 令尙衣院預爲織造.

23) 明憲太后는 憲宗의 계비 孝定王后를 말하며 1897년 10월 14일 태극전에서 옥책과 금보를 받았다. 서울대학교규장각(2001). 高宗大禮儀軌 영인본.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pp.191-192. 皇太子妃朝謁 明憲太后儀 …皇太子妃具禮服加首飾, 明憲太后具禮服加首飾.

24) 高宗實錄 고종34年 10月 12日. …告祭禮成, 請卽皇帝位. 群臣扶擁, 至卽位壇, 金椅上坐. 舜澤進十二章袞冕, 加于聖躬, 仍奉進璽寶 …黽勉卽皇帝位 …冊王后閔氏爲皇后, 冊王太子爲皇太子.

25) 承政院日記 고종34年 9月 18日(양10月 13日). 巽時, 上詣太極殿, 卽皇帝位後頒詔親臨入侍時.

26) 承政院日記 고종34年 9月 16日(양10月 11日). 上與王太子詣眞殿, 展拜親行入侍時… 上具翼善冠·黃袍出齋殿, 황포라 하였고 다음해인 고종35年 9月 13日(양10月 27日). 진전 다례 친행시 上詣眞殿, 茶禮親行入侍時… 上具翼善冠·黃龍袍, 出齋殿, 掌禮導上入眞殿…

27) 서울대학교규장각(2001). 高宗大禮儀軌 영인본.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고종시대는 재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진 기록 중에는 어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관복을 제외하면 의대기록은 가례나 흉례 습의대에서 보인다. 그러나 역대 『가례도감의궤』(1627-1906)에 기록된 왕의 평상의대는 유철릭(襦天益) 유과두(襦裹肚), 유액주름(襦腋注音) 면포액주름(綿布腋注音) 장삼아(長衫兒) 단삼아(短衫兒) 유바지(襦把持) 단바지(單把持) 등 10여 점에 불과하다. 이 내용은 역대 가례시 왕의 평상의대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가장 이른 시기 왕의 국혼인 1638년 인조와 계비 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의 내용과 동일하다.[28] 약 3세기 동안의 평상의대 기록이 동일하여 형식적인 기록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 광해군의 중치막이나 파계사 성보박물관의 영조 도포는 동시대 사대부가 평상복과 형태나 소재가 거의 동일하여 이를 통하여 왕의 평상의대를 참조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생전에 어의를 사용한 염습의대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궁중발기」 및 공신의 초상화도 비교자료로 참조되었다.

Ⅲ. 익선관본 어진

익선관본(翼善冠本) 어진이란 곤룡포(袞龍袍)와 옥대(玉帶), 흑피화로 일습을 이루는 상복(常服) 일습을 말한다. 익선관은 익선관(翼蟬冠)으로도 명칭되었으며 『승정원일기』에는 영조대에 가장 많은 기록이 있다. 왕은 시사복(視事服), 왕세자는 서연복(書筵服), 왕세손은 강서복(講書服)이라 하였으며 지위에 따라 곤룡포의 색상, 보(補), 대(帶)의 재료와 문양에 차이를 보이며 대한제국에 이르러 황제 황룡포, 황태자는 홍룡포로 바뀌었다. 상복은 법복인 면복(冕服)과 조복인 강사포(絳紗袍)를 착용하는 의례 이외에 편복으로 착용하였다.[29] 상복은 조참(朝參)이나 상참(常參), 영칙서(迎勅書), 전시(殿試), 군례의 대열(大悅), 양노(養奴), 궁중연회 등 공식 행사와 거둥(擧動), 집무시 편복(便服), 수의[襲衣]로도 착용한 관복이다. 경우에 따라 용의(龍衣), 용포(龍袍), 곤의(袞衣), 곤복(袞服), 곤포(袞袍)등 다양하게 명칭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한 관찬사료에는 '袞冕'을 곤룡포와 면류관으로 번역한 사례가 많다. 이때 '곤'은 장복(章服)을 의미하는 곤의나 곤복으로서 곧 면복을 말한다.

역대 어진 기록 가운데 익선관본 어진이 22본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30] 명대 황제 초상화도 익선관본이 주류를 이룬다. 익선관 곤룡포 차림은 시사복으로서 착용 빈도가 가장 많아 익숙한 차림새이며 관복 중에서 가장 간편한 복장이 많이 그려졌다. 또한 원유관복이나 면복은 성복(盛服)으로서 영조는 50세에 처음 면복본을 그렸다.[31] 태조 어진과 영조 어진은 동일한 관복이나 익선관의 형태, 곤룡포의 색상, 깃의 형태, 직령[동정]의 형태, 용보의 문양, 옥대 색상과 착용 방법에 차이를 보이며 연잉군 초상이나 동시대 백관 상복의 소매너비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국조오례의서례』에는 국초의

28) 박성실(2011). 대한제국 황실의 적의제도. 고궁문화, 4.
29) 世祖實錄 세조5年 9月 7日. …袞龍袍則便服, 不可用於朝賀. 이밖에도 곤룡포를 편복으로 기록한 부분이 여러곳에서 확인된다.
30) 조선미(2015). 조선왕실의 어진, 『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표 3〉 어진 제작 도표 참조.
31) 正祖實錄 정조15年(1791) 9月 28日. 敎曰: 先朝寶齡五十歲御眞, 始具冕服. 予則今年姑未及先朝冕服之歲, 用絳紗袍.

면복과 원유관복 일습이 도설로 나와 있음에 반해 익선관 곤룡포는 영조대에 이르러서야 『국조속오례의보서례』(1751)에 처음으로 도설로 나와있다. 왕세손의 관복 일습을 거론하면서 함께 수록되었다.

1. 태조 익선관본 어진과 어의

경기전 태조 어진 청포 익선관본은 흑색 익선관, 청색 곤룡포, 담청색 조옥대(彫玉帶), 흑화로 일습을 갖춘 상복 차림이다. 청포는 조선의 왕세자 아청 곤룡포 색상과 동일하여 예외의 경우를 보인다. 이 문제는 숙종대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숙종은 태조 어진을 봉심하고 청색 곤의(袞衣)는 예복이 아닌데 국초에 청색을 숭상해서 그런 것인지 영부사에게 묻자 그도 고려에서 청색을 숭상하였고 선초는 고려와 멀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 응답하였다.[32] 그러나 왕의 관복은 정해진 제도가 있어 임의로 색상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국초 백관복에도 제도에 따라 청포는 3-4품관용이며 홍포 다음 신분에서 착용하여 이 해석은 옳지 않다.

태조는 재위 기간(1335-1408, 재1392-1398년)이 6년으로 길지 않았으나 개국시조로서 즉위 초부터 국가 의전(儀典)을 비롯하여 관복 제정에도 노력하였다. 곤룡포를 사여 받거나 제작한 기록은 없으나 이미 고려 인종(1123)도 상복으로 오사고모(烏紗高帽)에 소매가 좁은 담황색의 착수상포(窄袖紬袍)를 착용한 바 있고[33] 우왕 13년(1387)에는 설장수가 명 태조가 하사한 사모와 단령을 받아와 관복제도가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명제도에 근거한 상복을 착용하였을 것이다. 품계별 백관의 관복제도는 명년(1393) 정월부터 시행토록 하고[34] 다음 해 원단(元旦)에는 처음으로 관복을 갖추고 황제에게 정조 하례를 올렸다.[35] 이는 홍무 3년(1370)과 23년(1390) 상복(常服)제도와 홍무 26년(1393) 공복(公服)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즉위 3년 만에 새 궁궐을 짓고 태묘에서 선대 왕과 왕후의 제를 올릴 때 곤면(袞冕)을 입었고 이보다 앞서 4일에는 원유관 강사포를 입고 행례하였다.[36] 태조 7년(1398) 세자에게 친히 양위할 때도 왕[정종]은 면복, 강사포를 착용하고 행례하였다.[37] 정종은 2년(1400) 종묘에 전향(傳香)할 때 면복 입기를 청하였으나 사모와 단령으로 행례하였고 태종도 1년(1401) 고명을 가져오는 명 사신을 맞이할 때도 사모와 단령으로 맞이하고 고명을 받은 이후에 면복으로 개복하였다.[38] 공민왕 19년에 사여된 면복, 원유관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종 17년(1435) 성절사를 파견할 때 표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강사포의 사여가 없어서

32) 肅宗實錄 숙종14年 4月 8日. 上出往江郊, 祇迎太祖大王影幀, 陪入資政殿, 奉審後行酌獻禮. 上曰: "瞻拜影幀, 則所御袞衣色靑似非禮服, 而無乃國初服色, 尙靑而然乎?" 領府事金壽興曰: "人謂高麗尙靑云. 太祖朝去高麗未遠, 故或者用靑爲袞矣.

33)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七. 冠服, 王服 高麗王 常服 烏紗高帽 窄袖紬袍 紫羅勒巾.

34) 太祖實錄 태조1年 12月 12日. 都評議使司啓: "自明年元正, 始服朝制冠服. 許令禮曹詳定" 禮曹啓: "一品, 紅袍犀帶; 二品至判(閣)(閤)門以上, 紅袍荔枝金帶; 三四品, 靑袍黑角革帶象笏; 五六品, 靑袍黑角革帶木笏; 七品以下, 綠袍帶笏, 與五六品同. 靴皆用皂色."

35) 太祖實錄 태조2年 1月 1日. 丁未朔, 上率群臣賀帝正, 始服朝制冠服. 禮畢, 上坐殿受中外朝賀.

36) 太祖實錄 태조4年 10月 7日. 殿下卽位之三年, 定都于漢陽, 先建宗廟, 次營宮室, 越明年乙未, 親服袞冕, 享先王先后于新廟, '袞冕을 곤룡포와 면류관으로 번역하였으나 이는 袞服[章服]과 冕旒冠으로 冕服을 의미한다.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번역되어 있다. 4年 10月 4日. 上服 絳紗袍,遠遊冠, 乘象輅,百官具公服前導,至太廟外門行四拜禮.

37) 太祖實錄 태조7年 9月 5日. 世子改服絳紗袍遠遊冠,卽王位,受百官賀禮…冕服率百官,上父王尊號曰上王.

38) 定宗實錄 정종2年 12月 19日. 臺諫請傳香, 當御冕服, 上允. 上以紗帽團領傳香時; 太宗實錄; 태종1年 6月 12日. 帝遣通政寺丞章謹、文淵閣待詔端木禮, 來錫王命…上御紗帽團領…上受命訖, 服袞冕行謝恩禮.

고려의 강사포를 사용하였다[39] 이어서 세종 26년(1444) 3월 처음으로 상복 3건이 내의까지 일습으로 사여되었다.

상복(常服)은 향조추사 익선관(香皂皺紗翼善冠) 1정(頂), 옥대(玉帶) 1개, 포복(袍服) 3습(襲)으로 저사대홍직금 곤룡암골타운포(紵絲大紅織金袞龍暗骨朶雲袍) · 청암화답호(靑暗花褡褳) · 흑록암화철릭(黑綠暗花貼裏), 사홍직금 곤룡암골타운포(紗大紅織金袞龍暗骨朶雲袍) · 청암화답호(靑暗花褡褳) · 앵가록화철릭(鶯哥綠花貼裏),라대홍 직금곤룡포(羅大紅織金袞龍袍) · 청소답호(靑素褡褳) · 유청소철릭(柳靑素貼裏), 조록피화(皂鹿皮靴) 한 쌍[40] 등이다.

상복 일습으로 검은색의 신축성이 좋은 비단 추사로 만든 익선관과 옥대, 검은색 피화와 계절에 따라 옷감을 달리한 상복 3벌이 답호, 철릭과 함께 옷으로 만든 완성품이 사여되었다. 동절용으로 대홍저사 직금암골타운포, 하절용으로 대홍사 직금곤룡암골타운포, 춘추용으로 대홍라 직금곤룡포등 모두 3벌이다. 옷감의 명칭으로 보아 곤룡포는 모두 홍색이며 곤룡이 직금으로 제직되었다. 고려말 한어(漢語) 학습 교재『노걸대』에 비단을 구매하는 내용 중에 '葱白骨朶雲' 이라 하고 '옥 ᄉᆞᆨ비 체 굴근 뗴 구 룸 ᄒᆞᆫ 욘' 으로 번역[41]되어 있다. 총백을 옥색으로 골타운을 떼구름한 비단으로 번역한 것이다. 원래 골타운은 구름 문양이 무리구름 형태를 말하며 병기(兵器)중에도 손잡이가 마늘통 모양으로 된 골타가 있다.[42] 명 태조 곤룡포본 초상화도 무늬가 없는 소단에 용보가 있고 태조의 10남인 노황왕(1370-1389)묘 출토 유물 중 "장금사단용문단포(妝金四團龍紋緞袍)"라 명칭된 곤룡포도 무늬없는 소단에 직금으로 제직한 오조룡보가 있다.[43]『대명회전』황제, 황태자의 상복에는 곤룡포 명칭이 없고 명 황제실록 중에는 사여한 기록 중에 곤룡포복이 있다.[44] 고명이나 칙서, 법복을 사여할 때 고급 직물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태종 3년 왕의 구장복과 왕비의 적의 일습을 사여 받을 때 비단이 포함되었고[45] 세종 17년(1435)에도 고급비단의 반사가 있었다.[46] 비단 중에는 기린이나 백택이 금직으로 제직된 흉배비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으로 옷을 만들면 어깨부터 소매, 슬란까지 직금단이 나타나 화려한 형태의 옷으로 제작된다. 일례로「풍공유보도략」은 풍신수길(豊臣秀吉) 집권시 진상된 귀중품들을 모아 도설로 소개한 책으로 이 가운데 선조(宣祖)의 국서(國書)와 '朝鮮人衣' 라 하여 단령포 6점이 있다. 모두 적색이며 기린, 사자. 운용문 등이 가슴과 또는 어깨와 가슴, 슬란까지 문양이 있게 그려져 있다.[47] 이러한 정황들을 감안할 때 국초 조선 왕실에서 반사된 비단으로 옷을 만들었다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완성되었을 것이다.

---

39) 世宗實錄 세종19年 8月 28日. …, 不在賜與之數, 故本國因高麗之舊而用之耳.

40) 世宗實錄 세종26年 3月 26日.

41) 國語史資料硏究會 譯註(1995). 飜譯老乞大. 서울: 太學社. pp.178-179. 이밖에도 옷, 옷감, 색상 등 조선초에 기록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42) 박성실(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硏究: 壬辰倭亂 以前 時期를 中心으로.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3) 山東博物館(2014). 魯荒王墓 上. pp.29-31; 下, 圖版. pp. 26-28.

44) 英宗睿皇帝實錄 卷二百三十五, 景泰四年 十一月 十三日. 宣寧王遜烜奏臣受封時所賜袞龍紵絲紗所賜袞龍紵絲:廣本抱本所下有賜袞龍袍服皆窄小不堪命十一字, 是也. 羅各一匹與王俾自更製之.

45) 太宗實錄 태종3年 10月 27日. 왕에게 錦二段、金紵絲二匹、素紵絲四匹、織錦羅二匹、素羅二匹、織金紗二匹、素紗二匹. 王父에게 金紵絲二匹、素紵絲二匹、織金羅一匹、素羅二匹、織金紗一匹、素紗二匹, 왕비에게 金紵絲二匹、素紵絲二匹、織金羅一匹、素羅二匹、織金紗一匹、素紗二匹.

46) 世宗實錄 세종17年 3月 18日. 上幸慕華館, 具冕服, 群臣服朝服, 迎詔勅至景福宮…頒賜國王 紵絲織金胸背麒麟紅一匹、織金胸背麒麟綠一匹、織金胸背白獬紅一匹、織金胸背白獬靑一匹、暗花紅一匹、暗花靑一匹、暗花綠一匹、素紅二匹、素綠一匹、綵絹紅四匹、藍三匹、綠三匹、粧花絨錦紅一段、靑二段、綠一段.

47) 박성실(1994). 豊公遺寶圖略에 나타난 宣祖祖 王室服飾. 韓國服飾, 12. p.105.

명대 상복제도는 영락 3년(1405)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대명회전』 친왕과 군왕의 상복은 영락 3년 황태자의 상복과 동일한 제도였다. 황태자 상복은 홍무 원년(1368) 오사절상건(烏紗折上巾), 영락 3년에 익선관, 적색반령착수포(赤色盤領窄袖袍)에 전후양견에 금직반룡(金織蟠龍)이 각 1개씩 있고 옥대, 피화로 구성되었다. 반면 황제의 상복은 홍무 3년(1370) 오사절각향상건(烏紗折角向上巾), 반령착수포(盤領窄袖袍), 속대[間用 금옥, 호박, 투조], 영락 3년에 익선관, 황색반룡착수 전후양견 금직반룡(金織盤龍), 옥대, 피화로 구성되었다.[48] 영락 3년제 친왕 상복은 시간적으로 경기전 태조 어진 상복과 차이가 있으나 제도화되기 이전에 이미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상기한 대로 노황왕(1370–1399)묘 곤룡포 일습은 영락 3년제도(1405)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국초의 관복제도를 살펴보았으나 곤룡포 사여 기록은 없고 정종과 태종이 단령과 사모를 사용한 기록 일부가 확인된다.

아청색 곤룡포는 국상 중에 명에서 시제(諡祭)와 조부(弔賻)를 맞이할 때 왕은 고명을 받기 이전이면 면복 대신 익선관 아청단령포 청정소옥대 청혜로 일습을 갖추었다.[49] 아청단령포는 용보가 없는 것이며 국상 중에 제도이다. 이후 단종 즉위년(1452)에는 명 사신이 칙서, 고명, 구장면복 일습, 채단 예물을 가지고 올 때 단종(노산군)은 백포와 오서대 차림으로 모화관에 나가고 사신을 맞이할 때는 익선관, 아청곤룡포, 홍정옥대, 흑화로 일습을 갖추어 길의장으로 맞이하였다.[50] 아청단령포가 아니라 아청곤룡포라면 용보가 있는 단령포이며 홍정옥대까지 일습이 경기전 태조 어진의 복식과 흡사한 구성이다. 태조는 2년(1393)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는데 황제의 재가를 받았으며 태조 4년(1395)에도 권지국사의 신분으로 고명과 인장을 요청하였으나 5년(1396)에 표문의 내용이 불경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7년(1398) 왕세자에게 양위교서를 내릴 때까지[51] 고명이나 인장, 관복을 사여 받은 기록은 없다. 따라서 경기전 태조 어진 청포 익선관본은 미수고명인 상황에서 익선관, 아청곤룡포, 홍정옥대, 흑피화의 길의장 차림으로 보인다. 용보와 홍정옥대의 구체적인 정보는 없어 알 수 없으나 노황왕묘 곤룡포와 유사하며 특히 오조룡으로 제직된 용보는 양견 용보가 조금 작다. 경기전 태조 어진은 태조 치세시에 이모본이므로 권서국사 신분에서 길의장 차림으로 도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소된 홍포 익선관본은 청포와 동일한 형태이다. 홍포 이모 배경은 헌종 3년(1837) 준원전에 도둑이 들어 어용이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는 변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52] 서둘러 어진 모사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영정모사도감의궤』(1837)에 구체적인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준원전 태조 어진의 복색이 경기전, 남별전의 태조 어진과 같이 푸른색의 곤룡포였던 것이 이 시기에 붉은색의 곤룡포로 이모된 것이다.[53] 홍포본 기록은 『승정원일기』에서도 확인된다.[54]

어의 착장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문헌자료와 출토복식과 공신화상을 참조하였다.

48) 大明會典(萬曆15), 卷之60, 冠服1.
49) 世宗實錄 五禮 凶禮儀式, 迎賜諡祭及弔賻儀…殿下具冕服, 未受誥命, 則雅靑團領袍、翼善冠、靑鞋、素玉帶.
50) 端宗實錄 단종 卽位年 閏9月 17日. …魯山以白袍、烏犀帶、素儀仗, 如慕華館, 入幄次. 大明使金宥、金興等至沙峴, 魯山以鴉靑袞龍袍、翼善冠、紅鞓玉帶、黑靴、吉儀仗出迎.
51) 太祖實錄 태조2年 2月 15日; 4年 11月 11日; 5年 3月 29日.
52) 憲宗實錄 헌종3年 10月 4日. 咸鏡監司徐畊輔馳啓: 前月二十八日, 有賊犯濬源殿,御容綃面,片碎狼藉.
53) 金哲培(2011). 憲宗 3年(1837) 永興 濬源殿 太祖御眞 移模過程 硏究. 大東文化硏究, 76, p.320.
54) 承政院日記 고종9年 1月 6日. …上曰 濬源殿本, 服色如何乎? 裕元曰, 濬源殿本, 卽國初圖寫, 而間經事故, 移摸南殿本奉之, 舊本改粧櫝奉, 而舊本則法服, 與南殿·慶基殿同色, 新本則紅色龍袍矣.

조선시대 복식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양분되는데 공신도상에서도 착장형태의 변화를 볼 수있다.[55] 태조 어진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전의 조형적 특징을 반영한 신숙주(1417-1475), 장말손(1431-1486), 손소(1433-1484) 공신화상 등 15-16세기 초상화에서도 매우 장대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16세기 출토복식 중 당상관의 관복과 평상복들은 공신도상 복식과 유사한 분위기를 보인다. 반면 공신도상에서는 겹단령으로 묘사되어 있다. 당시 단령은 홑옷으로 출토되고 문헌들도 예외는 있으나 대부분 홑옷으로 기록하고 있다. 단령-답호-철릭이 일습으로 구성되어 출토되고 있다. 실제로 변수(1447-1524)묘 출토복식(중요민속문화재 제264호) 가운데 철릭과 답호는 소매가 끼워져 있는 채로 발굴되었다. 필자는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건립 시에 복식부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곤룡포-답호-철릭-액주름-저고리 · 한삼-바지 · 고의를 일습으로 만들어 만들었다. 액주름은 의정부에서 세종 28년 복색 상정 조건(服色詳定條件)을 논의할 때 처음보이며[56] 역대 가례도감의궤 왕과 왕세자 복식에 액주름(腋注音)이 포함되어 있다. 임진왜란 이전의 남자바지는 여자 속바지와 유사한 형태로 발굴된 사례를 참조하였다. 이러한 어의 착용은 어진에도 풍성하게 반영되었다. 동상 제작시 조각가(김영원)와 면담을 거쳐 이를 모델에 입혀보는 과정이 선행되었다.

2. 영조 익선관본 어진과 어의

영조(1694-1776, 재1724-1776)는 정조와 더불어 조선의 문예부흥기를 이룩한 성군으로 탕평(蕩平), 균역(均役), 준천(濬川) 등이 대표적인 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영조대에 편찬된 왕실 기록물들은 당시 유물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고증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도설로 남아있는 자료가 없었다면 왕실의 관복 복원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시사복인 곤룡포 제도 역시 왕세자와 왕세손 곤룡포를 포함하여 영조 27년(1751) 『국조속오례의보서례』에 규정되었다. 태조 어진에서 볼 수 있듯이 국초부터 착용되었고 왕세손의 곤룡포 일습은 인조 26년(1648) 이미 정비되어 있었으나[57] 이때에 이르러 재정비 되었다.

영조 어진은 태조 이후 가장 많은 어진을 제작하였다고 하나 현전하는 어진은 반신상 한 점으로 1900년 이모본이다. 범본이 된 것은 생모[숙빈 최씨]를 봉사하기 위해 건립한 사당 육상궁(毓祥宮)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1744년에 도사된 51세 상이다. 한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연잉군 시절 21세 초상은 사모와 단령 차림의 전신상으로 좌측 일부가 소실되어 있고 30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으나 조형적 형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표 1. 『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 나타난 왕 · 왕세자 · 왕세손의 복식

55) 박성실(2006). 임진왜란 남녀복식의 조형적 특징. pp.99-116.
56) 世宗實錄 세종28年 5月 25日. 通著帖裏與腋皺衣直領衣.
57) 仁祖實錄. …王世孫冊禮時, 以雙童髻、雙玉導、空頂幘、黑色袞龍袍、方龍補去肩龍、水晶帶行禮.

身分	圖說	翼善冠	袞龍袍	帶	靴
王	視事服	冠以毛羅裹兩大角兩小角貼後向上	袍以大紅緞爲之夏用大紅紗袍前後貼金五爪圓龍補袍左右肩同	帶以雕玉爲之裹以大紅緞而金畵之	靴以黑麂子皮爲之夏用黑黍皮
王世子	書筵服	冠同殿下冠	袍以黑緞爲之夏用黑紗制同殿下袍而袍前後貼金四爪圓龍補袍左右肩同	帶以不雕玉爲之裹以黑緞而金畵之	靴同殿下靴
王世孫	講書服	冠同王世子冠	袍以黑緞爲之夏用黑紗制同王世子袍而袍前後貼金三爪方龍補袍左右肩無貼	帶以水精爲之不雕同王世子玉帶裹以靑緞而金畵之	靴同王世子靴

익선관과 신은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이외에는 구분하였다. 왕의 곤룡포는 홍색으로 대홍단과 하절에는 대홍사로 하며 5조룡보는 자수나 제직하지 않고 첩금으로 하였다. 대는 조각을 한 옥대이며 바탕은 홍정(紅鞓)이다. 흑화도 하절에는 흑서피로, 이외에는 흑궤자피이며 노루가죽의 일종이다. 서피는 사피(斜皮)라고도 하며 담비가죽을 말한다. 왕세자 곤룡포는 흑단과 흑사로 하고 4조룡보이며 대는 조각이 없는 옥대로서 청정으로 된 것이다. 왕세손 곤룡포는 왕세자와 동일하나 3조룡 방보를 전후에 달고 어깨에는 달지 않도록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흑색용포는 주로 짙은 청색인 아청색을 의미한다. 『상방정례』 준절식(准折式)에는 익선관두면, 망건, 피화, 모정 등의 재료가 있다. 복원시 필요한 내용이다.

모라 익선관 매부(每部)

- 모라(毛羅) 1척6촌(壹尺陸寸), 아청사(鴉靑絲) 5전(伍錢), 어교(魚膠) 4량(肆兩), 매칠(每漆) 5석(伍夕), 먹(墨) 1편(壹片), 탄(炭) 2두(貳斗), 동철사(銅鐵絲) 4척(肆尺), 모자(帽子) 1부 (壹部) 급(及) 공역가(功役價) 면포(綿布) 1필(壹匹)

마미망건 매부

- 식차(飾次) 모단(冒緞) 장광(長廣) 각4촌(各肆寸), 영자(纓子) 자적사(紫的絲) 삼전(參錢), 마미급결조가(馬尾及結造價) 면포(綿布) 일필(壹疋)

흑궤자피화 매부

- 표(表) 흑궤자피(黑麂子皮) 내공(內拱) 백녹피(白鹿皮), 하장(下粧) 흑궤자피, 금(衿) 흑궤자피, 회이(回伊) 흑궤자피, 내창(內昌) 외창(外昌) 이상(以上) 호조(戶曹), 배포(褙布) 6척(陸尺), 백사(白絲) 2전(貳錢) 어교(魚膠) 2량(貳兩), 향사(鄕絲) 5전(伍錢), 분(紛) 삼전(參錢)

백양모정 매부

- 정(精) 백양모(白羊毛), 금(衿) 초록대운문필단(草綠大雲紋匹緞) 세자궁(世子宮) 소운문필단 (小雲紋匹緞) 이상 호조, 내공(內拱) 백정주(白鼎紬) 6척(陸尺), 누빔(訥非音) 백사(白絲) 이전(貳錢), 봉작(縫作) 초록사(草綠絲) 5푼(伍分)

흑사피화 매부

- 표(表) 흑사피(黑斜皮), 내공(內拱) 백녹피(白鹿皮), 하장(下粧) 흑사피, 금(衿) 흑사피, 회이(回伊) 흑사피, 내창(內昌) 외창 이상 호조, 배포(褙布) 6척(陸尺), 백사(白絲) 2전(貳錢), 어교(魚膠) 2량(貳兩), 향사(鄕絲) 5전(伍錢), 분(粉) 3전(參錢)

백당피양정 매부

- 精 白唐皮 衿 草綠大雲紋匹緞 世子宮小雲紋匹緞, 內拱 白苧布, 回粧 白狗皮, 以上 戶曹 縫作 白絲 壹錢 伍分, 草綠絲 參分

영조는 검소한 군주로서 검약(儉約)하여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늘 빤 옷을 입으시고 조석의 반찬도 두어 가지에 지나지 않았으며, 계시는 별당(別堂)의 동우(棟宇)가 매우 좁고 침실의 자리가 낡았으므로 유사(有司)가 갈기를 청하여도 윤허하지 않으셨다. 오로지 소박함을 숭상하고 경박하고 화려한 것을 애써 없애며, 상방(尙方)의 직조(織造)를 줄이고 연경(燕京)에서 사 오는 문단(紋緞)을 금하였다. 이상은 영조 지문(誌文) 중 일부이기는 하나 실제로 상방의 직기를 불태우고 문단 금지는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중국 비단의 사치는 왕조마다 거론되었다. 중종 25년에는 중국에서 조선 사람은 공헌(貢獻)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실상은 무역을 하기위해 온 것이라고 비웃는 일도 있었다.[58] 중국제 비단의 수요를 말해주는 내용이다. 영조가 승하하자 왕세손은 수의대를 장만한지 오래되어 문단이 있을 것인데 대행께서 문단을 금지하여 쓸 수 없으니 새로 장만해야 할 것이라[59] 하여 문단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영조 재궁의대에는 일백여점이 넘는 비단옷이 포함되어 있다.

어의 착장에서 익선관은 소각과 대각이 있는 형태로 전문가(박성호 선생)가 제작하였다. 중심의 청색 변사(辮絲)를 둘러주었고 익선관 유물을 참조하여 좌우의 변사도 복원하였다. 익선관 아래 우측에는 망건 일부가 보인다. 곤룡포의 형태는 밀창군(密昌君1677-1746)의 단령을 참조하였다. 밀창군은 선조(宣祖)의 7남인 인성군(1588-1628)의 손자이다. 영조의 총애를 받아 요직을 두루 거쳤다.[60] 곤룡포 재료는 어진에서 보이는 문양을 참조하여 제직하여 염색하였고 직령[안감]은 수구 부분에서 보이는 청색으로 염색하였다. 어진에서 오조룡보는 제직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부착되어 있어 기록은 첩금이나 자수로 복원하였다. 옥대는 백옥이며 문양이 확실하지 않으나 용이 조각되어 있다. 옥대는 선생이 옥을 조각해 협조하여 주었으며 황진영(단국대학교 박사과정)이 제작하였다. 평상의대는 고의와 적삼, 겹장의[長襦] 겹바지 위에 옥색의 중치막과 답호로 일습을 구성하였다. 이것은 습의대 일습을 참조하였으며[61] 왕의 가례시 평상의대 과두(裹肚)도 긴저고리 형태이므로 저고리 대신 장유 형태로 만들었다.

---

58) 中宗實錄 중종25年 4月 30日. 史臣曰: "凡赴京之行, 貿易之物, 公私紛擾, 未有紀極, 其搬運之弊, 不可勝言, 上國至以爲: '朝鮮人非爲貢獻, 其實爲貿易而來.' 以此非笑而賤鄙云. 如欲革此弊, 凡自上貿易之物, 一切不送, 以禁其私物, 庶可止矣. 旣有公貿之物, 故緣是而付送私物, 以營其所欲, 其何以禁之?"

59) 英祖實錄 영조52年 3月 5日. …王世孫謂院相金尙喆曰: "壽衣襨, 自內措置, 已年久矣. 或有紋緞, 而大行朝旣禁紋緞, 則不可用於襲殮諸具, 當改造矣. 余今荒迷, 有難坐檢.

60) 박성실(2004). 서울 상암동 출토 全州李氏 密昌君 服飾 考察. 韓國服飾, 22, pp.92-107.

61) 英祖實錄 영조52年 3月 5日. …次鋪畫玉帶, 次鋪袞龍袍,【多紅雲紋大緞.】次鋪草綠金紋大緞褡褳卽 卽半臂, 蓋無袖者. 次鋪玉色貢緞長衣, 甫羅貢緞長衣, 次鋪雲紋柳靑大緞中赤莫, 藍貢緞中赤莫、紫的鄕織中赤莫、草綠貢緞中赤莫, 次鋪有紋白紗單衫, 凡九稱. 又進雲紋白紗單袴、白貢緞大袴, 次進襪, 白貢緞. 次進腰帶, 藍廣織. 次進脚帶子, 藍廣織. 次進網巾, 黑絹. 次進皂帽, 毛緞. 仍加翼善冠, 毛緞 次進靴.

『거가잡복고』에서 장유는 동자복으로 소매가 좁고 양옆이 트인 직령포를 제시하였고 『다산시문집』에서는 거인의 웃옷으로 창의를, 나머지는 협수장유(夾袖長襦)를 제안하면서 '소창의'라 주석하였다.[62] '소창의'는 왕실 기록에서 보이지 않으나 동일한 형태의 옷을 장유로 기록하였다. 답호는 탐릉군 출토유물을 참조하였다. 탐릉군(耽陵君1636-1731)은 선조의 증손이다. 답호의 형태는 소매 없이 양옆과 뒤에 트임이 있는 직령포로서 연화문단으로 만든 겹옷을 대상으로 하였다.[63] 답호는 더그레[加文剌] 로서 역대 『가례도감의궤』(1627-1906)에는 왕세자 평상의대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탐릉군의 답호와 동일한 형태의 옷은 발굴되지 않고 있으나 왕족의 유물임을 감안하여 시대적인 차이는 있으나 평상의대에 포함하였다.

3. 면복본 어진

冕服은 冕旒冠[平天冠]과 袞服을 의미하며 帝王의 大禮用 冠服[章服]으로 면류관, 옥규(玉圭), 현의(玄衣), 중단(中單), 폐슬(蔽膝), 상(裳), 대대(大帶), 수(綬), 패옥(佩玉), 말(襪), 석(舃), 방심곡령(方心曲領)으로 구성된다. 옥대를 포함하여 부속제구는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왕과 왕세자, 왕세손이 착용하며 면류관, 옥규, 의 · 상 · 폐슬의 장문, 중단 불문(黻紋), 말과 석의 색상 등에 차이를 두었다. 어진 기록 중에 면복본은 영조 3, 익종 2, 헌종 1, 철종 1, 고종 3, 순종 1본 등 총 11본이 그려졌으나 현재는 익종의 예진[효명세자] 만이 반소된 채로 남아 있다. 그밖에 현의와 중단이 중요민속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되어 있다. 익종 면복본 어진의 어의는 고증과 복원 부분에서 상세하게 제시될 것이므로 기본적인 내용으로 대신한다.

조선왕실에서 면복은 국가 대사에 필요한 법복으로서 하루도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의례복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64] 비교적 풍부한 기록물을 남겼다.

1) 조선전기 면복제도

조선은 개국과 함께 고려 말 공민왕의 친명정책을 이어받았으며 이와 함께 왕 이하 백관의 관복도 명의 제도를 수용하여 제도적으로 이등급이 체강된 관복제를 적용하였다.[65] 고려말에 이어 조선의 역대 왕에게 사여된 구장면복은 명 친왕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면복은 새로운 왕의 즉위와 더불어 사여되었고 왕세자의 경우 주청에 의해 사여되기도 하였다. 사여 기록은 태종 2년(1402)을 시작으로 인조 3년(1625)까지 사여되었고 명의 멸망으로 중단되었다. 반면 국조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문종 즉위년(1450) 3월 세종 승하시에는 면복으로 염습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든 면복이 있었고[66] 또한 광해군 2년(1610)에도 이미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67] 면복은 길례[祭禮], 가례[國婚], 흉례[國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

62) 박성실. 주60. p.101.
63) 석주선(1985). 衣. 서울: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p.137. 이외에도 답호는 누비 2점이 포함되어 있다.
64) 宣祖實錄 선조35年 2月 壬申. …第人君冕服, 固不可一日無者.
65) 太宗實錄 태종16年 3月 壬戌. …陪臣祭服, 比中朝臣下九等, 遞降二等, 王國七等.
66) 文宗實錄 문종 卽位年 3月 丁未 참조.
67) 光海君日記 광해군2年 8月 壬午. …而勅書至有 合用冠服王國自製.

태종 3년(1403)에 사여된 내용을 보면,[68] 구류평천관(九旒平天冠), 구장견지사곤복(九章絹地紗袞服)일습으로 심청장화곤복(深靑粧花袞服), 백소중단(白素中單), 훈색장화전후상(薰色粧花前後裳), 훈색장화폐슬(薰色粧花蔽膝), 훈색장화금수(薰色粧花錦綬), 훈색장화패대(薰色粧花佩帶), 홍백대대(紅白大帶), 옥규(玉圭), 홍석(紅舃), 홍말(紅襪) 등이다.

평천관은 면류관이라고도 하였으며 평천관의 소재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사여된 면복 기록 가운데 가장 상세한 내용이다. 『국조오례의서례』(1474) 길례 제복도설에는 영락 원년(1403)에 사여된 구장면복에 근거한 왕 면복 일습이 도설로 나와 있으며 방심곡령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태 원년(1450)에 사여된 칠장면복에 근거하여 제도화된 왕세자의 면복 일습도 함께 도설되어 있다. 왕세자의 면복은 세종 32년(1450) 윤정월에 요청하였으나 동년 2월에 세종이 승하하였고 문종이 즉위하여 5월에 처음으로 칠장면복이 사여되었다.[69] 최근 산동성 박물관에서는 명 태조의 10남인 노황왕(魯荒王) 주단(朱檀1370-1389)묘 출토유물 가운데 구류면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발굴되었다.[70] 익종 면류관과 기본적인 형태는 동일하여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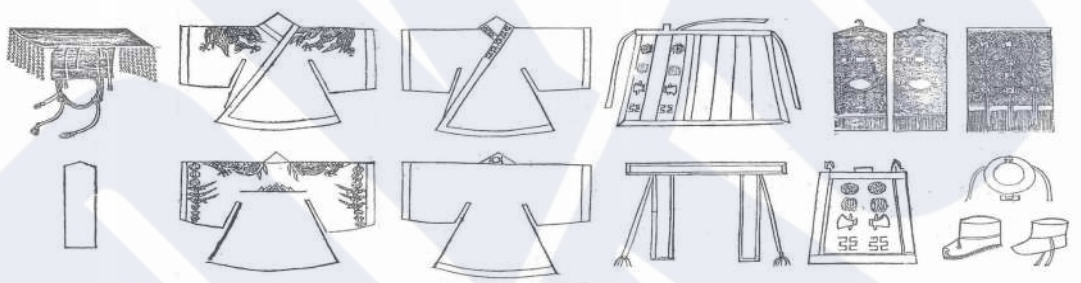


그림 1. 『國朝五禮儀序例』 吉禮 祭服圖說 殿下冕服 (永樂元年制)

한편 明의 면복제도는 개국 초 송의 제도를 계승하였으며[71] 시행 과정에서 수차례 보완되었다. 『대명회전』(만력15년본) 권지육십 예부 십팔 관복 一, 황제면복에는 홍무16년, 홍무26년, 영락3년, 가정8년 등 4차에 걸쳐 보완된 12장면복 일습이 그림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면관, 옥규, 의[織成;八章], 상[織成;四章], 중단, 폐슬[織成;四章], 대대, 혁대, 옥패, 대수, 말, 석 등 1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 제도에는 혁대가 포함되고 방심곡령이 없으며 조선 제도에는

68) 太宗實錄 태종3年 10月 27日. 영락 1년 왕과 왕비에게 관복 일습이 사여되었다. 國王冠服一副、香皂皺紗九旒平天冠一頂, 內玄色素紵絲表、大紅素紵絲裏, 平天冠板一片、玉衡一根、五色珊瑚玉旒珠幷膽珠共一百六十六顆內, 紅三十六顆、白三十六顆、蒼三十六顆、黃三十六顆、黑一十八顆、靑白膽珠四顆. 金事件一副共八十箇件內, 金簪一枝、金葵花大小六箇、金池大小二箇、金釘幷螞蝗搭釘五十八箇、金條一十三條、大紅熟絲線絛一副、大紅素線羅旒珠袋二箇. 九章絹地紗袞服一套內, 深靑粧花袞服一件、白素中單一件、深靑粧花敝領沿邊全. 薰色粧花前後裳一件、薰色粧花蔽膝一件、上帶玉鉤五色線條 薰色粧花錦綬一件、薰色粧花佩帶一副、上帶金鉤玉玎璫全 紅白大帶一條. 靑熟絲線組條全.玉圭一枝、大紅素紵絲夾圭袋全. 大紅紵絲舃一雙、上帶素絲線條靑熟絲線結底. 大紅素綾緉襖一雙.

69) 世宗實錄 세종32年 閏5月 壬子; 文宗實錄 문종 卽位年 5月 庚申.

70) 山東博物館(2014). 魯荒王墓 下, 圖版. pp.67-68. 上卷에는 재료, 치수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곤룡포, 답호, 철릭 등 관복을 포함한 복식류도 포함되어 있다.

71) 世宗實錄 五禮 吉禮序例. 殿下冕服…宋《釋奠儀》式云: "晝, 陽事也, 故在衣; 繡, 陰功也, 故在裳…苒當前佩設.

반대로 혁대가 없고 방심곡령이 있다. 반면 『세종실록』에도 영락 원년에 사여된 전하면복이 도설되어 있으나 혁대와 방심곡령이 없어 동시대 왕실의 기록임에도 차이를 보인다.[72] 방심곡령은 『고려사』 여복에 공민왕 19년 명태조로부터 사여받은 강사포에 포함되어 있다.[73] 조선에서도 방심곡령은 세종이 강사포 착용시 부착한 기록도 보인다.[74] 중종대에 이르러 면복 어용시 제례시에만 부착하여[75] 용례를 구분하였다. 선조 33년(1600) 문묘행례시 방심곡령을 준비하지 못한 관리가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76] 이후 조선의 제도로 정착되었다. 반면 명의 경우 면복과 방심곡령은 『대명회전』에는 보이지 않으나 『삼재도회』 국조관복 황태자 구장면복과 군신관복에 포함되어 있다.[77]

도설로 제시한 황제 면복일습에는 옥대가 있고 현의 장문이 매우 크게 그려지고 중단보다 짧다. 폐슬은 옥대 전면에 걸쳐 그려지고 수와 패옥도 옥대 후면에 걸친 채로 그려져 착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대는 매어진 상태로 그려지고 옥규 집[袋韜]이 함께 그려져 있다. 『삼재도회』 어용관복 도설에는 현의 소매 앞부분에 장문이 그려져 있고 훈상에는 주름이 없다.[78]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조선에서 참고한 대상 자료에 따라 달라지고 부분적으로 조선식의 제도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고증에 유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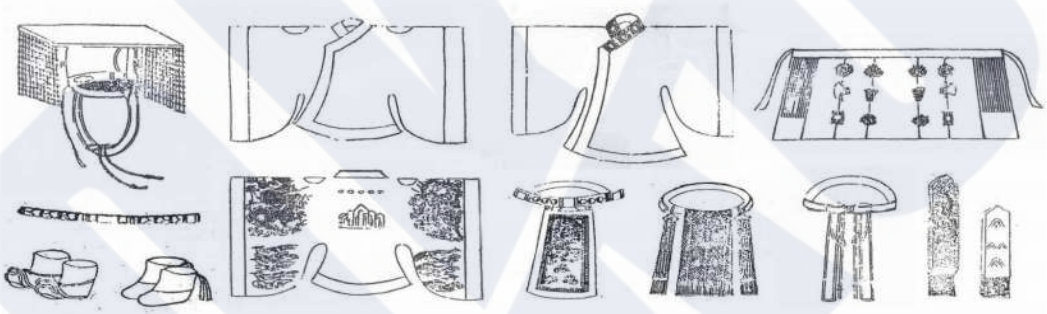


그림 2. 『大明會典』 冠服 一 皇帝冕服

명 친왕 면복과 조선초 왕, 왕세자 면복 제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72) 世宗實錄 五禮 吉禮序例. 殿下冕服…依永樂元年賜與之制.
73) 高麗史 志卷26 輿服.
74) 中宗實錄 중종27年 10月 甲申. …且雖冕服, 而方心、曲領, 乃祭時所用也.
75) 世宗實錄 세종8年 1月 丙申. …冕服之赤舄、絳紗袍之方心曲領, 自是始御焉.
76) 宣祖實錄 선조33年 9月 戊辰. …今日文廟行禮時, 尙衣院冕服方心, 不爲齎來, 致令禮服欠缺, 其慢忽不察之罪, 不可不懲.
77) 王圻·王思義 編集. 三才圖會 四, 영인본. 上海古籍出版社. pp.1530-1532.
78) 王圻·王思義 編集. 三才圖會 四, 영인본. 上海古籍出版社. pp.1525-1527.

표 2. 親王 · 王 · 王世子 冕服制度

	親王 冕服[冕服九章] 大明會典-(洪武26年制) -永樂3年制	王 冕服[冕服九章] 國朝五禮儀序例-永樂元年制 (1474年) - (1403年)	王世子 冕服[冕服七章] 國朝五禮儀序例-景泰元年制 (1474年) - (1450年)
圭	玉圭 長九寸二分五釐	靑玉 長九寸	制與九章[殿下]同
冕冠	玄表朱裏 前圓後方 九旒 赤白靑黃黑 玉衡,金簪,玄紞 垂靑纊充耳 白玉瑱朱 紘纓	玄覆繡裏 前圓後方 九旒 朱白蒼黃黑 金簪 玄紞 垂玉瑱 充耳 紫組二 朱組一	制與九章同 唯八旒八玉三采 朱白蒼
袞服	靑衣五章-織成,龍山火華蟲宗彝 本色領標裸裾	玄衣五章-繪,龍山火華蟲宗彝 繪陽事也 故在衣繡	制與九章同 唯繪三章 火華蟲宗彝
裳	繡裳四章-織成,藻粉米黼黻 前三後四 共腰有襞積 綽裼	繡裳四章-繡,藻粉米黼黻 前三後四幅 腰間襞積無數 有綽緆	制與九章同
中單	素紗 靑領標裸裾 領織黻紋 十一	白縐 靑領標裸裾 繪黻十一 於領	制與九章同 (繪黻九於領)
蔽膝	隨裳色,四章-織,藻粉米黼黻 本色緣,其上玉鉤	繡色緧,(四章)-繡,藻粉米黼黻 上有綬 下有綬 去上五寸	制與九章同
佩	玉佩如東宮, 玉佩 二, 雲龍文上有金鉤, 小綬四采副之 赤白縹綠 繡質	佩二, 衡琚瑀雙璜衝牙適子珉玉, 上設衡以金鉤	制與九章同
大帶	素表朱裏,上綽以朱, 下綽以綠,紐約用靑組	緋白縐 合縫	制與九章同
綬	大綬四彩,赤白縹綠, 小綬三彩間 施以玉環龍紋,織成繡質	紅花錦 雙金環	制與九章同
革帶	(金鉤牒)	無	無
襪	赤襪	表緋段 裏緋綃	制與九章同
舃	赤舃 舃用黑絇,純,黑飾舃首	表緋段 裏白縐	制與九章同
方心曲領	無	白羅,旁有兩纓,左綠右紅	制與九章同

2) 조선후기 면복제도

조선후기는 선조 25년 발발한 임진왜란(1592-1599년)으로 조선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문화적 측면에서도 왜란을 분수령으로 전 · 후기로 양분되는 후유증을 남겼다.[79] 참고할 왕실문헌과 면복 실물이 유실되었고 더욱이 명의 멸망으로 더 이상의 면복사여는 불가능하여 조선식의 면복제도가 정착, 완성되는 시기였다. 영조 27년(1751)에는 왕세손의 면복제도 일습도 갖추어졌으며[80] 그밖에도 다양한 왕실문헌에서 제도화된 도화된 면복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면복은 면복장인에 의해 만들어졌으며[81] 상시 상의원에 보관되어

79) 박성실(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硏究: 壬辰倭亂 以前 時期를 中心으로.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0)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吉禮, 王世孫冕服圖說.
81) 宣祖實錄 선조33年 11月 庚申. …平時尙方, 有冕服匠人云.

있었다.[82] 면복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개조가 이루어졌는데 혁대는 인조대에 수차례 논의되어 사용되었다.[83] 대대는 숙종 39년 명제와 동일하게 개정하였다.[84] 이후 영조 19년에는 면복제도를 개정하였으며[85] 현의와 훈상, 후수의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어 이를 계기로 조선의 면복은 제도적 완성을 보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1897년 대한제국으로 황제국이 되기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아래 그림은 정조 승하(1800)시 기록인 『正祖國葬都監儀軌(정조국장도감의궤)』에 포함된 면복일습으로 복완용(服玩用) 채색그림이다. 복완은 재위시에 사용된 제도에 근거하여 소형으로 만든 것이다. 옥대그림이 생략되어 있으나 재위시에는 사용하였다. 옥규, 면류관, 현의 전후면, 중단 전후면, 패옥, 후수, 폐슬, 훈상, 대대, 방심곡령, 적말, 적석 등 12件 일습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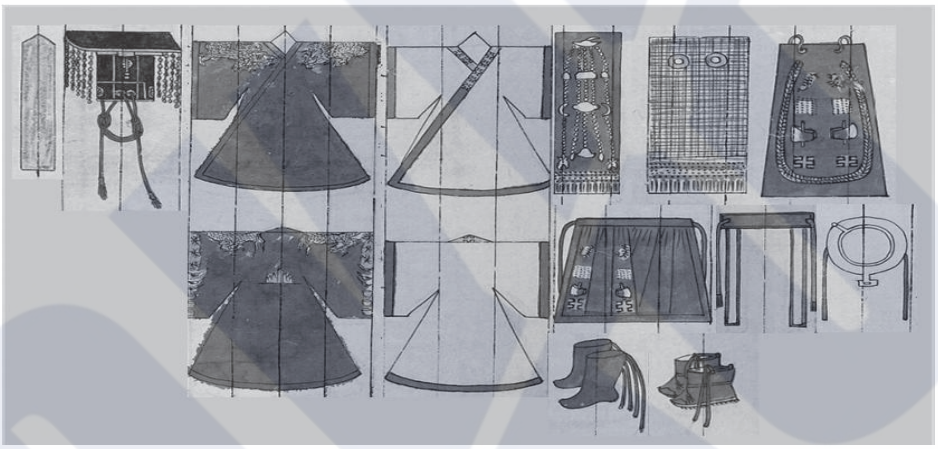


그림 3. 『正祖國葬都監儀軌(1800년)』

한편 왕세자의 면복은 영조의 2남 사도세자(1735-1762년)의 사당인 경모궁에 제를 드릴때 기록인 『景慕宮儀軌(경모궁의궤)』(1783년) 제복도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옥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玉笏은 그려져 있지 않으나 당시 의식에는 사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전래되는 효명세자(純祖1男;1809-1830년;追尊 翼宗) 예진에서 당시의 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82) 宣祖實錄 선조39年 2月 壬子. …冕服則常在尙方矣.
83) 仁祖實錄 인조4年 5月 丙寅; 5年 11月 丁卯; 6年 11月 丙子; 10年 12月 乙丑.
84) 肅宗實錄 숙종39年 5月 辛巳. …只改大帶之制, 表白裏紅, 倣圓式爲之.
85) 英祖實錄 영조19年 4月 丁酉. …考《大明會典》袞衣之制, 長不掩裳…上敎曰: "冕服之繡裳, 隱於玄衣之中, 令尙方更其制殺其長, 以表上玄下纁之義 舊制, 冕服絳紗袍大帶所繫小帶, 用深靑絲絛兒, 肅宗三十九年大帶釐正時, 依古禮用深靑廣多繪, 後綬則用中國紅花錦. 上之二十二年禁紋緞後, 令尙方織造赤、靑、玄、縹、綠緞而無紋. 凡十五條下端網垂, 仍以後綬所織絲結之分爲三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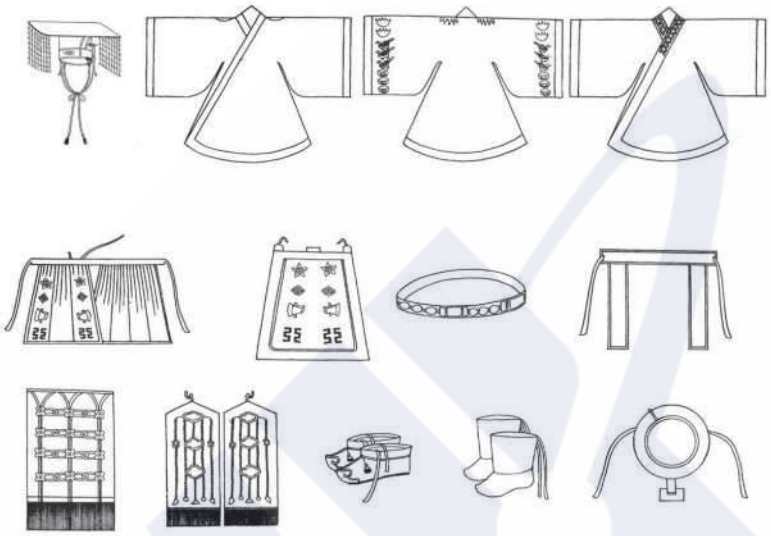


그림 4. 『景慕宮儀軌』 祭服圖說 (1783년)』

* 면류관(冕)은 모자위에 전원후방(前圓後方)의 면판을 얹은 형태이며 앞뒤로 구슬을 꿰어 늘인다. 면판은 너비 8촌, 길이 1척6촌이며 겉은 검은색, 안을 붉은색으로 싸주었다. 앞 높이 8촌 5푼, 뒤는 1촌이 길어 앞으로 숙여진 형이다. 모자 측면에 금잠을 꽂아 고정하고 양옆으로 검은 끈[玄紞]에 옥진(玉瑱)을 늘여 귀막이를 대신하였다. 이는 간언이 들르지 않게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자색 끈으로 턱밑에서 매어준다. 황제 5채옥 12류면, 왕 5채옥 9류면, 왕세자 3채옥 8류면, 왕세손 3채옥 7류면으로 구분하였다.
* 옥규는 손에 드는 의식물로서 왕은 국초에 청옥규였으나 [국조오례의서례] 후기 백옥규로 바뀌었다[국조속오례의보서례 가례]. 길이 9촌, 왕세자 청옥규 길이 9촌, 왕세손 청옥규 길이 7촌이다.
* (현)의는 검은색 비단으로 만든 교임형 직령포 형태로 왕은 용[神奇], 산[鎭靜], 불[光輝;번영], 화충[꿩;紋彩], 종이[祭器;孝] 등 5장문을 그려서 주었다.
* 훈상은 앞 3폭, 뒤 4폭으로 된 홍색 주름치마 형태이며 폐슬은 앞치마 형태로 각각 조[紋彩], 분미[良民], 보[決斷], 불[亞;善導] 4장문을 수놓아 9장복으로 착용하였다. 이는 왕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황제는 일, 월, 성신이 추가되어 12장복이며 왕세자는 현의에 용과 산이 생략된 7장복, 왕세손은 현의에 조, 종이, 분미를 그려주고 상과 폐슬에 보, 불을 그려 5장복으로 구분하였다.
* 중단은 현의 아래 받쳐 입는 옷으로 현의보다 길게 하여 훈상이 보이도록 하였다 백색이나 청색 비단으로 만들고 가장사리에 청선을 둘러주고 깃 주위에는 불문[亞]을 금박하였다. 왕은 11개, 왕세자 9개, 왕세손 7개이다. 대대는 홍 · 백 비단으로 만든 넓은 띠이며 17세기부터 겉 백색, 안 홍색, 허리주변 홍색선, 허리아래 녹색선을 가늘게 둘러주고 양옆에 청색끈을 달아 주었다.

* 옥(혁)대는 홍색 비단 바탕에 금선 5줄이 있으며 조각한 20개 옥판이 부착되어 있다.
* 후수와 패옥은 후기에 이르러 적, 청, 현, 표, 옥색 등 5색단을 제직하여 사용하였다. 후수는 현의 뒤 허리부분에 늘이는 것으로 상부에는 쌍금환을 달고 하부에는 오색 망수를 부착하였다. 패옥은 후수와 같이 만들되 좁게 하여 위로 5줄 옥을 길게 늘려서 양옆에 걸어 주었다.
* 방심곡령은 제례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흰색 비단으로 둥근 깃을 만들고 중심 아래에 小形의 사각 모양을 달아주고 양옆에 홍·녹색 끈을 부착하여 현의에 매듭단추로 고정하였다.
* 말은 의식용 겹버선으로 홍색비단으로 만들며 뒤에 끈을 달아 주었다. 석은 의식용 신으로 붉은 비단으로 만들며 목이 짧은 장화형태이다.

이상은『국조오례의서례』,『국조속오례의서례』, 숙종대와 영조대의 제도를 반영하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금번 익종 예진 복원에는『국혼정례』『상방정례』기록을 인용하여 장문을 모두 그려서 복원하였다.

3) 대한제국 면복제도

고종황제는 황제국으로서 부국강병한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근대적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복식제도는 光武元年(1897)에 改定하였는데『대한예전』제복도설에는『대명회전』제도를 취하여 황제의 12장복과 황태자의 9장복을 제시하였다.[86]『증보문헌비고』(1908년) 예고, 장복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다. 당시의 면복제도는 면관은 명 가정 8년(1530) 제도를 적용하였고 장복은 영락 3년제를 기준하였다. 12장면복은 옥규, 12류면류관 [長二尺4寸,廣二尺二寸], 현의[織成六章;日月星辰山龍華蟲], 훈상[刺繡六章;宗彝藻火粉米黼黻], 소사중단[靑領織黻十三], 폐슬[刺繡;龍一火三], 옥패, 혁대, 대대, 후수, 말, 석은 9장면복과 동일하다. 황제면복 유물은 현존하지 않으나 순종황제가 12장복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이 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에는 重要民俗문화재 제66호 현의와 청색중단 유물이 2점씩 소장되어 있다. 명의 冕服 일습에서 중단은 백색이나 소색으로 되어 있으나 조선에서는 임오년(1882) 왕세자[純宗] 가례부터 청색중단으로 확인된다.

Ⅳ. 군복본 어진과 어의

역대 어진 기록에서 군복본 어진은 헌종[1846년 도사], 철종[1852년 도사], 고종[1872년 도사] 대본·소본, 고종[1902년 도사] 대본·소본, 순종[1902년] 대본·소본 등으로 총 8본이다.[87] 이 가운데 1902년 도사한 어진은 양복본이므로 전통적인 군복 차림새는 1852년 도사한 철종

86) 大韓禮典 卷4, 祭服圖說. 皇帝冕服 …光武元年改定其制 取大明會典所載制度者爲多.
87) 조선미(2015). 조선왕실의 어진,『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pp.202-203. 어진제작 도표 참조

어진과 1872년 도사한 고종 어진이다. 한편 철종(1831-재1849-1863)은 재위 14년 기간에 모두 4점의 어진을 도사하였는데 철종 3년(1852)에 군복본 대본과 면복본 소본(추정), 철종 12년(1861) 도사한 원유관본과 군복본 등이다. 이 기록은 규장각 소장 『어진도사사실(御眞圖寫事實)』[88]과 『철종실록』 총서에서 확인되는데 수용은 4본으로 2본은 임자년, 2본은 신유년에 그려 주합루에 봉안하였다[89]고 한다. 임자년은 철종 3년(1852)이며 신유년은 철종 12년(1861)으로 31세에 도사한 어진을 말한다. 철종은 12년 4월 18일 어진의 표제를 친서하였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철종 군복본 어진 좌측 상단에는 '三十一歲眞' 화기가 있으며 2006년 보물 제1492호로 지정되었다. 이 어진은 우축 일부가 화재로 손상되어 있으나 조선시대 왕의 군복 차림새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조선의 국왕 관복이 명나라 제도를 따른 것에 비해 어진의 군복은 조선의 제도이다.

어진의 군복 차림새는 머리에 망건(網巾)을 이마 위에 높이 올려 쓰고 띠처럼 생긴 검은색의 편자[邊子]가 그려져 있다. 망건위로 탕건(宕巾)이 보이며 탕건 위로는 투명하게 비치는 죽전립(竹戰笠)을 쓰고 있다. 죽전립 모정(帽頂)에는 봉황모양의 옥봉(玉鳳)이 부착되어 있다. 옆으로 청우(靑羽)와 공작미(孔雀尾)가 드리워져 있다. 앞면 중앙에는 원형 옥판이 부착되어 있고 말화와 산호로 만든 패영(貝纓)이 은영자(銀纓子)와 연결되어 있다. 가장 위에 입은 관포는 소매가 좁은 협수(夾袖)와 협수 위에는 소매가 없는 쾌자(快子) 또는 전복(戰服)을 입고 있다. 왼쪽 어깨에는 용보가 달려 있다. 협수의 소매 끝에는 홍수(紅袖)가 길게 달려있고 흰색 한삼이 이어져 있다. 협수와 쾌자는 원형의 쌍용(雙龍)이 제직된 쌍용문사이며 협수의 겉감은 농갈색, 전복[쾌자]은 검정색이며 안감은 홍색으로 받쳐주었다. 이러한 문양의 직물을 별문사(別紋紗)라 제직된 직물편이 남아있다. 협수의 색상이 문헌에 보이는 금향색과 비의된다. 철종 1년(1849) 헌종의 국상을 거행할 때 대렴의대에 금향모초단군복 2점, 자적화문모초단 쾌자, 초록별문사 쾌자가 포함되어 있다.[90] 왼쪽 엄지에는 암깍지를 끼고 있어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있다. 옆쪽으로 어도(御刀)가 세워져 있다. 가슴부위에는 아청색 문단위에 오색 견사로 운문(雲紋), 수파문(水波紋), 불문(黻紋), 만자문(卍字紋), 천도문(天桃紋) 등을 자수한 넓은 요대(腰帶)를 띠고 요대 위에 청색의 전대(戰帶;纏帶)를 띠고 있다. 중요민속문화재 21호 남이흥장군(1576-1627) 일가 유물 가운데 요대는 융단(絨緞)으로 만들어져 있다. 또한 충북대학교박물관 소장 홍우협(1655-1691)묘 출토 직금운용문단 요대는 4조룡 7마리가 제직되어 있다. 『승정원일기』에는 철종 승하시 유의(遺衣) 7벌 가운데 군복 · 쾌자 · 요대[胸龍][91]라 하여 군복 일습이 포함되어 있으며 요대에는 용이 있었다. 어진에는 용문이 보이지 않으나 전대로 가리워져 있어 전체적인 문양 파악이 어렵다.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윤황후의 유물로 전해지는 요대에는 중앙에 사조룡(四爪龍)이 마주하여 자수되어 있다. 복원은 이를 근거로 제작하였다. 요대 우측 아래에 갈색의 대전(帶錢) 일부가 확인된다. 대전은 장도같은 작은 도구를 패식할 때 사용된다. 임오년(1882) 가례시 패물발기(왕세자 순종)에는 민화, 산호,

88) 윤진영(2004). 장서각 소장 어진도사사실의 정조-철종대 어진도사. 장서각, 11. p.283.
89) 哲宗實錄 卷1. 總序 …有晬容四本, 二本 [壬子圖寫] 二本 [辛酉圖寫] 奉于宙合樓.
90) 日省錄 철종1年 6月 9日. 규장각한국학연구원.
91) 承政院日記 고종1年 4月 6日. …仍加遣衣七稱, 上綴龍袍 [肩龍], 加文剌具, 中綴道袍·氅衣具, 下綴軍服·快子·腰帶[胸龍]具.

금파, 비취, 옥 등의 소재가 기록되어 있다.[92] 요대 위에는 청색의 전대를 매어 주었다. 검은색 수화자를 신었다.

조선시대 군사복식은 갑주(甲冑), 융복(戎服), 군복(軍服)으로 대별된다. 갑주는 갑옷과 투구, 융복은 철릭(帖裏;貼裏;天益;天翼), 군복은 협수(夾袖)와 전복(戰服)·쾌자(快子)·괘자(掛子)를 말한다. 갑주는 전시(戰時)나 국왕의 호위, 어가 행렬 등 시대적인 특징을 보이면서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착용되었으며 갑옷 속에는 융복이나 군복을 받쳐 입었다.

융복인 철릭도 전시기에 걸쳐 착용되었으나 조선 전기에는 군사복으로 착용되어 임진왜란 당시에는 백관들도 패검하고 전시에 대비하였다.[93] 철릭(貼裏)은 상의(上衣)와 하상(下裳) 연철된 형태로서 하상의 주름이 많아 기마시 편리한 복장으로서 군사뿐만 아니라 왕이하 서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착용되었다. 시대에 따라 의상의 비율, 깃과 소매 형태의 변화를 보여 시대적인 특징을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15-16세기 공신도상에는 아청색 단령, 청색이나 녹색 답호, 홍색 철릭을 일습으로 착용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16세기 백관의 출토복식 중에도 단령-답호-철릭은 일습으로 계절을 반영한 유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군사용 융복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란을 거치면서 기능성이 문제되어 군복의 개혁이 시급하게 논의 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의 철릭은 신체보다 넓고 길어 보행하기에도 쉽지 않은 형태였다. 흑립과 철릭은 중국인들에게 비웃음을 샀으며 선조 26년 6월에는 제독과 함께 온 중국인 유원외(劉員外)는 심지어 개혁하라는 공문까지 보내왔다.[94] 이어서 약 3개월 후에는 대소인원은 융복과 속옷의 소매를 좁게 하고 금군은 전립(氈笠)을 쓰고 소수포(小袖袍)를 입도록 하였다.[95] 왜란과 호란 등 전란 이후 군복 개정 논의는 계속되었다.

효종은 무비(武備)의 중요성을 강하였고[96] 군복이 너무 커서 돌진하는데 부적절하여 소매를 협수(挾袖)하도록 하였고 영조는 군복의 길이는 지면에서 한 자정도 떨어지도록 하고 단추(團樞)의 제도도 모범을 보였다.[97] 협수는 효종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전복과 일습을 이루는 군복 제도는 영조대부터 확인된다. 영조 재궁의대(梓宮衣襨) 가운데 다홍 운문단 곤룡포(多紅雲紋緞袞龍袍) (龍金胸褙)·초록 유문 대단 협수(草綠有紋大緞狹袖)·침향단 전복(沈香緞戰服)·……침향 유문단 전복(沈香有紋緞戰服)·초록 유문단 협수(草綠有紋緞狹袖)이며 전복과 나란히 기록되어 있다.[98] 정조 소렴의대와 대렴의대, 순조 대렴의대에도 보이는데 전복 자리에 쾌자로 기록하였다. 정조 소렴의대에는 유록용문단 협수(柳綠龍紋緞夾袖), 아청운문단 쾌자(鴉靑雲紋緞快子), 토색대설문통해단 협수(土色大揲紋通海緞夾袖), 아청 쾌자이다. 또한 정조 재궁의대 쾌자에는 누금흉배(金絲胸背)가 부착된 것이다.[99] 영조 승하시에 기록이나 평소에 제도가 반영된

92) 박혜진(2005). 조선시대 후기 궁중패물 연구: 〈궁중발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3.
93) 宣祖修正實錄 선조25年 4月 14日. 命百官戎服. 不定服色. 黑笠、貼裏, 衣廣絲帶帶劍.
94) 宣祖實錄 선조26年 6月 1日. …天朝人每笑其寬袍大袖、頭戴大帽. 劉員外, 至於移咨革改.
95) 宣祖實錄 선조26年 8月 28日 禮曹啓曰: "前者下令, 自九月初一日, 凡大小人員, 戎服及裏衣皆窄 袖; 禁軍着氈笠, 衣小袖袍; 公私下賤, 去笠子, 着小帽, 衣小袖袍, 已諭中外.
96) 孝宗實錄 효종2年 6月 19日. 上御晝講, 國家都忘武備, 不勝慨然. 近來武士試射時, 若中一矢, 則以此塞責而退, 誠極寒心矣; 正祖實錄 정조17年 10月 8日 참조.
97) 正祖實錄 정조1年 5月 16日. 孝廟以軍服之寬博, 不合奔突, 改爲挾袖之制, 先朝亦命軍服之長, 去地一尺, 而團樞之制, 亦上服而然.
98) 英祖實錄 영조52年 3月 9日. 實梓宮衣襨置簿, 多紅雲紋緞袞龍袍、(龍金胸褙) 草綠有紋大緞狹袖、沈香緞戰服、藍貢緞中赤莫、草綠貢緞中赤莫、多紅貢緞道袍、多紅貢緞道袍、藍貢緞中赤莫、草綠貢緞中赤莫、沈香有紋緞戰服、草綠有紋緞狹袖.
99) 正祖實錄 정조24年 7月 3日. 實梓宮衣襨…柳綠龍紋緞夾袖、內供龍紋緞. 甫羅禾花紬長衣、鴉靑雲紋緞快子(縷金胸褙具) 內供藍龍紋緞…縷金. 흉배라 하였으나 금사로 자수한 흉배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것이므로 이전에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정조대에는 융복과 군복이 동시에 착용되므로서 지나친 사치로 인한 폐단을 상소하는 사례가 누차 발생하였다. 영조 19년 3월 17일에는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무장은 항상 철릭을 입어 무변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정조17년 9월 25일에는 행부사직 이문원(李文源)이 시위에 직책은 어가 호위인데 주립(朱笠)에 호수(虎鬚), 작우(雀羽), 철릭에 대궁(帶弓) 패검(佩劍)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므로 군복으로 바꾸고 주립과 철릭은 혁파할 것을 계언하였다. 이어서 동년 10월 8일에는 병조참판 임제원(林濟遠)이 철릭을 없애고 군복을 착용하는 것이 실용적이라 상소하였고 다음날에도 판중추부사 박종악(朴宗岳)이 군복과 융복을 동시에 시행하는 문제를 아뢰자 개혁을 품처 하도록 하명하였다. 정조 17년 10월 21일 비변사에서는 군제에 대한 구체적인 절목을 올렸는데 전건(戰巾), 단협수(單挾袖), 사방호의(四方號衣)로 간편한 복장을 취하도록 건의하였다. 또한 22년 22년 10월 19일에는 비변사가 장용위(壯勇衛)의 외영 군병의 절목을 올려 군병제도를 정비해 나아갔다. 순조 34년 좌의정 심상규(沈象奎)는 군과 융은 같은 것인데 복장이 너무 다르다. 융복을 철릭(帖裏)라고 하는데 철릭 위에 포를 입으면 조회에 나갈 수 있고 철릭을 벗으면 비상시를 대처할 수 있는 옷이므로 버릴 수 없다. 철릭이 함흥 본궁에 있어 버릴 수 없다. 선조(先朝)께서 융복과 군복을 모두 참용하였으니 전례를 참조하고 불필요한 입식(笠飾)을 줄여서 존속시킬 것을 건의하자 그대로 따랐다.

정약용의 『다산시문집』에는 군복 일습으로 털모자[氈笠子], 은정자(銀頂子), 공작미(孔雀尾), 청작미(靑雀尾), 밀화영(蜜花纓)과 좁은 소매의 전복[夾袖戰服], 괘자(褂子), 요대(腰帶), 전대(纏帶), 누빈 옷[細衲衣] 이며 나머지는 융복과 동일한 것으로 기록하였다.[100] 이 내용은 철종의 군복과 구성이 동일하다. 18세기 영 · 정조대 무신인 도총관 이창운(李昌運1713-1791) 초상화도 동일한 구성이다.

왕의 융복은 어융복(御戎服)이나 구군복(具軍服)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다. 철종(1849-1863)은 재위 14년간 50여차례 구군복을 착용한 기록이 보이는데 궁궐 내에서 구군복을 입고 이동할 때는 말을 탔으며 창덕궁 내 영화당(暎花堂)이나 춘당대(春塘臺)에서 시사(試射)를 행하거나 인릉이나 장릉, 수릉, 현륭원, 화성행궁 등에 친제할 때에는 대가를 타고 이동하였다.

협수는 소매가 좁은 직령포에 양옆과 뒤에 트임을 주어 활동하기 편리한 외의이다. 수구(袖口) 부분을 홍색비단[紅袖]으로 만들어 몸통[胴] 소매색이 달라 동다리(彤多里;동다리) 라 한 것이다. 홍수가 달린 협수는 모두 19-20초의 유물로 집중되어 있다. 이전 시기의 협수는 홍수가 달리지 않은 출토유물로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최원립장군(1618-1690) 비단 협수, 충북대학교박물관 소장 홍우협(1655-1691)묘 출토복식에서 17세기 협수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임하필기』에는 '상어군복(上御軍服)' 에서 '마상군왕협수의(馬上君王狹袖衣)' 라 하였고 홍수(紅袖)장식은 기마(騎馬)가 붉은색에 익숙해져서 매달아 놓은 수급(首級)을 보고도 놀라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서, 본래는 겨우 몇 치이던 것이 지금은 온 소매에 다 장식한다. 연전(年前)에 성상의 하교에서 너무 길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니, 사치스러운 습관에 연유한 것이다. 전립(戰笠)에도 패영(貝纓), 작우(雀羽), 상모(象毛)를 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

100) 정약용. 茶山詩文集, 제9권 의(議).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다만 화려하게 꾸미는 데만 힘을 써서 점점 그 본의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101] 또한 고종7년 정조의 어진을 봉심하면서 김병학이 패영이 조금 크다 하였고 이유원은 군복의 제도가 고금이 달라져서 홍수가 짧고 등편도 작아졌다고 하자 고종은 요즘은 홍수 길이가 너무 길고 전대의 장단도 고제와 다르다고 하여 국말의 홍수길이가 길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102] 소매 수구 (袖口) 색상은 청색으로도 하였는데 정조는 이를 길복(吉服)할 때를 기다려 신금(申禁)하겠다의미라 하였다.[103] 「화성능행도병」에는 수구의 색상이 다양한 군복이 그려져 있다. 천담군복에는 홍수와 상모(象毛)와 공작털을 제거하였다.[104] 한편 임인년(1902) 『진연의궤』 검기무 복식 중 협수는 착수주의(窄袖周衣) 형태와 흡사하나 양옆이 트여있고 진동에서 소매 끝까지 길이의 약 절반 정도로 끝동[홍수]이 표시되어 있다.

전복 · 쾌자는 대금형의 포(袍)로서 소매가 없고 양 옆과 뒤가 트인 활동적인 옷이다. 소매있는 옷과 한 벌로 구성된다. 왕실 기록에서 가례나 흉례에 통용되었으며 전복 보다는 쾌자가 널리 사용되었다. 궁중발기 임오년 가례시 관례의대 발기에는 아청 쾌자와 남송 · 송화색 · 주홍 · 초록색과 일습으로 구성되며 한삼이 부착된다. 따라서 왕실 평상의대 기록을 참조하여 쾌자로 명칭하기로 한다. 참고로 광무 2년(1898) 궁내부 소관 별감 · 별기군의 의복비용 중에는 전립가(戰笠價) 1량, 입식 및 내공 한단가(漢緞價) 3량5전, 전대(戰帶) 2량, 별군관(別軍官) 매인(每人) 군복 아청갑사 10척 26량, 홍수(紅綬) 3척 7량2전, 금향내동반골(錦香內同半骨) 1척5촌가 1량8전, 전대(戰帶) 남10량주 4척가 3량6전, 전립가 1량2전, 내공 남한단 8촌가 2량 4전, 자지회도리이엄등가(紫芝繪頭里) 1량, 조밀화패영가(造蜜花貝纓價) 8전, 흑화자가 14량 등이다. 어진의 착장은 평상의대의 기록은 없으나 군복이므로 간편하되 국왕의 품위를 표현할 수 있는 차림새로 복원하고자 하였다. 속옷으로 고의적삼과 저고리 대신 장유[소창의], 겹바지로 기본복을 착장하고 대금형의 배자(褙子)와 협수, 쾌자 순으로 정리하였다. 영조는 선조(先朝)께서 신료를 인접할 때는 항상 배자를 입으셨다고 한다. 능행 때의 의대는 몸에 편하도록 힘서야 하므로 배자를 권하여 약방에서 지어 올리도록 하였다.[105] 배자는 탐릉군(1636-1731) 배자를 참고 하였다. 구체적인 착장법은 시연을 통하여 재현할 것이다.

V. 통천관복(通天冠服) 어진과 어의

통천관과 강사포(絳紗袍, 이하 통천관복)는 대한제국 황제의 조복 차림새로서 고종황제와 순종황제가 착용하였다. 그러나 통천관복 어진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어진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국립고궁박물관에는 고종황제 통천관본 어진 한 점이 소장되어 있으나 배경에 드리워진 비단휘장, 두터운 채색 등 일본 초상화에서 볼 수 있어 일본풍이 감지된다고 하며

101) 李裕元(1871 탈고, 1961 영인). 林下筆記, 제28권.
102) 高宗實錄 고종7年 3月 13日.
103) 正祖實錄 정조1年 5月 16日. 軍服之純色, 袖口之靑色, 當待服吉申禁, 而至於制樣, 亦有受敎.
104) 承政院日記 정조13年 8月 16日.
105) 英祖實錄 영조9年 9月 7日. 副提調尹淳以陵幸時, 衣襨之宜務便體, 仰問背子之屬, 自內有之乎 命自藥房製入.

국립고궁박물관 유물대장에는 '남계 화(嵐溪 畵)'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106] 복식부분에서도 특이한 부분이 확인되는데 통천관은 백옥으로 13량으로 그려져 있고 옥대 밑에 보이는 폐슬(蔽膝)과 폐슬 위에 드리워진 담청색 운용문(雲龍紋) 비단 넓은 띠는 문헌이나 강사포를 입은 초상사진과 다르다. 흑화를 신고 있으나 문헌과 사진에는 적석(赤舃)으로 되어있다. 때문에 이번 복원 어의는 사진과 어진을 비교하여 고증자료로 활용하였다. 통천관복은 조선시대 왕과 왕세자의 원유관복과동일한 제도이며 관의 형태와 중단에서 차이를 보이며 부속제구는 면복제도를 따랐다. 반면 『국조오례의서례』(1474년) 전하 원유관복 도설과 『국조속오례의보서례』 (1751년) 왕세자 원유관복 도설은 15-18세기의 원유관복 제도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도설 내용에서 옥규의 재질이 전하 청옥규에서 백옥규로 변화되었다. 원유관복 어진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순조의 반소된 원유관복 어진이 있고[107],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의(친)왕 원유관(중요민속문화재 제274호), 그리고 류큐왕국의 왕관으로 일본 국보로 지정된 피변[通天冠形][108], 명 노황왕(魯荒王) 주단(朱檀,1370-1389, 太祖의 10男)의 출토유물 피변(皮弁)[109], 명 신종(神宗)황제(재1573-1619) 출토유물 피변[110]등을 참조할 수 있다.

1. 원유관복(遠遊冠服) 어진

왕의 원유관복 어진 기록은 숙종 어진 1본, 영조 어진 1본, 정조 어진 2본, 순조 어진 3본, 철종 어진 1본 등 총 8본이 있었으나[111] 현재는 순조 어진 모사본이 반소된 상태로 남아있다. 왕의 원유관복은 군신(群臣)들의 하례를 받을 때 착용하는 조하복(朝賀服)으로서 조복이라고도 한다. 원유관복은 면복의 경우와 같이 역대 왕의 즉위 초에 고명(誥命)과 함께 의례적으로 사여되거나 주청에 의해 반사되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의 원유관복은 고려말 공민왕 19년(1390) 명 태조 고황제로부터 사여된 7량 원유관과 방심곡령이 포함된 강사포 일습[112]에서 전래되었다. 당시 원유관은 7량에 금박산과 매미 7마리와 주취로 장식하고 서잠도를 꽂았다. 강사포, 홍상, 백사중단, 폐슬, 백가대, 방심곡령, 홍혁대, 백말, 흑석으로 일습을 이루었다.

조선에서는 국초부터 원유관복을 착용하였다. 태조 4년(1395) 10월 태묘에 가기위해 상로를 탈 때 입었으며[113] 정종도 2년 종묘에 향축을 전할 때 착용하였다.[114] 태종도 즉위초(1401년) 원유관복을 입고 명에서 보내 온 자문을 받았다.[115] 세종은 즉위년(1418년)에 연을 타고 종묘에 나갈 때 처음으로 착용하였다.[116] 세종은 특히 원유관복에 관심이 많았고 가장 빈번하게

106) 조선미(2015). 조선왕실의 어진, 『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pp.214-215.
107) 유송옥(1991). 朝鮮王朝 宮中儀軌服飾. 서울: 수학사. pp.25-26.
108) 국립고궁박물관(2014). 류큐 왕국의 보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pp.42-43.
109) 山東博物館(2014). 魯荒王墓 上. pp.68-69; 下, 圖版. pp.18-19, 69-70.
110) 定陵出土文物圖典 卷1(2006). 圖13-15.
111) 조선미(2015). 조선왕실의 어진, 『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pp.202-203.
112) 高麗史 卷七十二, 志 卷第二十六 輿服 一, 冠服. 恭愍王十九年五月 太祖高皇帝, 賜遠遊冠七梁, 加金博山, 附蟬七首, 上施珠翠, 犀簪導. 絳紗袍, 紅裳, 白紗中單, 黑領靑緣袖, 裙, 襦, 紗蔽膝, 白假帶, 方心曲領, 紅革帶, 金鉤鰈, 白襪黑舃, 受群臣朝賀服之.
113) 太祖實錄 태조4年 10月 4日. 上服絳紗袍遠遊冠, 乘象輅, 百官具公服前導, 至太廟外門, 先至諸執事出迎于道左. 上率百官至廟東門外, 行四拜禮, 乃入齋所.
114) 定宗實錄 정종2年 12月 22日. 上以遠遊冠、絳紗袍, 傳宗廟香祝, 侍臣皆具朝服.
115) 太宗實錄 태종1年 6月 12日. 上服絳紗袍、遠遊冠, 受群臣賀. 是日, 三司右使李稷、摠制尹坤等, 齎捧禮部咨文而來, 各賜鞍馬.
116) 世宗實錄 세종 卽位年 10月 2日. 上以遠遊冠、絳紗袍, 乘輦詣宗廟, 百官皆以朝服從之.

착용하기 시작한 군주이다. 세종 7년(1425) 12월 말에는 공민왕대 강사포에는 방심곡령이 있었는데 지금 쓰지 않는 이유를 묻고 다음해 1월 원단에 망궐례 후 하례에는 방심곡령을 하였으며 이때부터 강사포에 방심곡령을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2월에는 예조와 의례상정소에서 관복제도를 조정할 때에도 강사포는 당 · 송의 황태자 원유관복 제도를 참조하였다.[117] 세종 19년(1437) 8월에는 예조참판 이선(李渲)을 성절사로 파견하면서 원유관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 오도록 명하고 원유관복은 고려의 구제를 따라 사용하고 있으나 전래된지 오래되어 본색을 잃고 있으니 강사포 제작에 필요한 홍라(紅羅), 백라, 옥 등을 사오도록 하였다. 또한 원유관복에는 규와 패옥이 없는데 면복에 푸른 옥과 패옥을 통용하는 것인지, 원유관에 대해서는 고려에서 전해오는 연대를 알 수 없는 원유관이 있는데 매미가 9개 부착되고 전면 3곳에 칠보 장식이 있다. 또한 청옥의 패옥이 있고 관주는 담백옥인데 제도에 합당한지 알지 못하였다.[118] 결국 다음해인 세종 20년 1월 배신들의 조회를 받고 사신을 맞이할 때의 입을 관복을 주청하면서 진헌 예물은 황색 · 백색 세저포 각 20필, 흑색 세마포 50필, 황화석 · 만화석 · 잡채 화석 각 10장, 인삼 1백 근, 잡색마 16필, 태황태후와 황태후에게는 홍색 세저포 각 10필, 흑색 세마포 각 20필, 만화석 · 잡채 화석 각 8장씩이었다.[119] 이어서 5월에는 주청한 원유관 강사포는 이미 남경으로 떠났으며 영락 연간에 반사하지 않았다면 곧 제작하여 보낸다고[120] 하였다. 이어서 10월 드디어 원유관복이 사여되었다.[121] 다음 날에는 사여받은 원유관복과 공민왕대 원유관복이 연대가 오래되고 수차 개조하여 그 제도가 다름을 지적하면서 "高麗舊時冠袍(고려구시관포)"라 써서 보관토록 명하였다.[122] 당시 중서성 공문에 원유관복 폐슬에는 산화(山火)가 없었으나 세종 당시 상의원 원유관복에는 산화(山火)가 있었고 공양왕 영정에는 패옥이 청옥인데 상의원에 패옥은 청백옥이나 수정으로 잡되게 만들었다고 일일이 지적하였다. 이상으로 미루어볼 때 조선에서는 이미 원유관복을 자체 제작하여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한 관찬 사료에는 역대 왕조에서 착용한 기록이 다수 확인된다. 국초 강사포 부속제구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세종대에 정리되어 성종대 『국조오례의서례』에 도설로 규정되었다. 부속제구는 면복과 통용되면서 영조대 『국조속오례의보서례』에 왕세자, 왕세손의 원유관복까지 정리되어 조선의 관복으로 자리하였다. 반면 명나라는 개국 초부터 황제는 통천관과 피변복을 동시에 착용하고 있다.

117) 世宗實錄 세종7年 12月 25日; 8年 1月 1日; 8年 2月 26日.

118) 世宗實錄 세종19年 8月 28日. 遣禮曹參判李渲, 如京師賀聖節, 洪武元年, 得蒙冕服之賜, 而遠遊冠絳紗袍, 不在賜與之數, 故本國因高麗之舊而用之耳. 第傳之年久, 體制規模, 傳訛失眞, 未知今之見在者, 合於制度乎? …今若詳得其制度, 其所用明珠翠羽等物可得於本國者, 勿買, 本國所無, 須買而來; 作袍紅羅白羅等物, 亦買而來…高麗〔恭愍王〕時, 冕服遠遊冠袍, 一時受賜, 而冕服 有青玉圭,有左右玉佩, 遠遊冠袍無圭與玉佩, 無乃以冕服圭玉佩通用於遠遊冠袍乎… 本國有年代不知高麗時所傳一件遠遊冠, 上附蟬九首, 前面三處, 飾以七寶, 亦有一佩玉當蔽膝之前. 衝牙珩瑀琚璜, 皆用靑玉, 貫珠用淡白玉, 時雖不用, 亦未知合於制度乎.

119) 世宗實錄 세종20年 1月 21日. 其請冠服奏曰: 後至永樂元年間, 臣父先臣恭定王諱欽蒙特賜冕服九章…受陪臣朝見及其餘迎接勑書常時視事, 合用冠服, 未蒙頒降, 恐違朝廷之制, 伏望聖慈, 所有各件冠服頒降服用便益. …其進獻禮物, 黃白細苧布各二十匹、黑細麻布五十匹、黃花滿花席 · 雜彩花席各一十張、人蔘一百觔、雜色馬一十六匹. 太皇太后、皇太后竝紅細苧布各一十匹、黑細麻布二十匹、滿花席雜彩花席各八張.

120) 世宗實錄 세종20年 5月 13日. 勑曰 :奏請遠遊冠絳紗袍及常時視事冠服, 事下禮部, 今本部奏: "遠遊冠服, 已行南京. 查永樂中如果未頒, 卽製頒賜.

121) 世宗實錄 세종20年 10月 4日. 藝文大提學洪汝方齎勑及欽賜冠服, 回自京師, 上率百官迎勑如儀. 其勑曰 今賜王遠遊冠服, 至可領也. 賜汝方鞍馬, 設宴慰之.

122) 世宗實錄 세종20年 10月 5日. 高麗 恭愍王時, 蒙賜遠遊冠袍, 年代久遠, 累次改造. 其時中書省咨內, 無佩玉與圭. 冕服蔽膝有山火, 遠遊冠袍蔽膝無山火. 今尙衣院所在遠遊冠袍, 有單佩玉蔽膝, 有山火, 此固可疑. 恭讓王影字佩玉如靑玉, 尙衣院所在佩玉, 以靑白玉水精雜爲之, 尤爲可疑, 無乃失眞乎? 今賜冠袍有雙佩玉, 且有圭, 其體制殊異, 舊時冠袍, 固宜毁去. 然舊物, 宜備後考, 姑留一件, 藏之別櫃, 刻標曰: "高麗舊時冠袍." 今後勿用.

홍무 원년(1398) 2월 사직제 친제시 피변복(皮弁服)으로 희생을 올리고 이어서 통천관 강사포로 행례한 기록이 확인된다.[123] 『대명회전』에는 황제 피변복은 홍무 26년(1393), 영락 3년에 개정되었고 황태자와 친왕, 피변복은 영락 3년(1405)에 정비되었으나[124] 명의 멸망으로 중국의 제도는 지속되지 않았다.



그림 5. 『국조오례의서례』 원유관복 도설

원유관복은 원유관[玄羅;九梁], 규[청옥], 의[絳羅], 상[絳羅;前3後4], 대대[緋白羅] 중단[白羅;黻紋11], 패[佩2;珉玉;金鉤], 수[紅花錦;金環], 폐슬[絳羅], 말[緋段], 석[緋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9량 원유관은 면복 9장을 의방한 것이다.[125] 『국조속오례의보서례』 왕세자의 원유관복은 8량 원유관, 중단에 불문 9개로 차이를 두었고 왕세손은 7량 원유관으로 조정하였다. 이밖에 정조대 『경모궁의궤』나 『춘관통고』 등에 도설이 있으며 혁대가 추가되어 있다.

원유관복은 칭경(稱慶)이나 진하(陳賀)시에 착용하였다. 오례 가운데 가례와 길례, 흉례에 착용하였으며 국초에는 중국 고제를 참조하면서 왕조마다 관복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후기에 들어 의례가 새롭게 정비되면서 원유관복 착용도 확대되었다. 삭망(朔望)조하는 세종대 왕세자 삭망조하의(朔望朝賀儀)와 백관 삭망조의(朔望朝儀)에서 전하는 원유관 강사포를 착용하였으나[126] 이후 삭망조하를 행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정조(正朝)와 동지(冬至) 망궐례 후 조하시, 탄일(誕日) 왕세자 조하시, 군신조하시, 친임서계시(親任誓戒時), 왕실의 혼례의식에서는 납비의, 책비의, 납빈의, 책빈의, 세자빈 조현의 등에서 원유관복을 입었다. 그밖에 교서반강의(敎書頒降儀), 문무과방방의(文武科放榜의), 전향축(傳香祝) 등에서 착용하였으며 주로 오례의 내용이다. 또한 『조하등록』에도 원유관복 관련 기록이 남아있다.[127] 숙종 37년(1711)부터 숙종 45년(1719)까지 6건[128]으로 중궁전, 대전 평복후 진하, 즉위 40년

123) 太祖高皇帝實錄 卷二十八下, 吳元年(1367) 十二月 二十五日. 上親祭大社大稷…皇帝服皮弁服備法駕詣大次遂省牲視…中嚴 皇帝服通天冠絳紗袍…皇帝再拜皇太子以下在位官皆再拜.

124) 大明會典 (만력본) 권 60, 禮部 18, 관복 1, 황제관복, 황태자관복, 친왕관복 참조.

125) 成宗實錄 성종2年 6月 15日. 禮曹啓: 今殿下, 遠遊冠倣晃服九章, 用九梁.

126) 世宗實錄 132권, 五禮, 嘉禮. 朔望王世子朝賀儀, 朔望百官朝儀, 啓請中嚴,殿下具遠遊冠絳紗袍卽座.

127) 「朝賀謄錄」은 「各司謄錄」 중의 하나로 인조 26년(1648)부터 영조 31년(1755)까지 왕실의 경사를 축하할대 절차와 전말을 적은 등록으로 예조에서 필사본으로 편찬하였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원유관복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조하등록 해제 참조, 한국사데이타베이스)

128) 「朝賀謄錄」 숙종 中宮殿平復 親臨陳賀節目(1711), 卽位四○年稱慶・陳賀・頒敎時 節目(1713), 大殿平復陳賀節目,中宮殿平復陳賀節目, 大殿耆

칭경진하, 대전 육순반교 진하, 기로소입회시 칭경진하 등이다. 경종 2년(1722)부터 4년까지는 친임회맹제 2, 대전 왕대비전 평복후 진하 각 1건등 총 4건이다.[129] 영조 4년(1728)부터 영조 31년(1755)까지 16건의 진하 절목이 있으며[130] 중복된 의례 외에 역적 토벌진하, 선의왕후 태묘후 진하, 비망기 환수 진하, 친경익일 반교진하, 왕세자입학진하, 왕세자관례진하, 대사례익일반교진하, 원손탄생진하 등에서 왕, 왕세자는 원유관복으로 행례하였다. 어진 이안시 봉심 할 때에도 원유관복을 입었으며[131] 온천 거둥시에도 출궁시에는 융복 차림으로, 도강하여 배에서 내릴 때에는 강사포를 입었다.[132] 길례 가운데는 왕이 참석하는 친제는 대사(大祀)로서 종묘와 사직, 영녕전(永寧殿)에 지낸다. 『국조오례의』와 『국조오례의서례』에는 길례를 처음에 두어 가장 중요하게 대우하였다. 후기에는 『춘관통고』에 재정비 되었다. 왕이 강사포를 착용하는 경우는 거가출궁과 환궁에서 여(輿)를 탈 때이다. 여는 국왕이 궐 안팎에서 탔으며 국립고궁박물관에는 남여(藍輿)가 소장되어 있다. 남여는 지붕이 없으며 등받이와 발판이 있는 의자에 가마채를 부착한 것으로 산수문, 봉황문, 당초문을 투각으로 장식하였고 주칠되어 있다.[133] 예외는 있으나 국왕이 여를 탈 때는 강사포를 입는 경우가 많다. 제물로 사용할 희생(犧牲)을 살필 때 원유관복을 입었으며 태묘에서 친임하여 행례한 것은 영조 21년(1745)부터이다. 향축을 전할때는 익선관복, 제례시 면복으로 갈아입고 사배례를 하고 봉심, 생기(牲器)를 살펴보았으며 원유관복으로 갈아입고 희생을 살피는 자리에 나아갔다.[134] 관복을 의례 성격에 따라 갈아입었으며 이를 개구(改具)라 하였다.[135] 원유관복을 흉례(凶禮)에 사용하는 것은 소렴과 대렴에서 염의(殮衣)로 사용하였다.

강사포(絳紗袍)의 '絳'은 한번 염색한 것을 강색이라 하고 엷은 홍색[纁紅]을 말하며 제왕의 의례복식에는 황색, 홍색, 진홍색을 쓴다고 하였다.[136] 『국조오례의서례』 원유관복 강사포는 강라(絳羅)로 되어 있고 연산군 10년 6월 15일에는 하절용 강사포를 논의하면서 전에는 라(羅)를 썼으나 사(紗)도 무방하다 하였고 중종 20년 2월 4일에는 강사포의 뚫어진 곳이 많아 보수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당시 강사포는 하절용 사로 만든 것이었다. 정조 2년에는 즉위년 봄에는 대홍공단으로 만들었는데 하절용이 아니니 전과 같이 대홍숙초가 논의되었으나 고례에는 동정용 공단, 하절용 무문사로 만들었으나 최근에는 숙초로 하고 있으니 금번을 무문사로 만들도록 하였다.[137] 「궁중발기」에는 임오년(1882) 왕세자[순종] 가례시 다홍 공단과 다홍 숙갑사, 다홍 인접문사(鱗蝶紋紗), 다홍 생수갑사(生水甲紗)로 만들었다. 병오년(1906)

老所入會時 稱慶·頒敎·陳賀節目, 大殿 六旬頒敎·陳賀時 節目, 親臨會盟祭節目, 會盟祭親臨節目 會盟祭親臨節目.

129) 「朝賀謄錄」 경종 親臨會盟祭節目, 大殿,王大妃殿平復陳賀.

130) 「朝賀謄錄」 영조 討逆陳賀,宣懿王后 太廟後陳賀, 備忘記還收陳賀, 親耕翌日頒敎·陳賀節目, 王世子入學陳賀, 王世子冠禮陳賀, 大射禮翌日頒敎·陳賀節目, 元孫誕生陳賀.

131) 純祖實錄 순조2年 8月 15日 .肅宗大王御眞、英宗大王御眞, 還安于璿源殿…正宗大王御眞…移安于第三室, 親行茶禮…上具遠遊冠、絳紗袍, 出自小次鞠躬.

132) 국역 備邊司謄錄. 숙종43年 2月 10日. 出宮時, 殿下具戎服, 乘駕轎…大駕渡 江下船時, 改御絳袍.

133) 국립고궁박물관(2005). 조선왕실의 가마.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pp.19-20.

134) 英祖實錄 영조21年 4月 7日. 上詣太廟省牲, 親臨省牲始此… 上親押訖, 奉香祝親傳獻官, 仍以翼善冠、袞龍袍, 詣太廟改具冕服, 行四拜禮. 奉審、省器如儀, 次詣永寧殿亦如之. 改具遠遊冠、絳紗袍.

135) 大祀관련 이민주「국왕의 제복」이 있다. (이민주 외 5인(2009). 조선의 국가 제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pp. 205-252.)

136) 高麗史 卷72, 志卷26, 輿服1. 冠服 視朝服 文宗十二年四月 禮司奏…古史云, '一染謂之絳, 註纁紅也.' 然則帝王之服, 備禮則黃赭絳三色.

137) 日省錄 정조2年 3月 21日.

황태자[순종] 가례시 다홍공단으로 제작되었다.[138]

2. 통천관복의 어진과 어의

상기한 바와 같이 역대 어진 기록에서 통천관복 어진은 보이지 않는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고종황제 통천관복 어진은 초상화 기법이나 복식에서도 문제가 있으나 색감을 볼 수 있다. 의친왕 원유관을 참조할 수 있다.

통천관복은 광무(光武) 원년(1897)『대명회전』을 취하여 처음 마련된 황실 관복에 황제 통천관복, 황태자 원유관복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즉 황제의 통천관복은 통천관, 강사포, 소사중단(素紗中單), 홍상(紅裳), 폐슬(蔽膝), 규(圭), 옥패(玉佩), 대대(大帶), 대수(大綬), 말(襪), 석(舃) 등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옥패부터 석까지는 면복과 병용하며 삭망(朔望) 시조(視朝) 강조(降詔) 강향(降香) 진표(進表) 조근(朝覲)에 착용한다[139] 하였다. 통천관복은 피변복으로 명칭만 달리 하였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광무 원년에 시행된 황제 통천관복제도에서 통천관은 명 홍무 26년(1393)과 동일하고 나머지 부분은 영락 3년(1405)제도와 같다.[140]

고종황제는 고종 34년 1897년 9월 17일(양10월12일) 12장면복을 입고 황제로 즉위하였다. 다음 날 태극전에 나아가 조서(詔書)를 반포하고 백관들의 진하를 받을 때 처음으로 통천관복을 착용하였다. 이후 고종 40년(1903) 3월 27일(양) 영친왕의 천연두 회복을 기념하여 진하를 받을 때 통천관복을 마지막으로 착용하였다. 이는『승정원일기』고종황제의 통천관복 착용기록이며 경효전에 친임하여 희생을 살필 때가 많았고 원단(元旦)진하, 기로소진하, 고동가제(告動駕祭), 만수성절(萬壽聖節) 진하, 책보친수(冊寶親受) 진하 등 40여건의 착용기록이 있다.[141]

통천관복은 유물이 남아있지 않고 고종황제와 순종 황제의 초상사진이 있다. 원유관복 일습에서 관, 중단에서 차이를 보이며 부속제구는 9장복 부속제구와 통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 가례(1919년 예정)를 위해 새로 제작된 부속제구들이 있다.

대한제국의 통천관복 제도는 원유관복에서 관과 중단에서 격상되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한제국에서 강사포를 제작한 기록은 병오년(1906) 황태자[순종] 가례시 다홍공단으로 제작되었고 장서각 소장 상방각양전례등록 가운데 상방전례기(尙方前例記;1890-1908사이 추정)에는 공단강사포 15량, 항라 강사포 15량의 기록이 있다. 기미년(1919) 1월 21일 고종황제 승하시 대렴의대에는 강사포 일습으로 다홍공단강사포, 백갑사삼[중단], 다홍갑사상, 대대, 금의단후수, 폐슬, 옥대, 옥규, 패옥이 일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919년 국상빈전(國喪殯殿)수요품발기에는 강사포를 소렴에 사용하였으며 평일소어(平日所御)라[142] 하여 평소에 입던 것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금번 복원하는 통천관복에서는 중단을 백삼

138) 이명은(2003). 궁중복식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 장서각소장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3, 157, 182, 187.

13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증보문헌비고.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p.228-230, 232-234. 국역 增補文獻備考 제79권 예고 26 장복 1 군복 조선. 光武元年始定皇帝冕服之制取大明會典所載....通天冠 絳紗袍 冠用烏紗帽之前後各十二縫其中各綴五彩十二以爲飾玉簪導紅組纓 袍本色領標襈裾 紅裳如冕服內裳制但不織章數 中單以素紗爲之如深衣制紅領標襈裾領織黼文十三 蔽膝隨裳色本色緣有玉鉤二 圭長如冕服之圭有脊幷雙植文炎其上黃綺約其下及韜金龍文 玉佩大帶大綬襪舃如冕服內制 凡朔望視朝降詔降香進表朝覲服.

140) 대한제국 복식제도 연구는 최규순(2010). 대한예전 복식제도 연구. 아세아연구, 53(1) 가 있다.

141) 承政院日記 고종34年 9月 18日 - 고종40年 3月 27日 참조.

142) 이명은(2003). 궁중복식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 장서각소장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3.

심의형으로, 상은 갑사로 고증하였다.

어의 착장은 영친왕 가례시 평상의대와 1938년 4월 낙선재 문서 중에 '王殿下 王妃殿下 御禮服着裝順序'를 참조하였다.[143] 원유관복 착장 형태는 반소된 순조어진을 참조하였다.

1926년 4월 26일 순종황제가 승하하고 7월 1일자 동아일보에는 순종황제께서 입으시던 대례복인 곤룡포와 황태자의 조선식 예복 등을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이라 하였고 이어서 7월 7일자 신문에는 일부 귀족들에 반대로 강사포와 곤룡포를 전시하지 않을 것이라 보도하였다(그림 6).[144]


一般公開는 中止
◇袞龍袍陳列問題
博物館併合은

그림 6. 1926년 7월 7일 동아일보 기사

VI. 어진(御眞)과 어의(御衣) 복원의 의미와 제문제

어의 복원 대상 어진은 태조 익선관본 청포본, 영조 익선관본, 익종 면복본, 철종 군복본. 고종황제 통천관본 등 총 5점이다. 익종 면복본은 왕세자용으로 예진(睿眞)이며 고종황제 통천관복은 어진 기록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왕의 원유관복 어진은 순조 어진이 반 이상 소실된 상태이며 관련 유물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에 포함하였다. 조선 역대 왕의 관복[면복]은 명(1398-1644)으로부터 사여 받았으나 국초부터 조선의 제도를 일부 반영한 도설(圖說)로 남겨 언제라도 제작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국조제도를 완성하였고 대한제국의 관복도 이러한 배경 아래서 황제관복의 격상이 가능하였다. 조선 왕실은 의궤나 정례류를 포함한 다양한 복식관련 기록물을 남겨 고증이 가능하다. 다만 역대

143) 국립고궁박물관(2010). 영친왕일가 복식.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p.537.
144) 동아일보 1926- 7-1, 7-7, 참조.

가례도감의궤류(1627-1906)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복식[平常衣襨] 기록들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기록하여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기타 왕실문헌에도 볼 수 있어 실행 제도와 유물의 비교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금번 어의의 복원에는 국상(國喪)에 준비된 염습의대를 기준하여 여타 자료와 비교하였다. 염습의대(殮襲衣襨)는 습의(襲衣;壽衣)와 소렴과 대렴의 염의(殮衣)로생전에 착용한 어의들을 사용하였다. 태조 익선관본 청포본은 고명(誥命)을 받기 이전 권지국사(權知國事) 신분에서 길복(吉服)차림으로 고증하였고 평상의대는 변수묘 출토복식과 명대 노황왕묘 유물은 참조하였다. 영조 익선관본 어의는『상방정례』도설자료와 밀창군묘 단령과 탐릉군묘 답호를 참조하였다. 유물 중에는 답호로 보이는 유물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밖에 영조 습의 기록을 참조하여 복원하였다. 익종 면복본 어의는 임오년(1882) 가례복식과 현의와 중단 유물을 참조하였고 장문(章紋)은『국혼정례』기록은 참조하여 모두 그림으로 복원하였다. 철종 군복본 어의는 어진 그림에 충실하면서 전세 유물과 비교하였으며 탐릉군 배자를 추가하였다. 고종황제 통천관본 어의는 순조 원유관복 어진과 대한제국 기록물을 참조하였으나 문헌 기록에 차이를 보여 고증의 한계를 보였다. 이와같이 어의 고증과 복원 과정은 쉽지 않았다. 어진 관련하여 구체적인 어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왕실 기록물의 한계와 동시대 평상의대 유물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평상의대 가운데는 시대적인 차이는 있으나 왕실의 후손 묘에서 발굴된 특별한 유물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고증에 앞서 다양한 편복류를 선보이고자 하였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출발점에 의미를 두고 전통한복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高麗史』
『國朝續五禮儀補序例』
『三國史記』
『茶山詩文集』
『大韓禮典』
『宣和奉使高麗圖經』
『承政院日記』
『研經齋全集外集』
『林下筆記』
『朝鮮王朝實錄』

국립고궁박물관(2005). 조선왕실의 가마.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2010). 영친왕일가 복식.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2014). 류큐 왕국의 보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2015). 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2007). 국역 國婚定例. 서울:국학자료원.
國語史資料研究會 譯註(1995). 飜譯老乞大. 서울: 太學社.
서울대학교규장각(2001). 高宗大禮儀軌 영인본.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석주선(1985). 衣. 서울: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증보문헌비고.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유송옥(1991). 朝鮮王朝 宮中儀軌服飾. 서울: 수학사.
이민주 외 5인(2009). 조선의 국가 제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金哲培(2011). 憲宗 3年(1837) 永興 濬源殿 太祖御眞 移模過程 研究. 大東文化研究, 76, 299-330.
박성실(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壬辰倭亂 以前 時期를 中心으로.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성실(1994). 豊公遺寶圖略에 나타난 宣祖祖 王室服飾. 韓國服飾, 12, 105-117.
박성실(2004). 서울 상암동 출토 全州李氏 密昌君 服飾 考察. 韓國服飾, 22. 85-107.
박성실(2006). 임진왜란 남녀복식의 조형적 특징.
박성실(2011). 대한제국 황실의 적의제도. 고궁문화, 4, 7-48.
박혜진(2005). 조선시대 후기 궁중패물 연구: 〈궁중발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진영(2004). 장서각 소장 어진도사사실의 정조-철종대 어진도사. 장서각, 11, 283-336.
이명은(2003). 궁중ᄇᆞ긔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 장서각소장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규순(2010). 대한예전 복식제도 연구. 아세아연구, 53(1), 183-218.

大明會典
山東博物館(2014). 魯荒王墓 上.
山東博物館(2014). 魯荒王墓 下.
王圻・王思義 編集. 三才圖會 四, 영인본. 上海古籍出版社.

Portraits of the King and Wearing of Attire of the King in Joseon Dynasty

Sung-Sil Park
Nansa Institution of Traditional Costumes

Eojin refers to the portrait of the King and Yejin to the portrait of the crown prince. Eoui refers to an official's attire as a Gwanbok and inner daywear in the portrait of the King and the portrait of the crown prince. The attires of the kings to be restored are the portraits of Taejo, Yeongjo, Ikjong (Prince Hyomyeong), Cheljong and Gojong.

The official uniform system of Ming Dynasty was accepted in the officials' attire of the early Joseon Dynasty which was to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explanatory diagram in 'Kukcho oryeui' through Jucheong and Sayeo. The official uniform system of Joseon style was sorted out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status of emperor state was complet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official attire system of the emperor. There are Uigwes related to Eojin remained but th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ostume designs is not foun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official records of the official uniforms have been used because no artifact materials except for Hyin-ui(King's or crown price's ceremonial robe) and Jungdan, Mam's inner robe of the Myeonbok, King's ceremonial attire as the data for historical researchremain. Dressing at ordinary time was based on the shroud at the time of national mourning and the relics were referred to in the light of the relics of Buddhist Statue Enshrinements and the excavated costumes of the royal family.

A suit is composed of blue Gorlyongpo(Dragon robe) - Dapo(Coat with short sleeve) - Cheollik(Coat with pleats) - Jeogori(Jacket) - Baji(Pants) - Hansam(Undetshirts) - Sokbaji(Inner pants) - Baekmal(white socks) and Heukwha(black shoes) in the portrait of King Taejo. A suit is composed of Gorlyongpo – Dapo – Jungchimak(Coat) - Jangui(coat)- Baji(Pants)- Goui(Jacket)-Baekmal(White socks) in the portrait of King Yeongjo. A suit is composed of Hyin-ui(King's or crown price's ceremonial robe) – Jungdan(Inner robe) - Chang-ui(Coat) - Janguidae(Coat) - Jeogori – Baji - Hansam – Goui - Baekmal – Jeokmal(Red socks) in the portrait of King Ikjong. A suit is composed of Gwe-ja(Sleeveless with dragon insignia) - Dongdari(Military official's robe with dragon insignia) - Baeja (overcoat with narrow sleeves) - Jang Yu(Coat) - Baji - Hansam – Goui - Baekmal in the portrait of King Cheoljong. A suit is composed of Gangsapo(King's ceremonial robe) - Jungdan – Jeonbok(Overcoat) - Ju-ui(Coat) - Baji - Hansam - Goui in the portrait of King Gojong.

Restoration of attires in the portraits of the Kings were conducted on the historical research on a variety of data, including the old literatures, such as 'Gukjosokoryeuiboseorye', 'Daemyeonghuijeon', 'Daehanyeojeon', 'Yeobok' and official records, the antique artifacts, excavated attire artifacts.

Restoration of King's attire in the portrait of the King was first attempted, which signifies the beginning of the studies on King's attire with the additional supplementation expected.

Key Word : Eojin(Portraits of the King), Eoui(Wearing of Attire of the King), Taejo, Yeongjo, Ikjong (Prince Hyomyeong), Cheljong, Gojong.

명대(明代) 황제 예복의 착장법[穿着法] 연구[1)]
- 황제의 면복(冕服)과 상복(常服)을 중심으로 -

자오렌상
중국사회과학원

논문요약

황제의 예복은 중국 고대 복식 가운데서 최고의 등급을 나타낸다.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황제의 예복들은 제도(制度)와 예의(禮儀), 문화(文化)와 심미(審美)를 한데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봉건 국가의 황권이 갖는 이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장중하고 화려한 면복(冕服)과 간편하고 실용적인 상복(常服)이 예복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주대(周代)에 면복 제도가 제정된 이래, 면복 특유의 품격과 풍부한 상징성으로 말미암아 역대 통치자들이 선호하였으며 명대 말기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간편한 상복은 수대(隋代)에 중국 관복 제도에 편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로부터 더욱더 인기를 얻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면복과 상복을 비롯한 예복의 구성과 역사 등에 관련된 연구가 깊이 있게 다루어져 왔으며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면복과 상복을 포함한 황제 예복의 구체적인 착장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명대 황제 예복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성을 띤 면복과 상복을 연구대상으로 하되, 문헌자료과 유물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명대 황제 예복의 내 · 외의(內 · 外衣) 및 패식(佩飾)의 착장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주제어 : 명대(明代), 황제(皇帝), 예복(禮服), 면복(冕服), 상복(常服), 착장법

I. 머리말

고대 복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복식사(服飾史), 복식제도(服飾制度), 복식구조[服飾結構], 복식색채(服飾色彩), 복식문양[服飾紋案], 복식심미(服飾審美), 복식풍격(服飾風格)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룩한 성과들도 이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연구자의 견해로는, 이 글에서 다루게 될 황제 또는 왕실의 착의 순서에 대한 내용이 최소한 중국 대륙에서는 극히 드물게 언급되어 왔다. 이는 고대 복식 연구 분야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명대 황제의 예복은 쓰임에 따라 면복(冕服), 통천관복(通天冠服), 피변복(皮弁服), 무변복(武弁服), 연변복(燕弁服), 상복(常服)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예복마다

1) 원문의 '천착법(穿着法)' 은 '착장법(着裝法)' 의 중국식 용어이다. 이해의 편리를 위하여 원문의 '穿着法' 을 '착장법' 으로 대응시켰다. 이하의 번역문에서는 고유명사에 한하여 최대한 원고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였으며, 다소 낯선 용어들에 한해서는 대응되는 한국식 용어를 나란히 함께 제시하였다.

투고일 : 2016. 3. 14 심사개시일 : 2016. 3. 20 심사완료일 : 2016. 5. 6 게재확정일 : 2016. 5. 13

표현형식(表現形式)과 특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과 특징은 중단(中單), 외의(外衣), 그리고 부속품을 통해 표현된다. 명대 황제의 예복 및 그 착의 순서와 관련된 문헌과 유물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복의 종류 및 중단(中單), 외의(外衣), 부속품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많이 발견되는 반면 중단 속에 입는 '내의(內衣)'에 대한 기록은 희소한 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고고학적 자료를 빌어 연구하고 추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면상의 제약으로 본고에서는 명대 황제의 예복 중 예의(禮儀) 정도가 가장 높은 면복과 가장 낮은 상복의 착장법에 대하여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는 면복과 상복에서 중단 및 중단 밖에 어떤 구성물들이 있고 착의 순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면복과 상복을 포함한 황제의 예복에서 중단 속에 착용한 '내의(內衣)'가 어떠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Ⅱ. 명대 황제의 면복과 상복 착용의 표현형식(表現形式)

1. 면복

예의제도(禮儀制度)와 문화예술(文化藝術)을 겸비한 면복은 명대 황제 예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례복(大禮服)으로서 천지나 종묘에 제사를 지내거나 정단(正旦), 동지(冬至), 성절(聖節), 조회(朝會), 책배(冊拜) 등 행사 때 착용한다. 여기에는 면관(冕冠), 상의(上衣), 하상(下裳), 중단(中單), 폐슬(蔽膝), 대대(大帶), 혁대(革帶), 옥패(玉佩), 수(綬), 버선[襪], 석(舃) 등이 포함되며 중단 속에 착용하는 내의(內衣)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래 면관(冕冠)과 버선[襪], 석(舃) 이외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중단(中單)과 외의(外衣)로 나누어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순서로 설명해 나갈 것이다.

1) 면관(冕冠)

면관은 면판(冕板), 면류(冕旒), 무[武: 冠筒], 굉(紘), 영(纓), 비녀[簪] 등으로 이루어진다. 『명사(明史)』『여복지(輿服志)』에 기록된 "(영락 3년에 정하기를) 면관은 조사(皂紗)로 만든다. 위의 덮개를 연(綖)이라고 하는데, 오동나무판[桐板]으로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비단[綺]으로 감쌌다. 겉이 검고[玄] 안이 붉으며[朱], 앞은 둥글고 뒤는 네모나다. 옥형(玉衡)으로 관(冠)을 받치고, 옥잠(玉簪)으로 뉴(紐)를 관통한다. 뉴(紐)와 무(武), 그리고 영(纓)을 묶는 곳은 모두 금으로 장식한다. 연(綖)의 좌우에 주광충이(黈纊充耳)를 늘어뜨리는데【황옥(黃玉)이다】 이는 검은색[玄] 담[紞]으로 묶고 백옥(白玉)으로 된 전(瑱)을 받친다. 굉(紘)은 붉은색이다."[2] 라는 내용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고대의 남성들은 출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머리를 길러 상투[髻]를 틀었다. 면관을 착용할

2) 『明史』 卷六十六(1974). 中華書局. p.1616: "(永樂三年定)冕冠以皂紗爲之, 上覆曰綖, 桐板爲質, 衣之以綺, 玄表朱裏, 前圓後方. 以玉衡維冠, 玉簪貫紐. 紐與冠武, 並系纊處, 皆飾以金. 綖以左右垂黈纊充耳【用黃玉】, 系以玄紞, 承以白玉瑱. 朱紘.)"

때도 이를 직접 상투에 올려 쓴 다음, 비녀[簪]로 무(武) 양쪽의 뉴(紐)와 상투를 관통함으로써 일차적으로 면관을 고정시켰다. 그러나 비녀[簪]만으로 면관을 고정시키기에는 그다지 견고하지가 않았으므로 굉(紘)을 비녀[簪]의 한 쪽에 맨 후 턱을 따라 돌려서 비녀[簪]의 다른 한 쪽에 묶음으로써 면관을 보다 견고하게 하였다. 이외에 면관 양쪽에 각각 영(纓)을 늘어뜨려 턱 아래쪽에 묶음으로써 삼중으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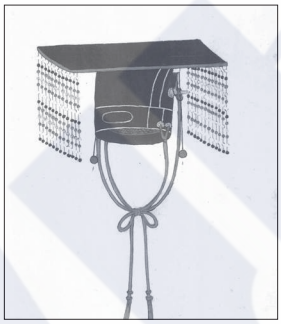


그림 1. 면관(冕冠)
From.『明宮冠服儀仗圖』

2) 중단(中單)

중단은 '단의(單衣)' 또는 '중의(中衣)'라고도 하는데 안감을 넣지 않는다. 예복의 상의 바로 안에 입는 받침옷으로서 문헌상 확인되는 복식 중 가장 안쪽에 입는 옷이다.『석명(釋名)』『석의복(釋衣服)』에 "단의(單衣)는 안감이 없는 것을 말한다."는 기록과 "중의(中衣)는 소의(小衣) 밖과 대의(大衣) 안에 입는 것을 말한다."[3] 라는 기록이 있다. 명대의 중단은 소사(素紗)로 지은 포(袍) 형태의 것이다. 교령우임(交領右衽)식이며 깃, 수구(袖口)와 도련[衣緣]이 청색(靑色)으로 되어 있다. 옷 앞쪽 깃[前襟領]의 아래와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고름[絲帶]이 하나씩 달려 있는데, 옷을 착용할 때 함께 묶는다. 영락 3년(1405년)부터 중단의 깃에 13개의 불(黻) 무늬를 장식하기 시작하였다(그림 2).



그림 2. 13개의 불무늬가 장식된 중단
From.『明宮冠服儀仗圖』

3) (東漢)劉熙撰、(淸)畢阮、王先謙補(2008).『釋名疏証補』卷第五. 中華書局. p.171: "單衣, 言無裏也."; "中衣, 言在小衣之內, 大衣之中."

3) 상의(上衣)와 하상(下裳)

중단을 입은 후 그 위에 입는 것이 상의와 하상이다. 상의는 '현의(玄衣)'라고도 하는 것으로 교령우임(交領右衽)식의 장포(長袍) 형태이다. 그리고 하상은 '훈상(纁裳)' 또는 '황상(黃裳)'이라고 하며 치마와 비슷한 형태를 띤다. 이들 모두 구체적인 복식 규제가 있다.[4] 상의와 하상은 고대 복식 문화에서는 각각 하늘과 땅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제(禮制)에서 정색(正色)은 주로 하늘에, 간색(間色)은 주로 땅에 쓰인다. 『예기(禮記)』『옥조(玉藻)』에 "의(衣)는 정색(正色)이고, 상(裳)은 간색(間色)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하여 정현(鄭玄)은 "면복은 위가 검은색[玄]이고 아래가 붉은색[纁]이다."라고 주(注)를 달았고, 공영달(孔穎達)은 "채색 중에 검은색[玄]이 가장 귀하다. 검은색[玄]은 하늘의 색[天色]이므로 정(正)이다. 붉은색[纁]은 땅의 색[地色]이다. 붉은색[赤]과 노란색[黃]이 섞여 있으므로 간색(間色)이다."라고 소(疏)를 달았으며, 황씨(皇氏)는 "정(正)은 청(靑)·적(赤)·황(黃)·백(白)·흑(黑)의 오방(五方) 정색(正色)이다. 부정(不正)은 오방(五方) 간색(間色)으로 녹(綠)·홍(紅)·벽(碧)·자(紫)·유황(騮黃: 棗紅色)이 그것이다."라고 하였다.[5] 주원장(朱元璋)은 면복 제도의 완벽함을 추구한 동시에 명대의 면복을 '한 시대의 규범[一代典範]'[6] 으로 만들려는 환상을 품었다. 그리하여 상고적 요순시대(堯舜時代)의 전설에 의거하여 상(裳)의 색을 '훈색(纁色)'에서 '황색(黃色)'으로 바꾸었다. 이 또한 두 정색(正色)이며 예제(禮制)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주례(周禮)』『사복(司服)』에 "왕의 길복(王之吉服)"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후대에 가공언(賈公彦)이 소(疏)하기를, "현의(玄衣: 검은색의 외의)와 훈상(纁裳: 붉은색의 상)이다. 『역(易)』『계사(系辭)』에 '황제, 요·순임금이 의(衣)와 상(裳)을 전승한 것은 건곤(乾坤)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건(乾)은 하늘이고 색이 검으며, 곤(坤)은 땅이고 색이 노랗다."[7]라고 하였다. 주원장이 실시한 개혁은 명대 이후 면복의 색상에 영향을 주었는데, 가정제(嘉靖帝, 재위 1521~1566년) 때 곧 하상의 색을 '훈색(纁色)'에서 '황색(黃色)'으로 바꾼 바 있다.

이처럼 색상에 대한 요구가 엄격할 뿐만 아니라, 명대 면복에는 십이장문(十二章紋)을 그리거나 수놓기도 하였다(그림 3). 십이장의 무늬는 내용에 따라 일(日), 월(月), 성(星), 산(山), 용(龍), 화충(華蟲), 종이(宗彝), 조(藻), 화(火), 분미(粉米), 보(黼), 불(黻)로 나뉘며[8] 장문마다 각각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당(唐)의 공영달(孔穎達)은 『상서(尙書)』『익직(益稷)』에 대한 그의 주석[正義]에서 "고씨(顧氏)가 선유(先儒)의 말에서 취하기를, 일(日), 월(月), 성(星)으로부터 임하여 비춤[臨照]을 취하고, 산(山)은 능히 구름과 비를 일으킴을 취하고, 용(龍)은 그 변화에 방향이 없음을 취하고, 화(華)는 문장(文章)을 취하고, 꿩[雉]은 강직함을 취하고, …… 조(藻)는 문(文)이

4) 『大明會典』((明)李東陽等撰·申時行等重修(1976). 大明會典 卷六十. 臺灣新文豊出版公司影印明抄本.): "(상) 앞은 3폭이고 뒤는 4폭인데, 앞뒤가 서로 이어지지 않게 하되 허리를 하나로 하며, 주름이 있다.((裳)前三幅, 後四幅, 前後不相屬. 共腰, 有辟積.)"

5) 『禮記正義』(十三經注疏(1980). 中華書局. p.1477.): "衣正色, 裳間色"; "冕服玄上纁下."; "采色之中, 玄最貴也. 玄是天色, 故爲正. 纁是地色, 赤黃之雜, 故爲間色."; "正, 謂靑、赤、黃、白、黑五方正色也. 不正, 謂五方間色也, 綠、紅、碧、紫、騮黃是也."

6) 자세한 내용은 『明太祖實錄』 卷一五五(1962). 臺灣歷史語言研究所据北平圖書館紅格抄本影印本. p.2418 참조.

7) 『周禮注疏』(十三經注疏(1980). 中華書局. pp.781-782.): "知'玄衣纁裳'者, 見『易·系辭』: '皇帝堯舜垂衣裳, 槪取諸乾坤.' 乾爲天, 其色玄, 坤爲地, 其色黃."

8) (明)王圻等(1988). 三才圖會 (中). 上海古籍出版社. p.1507 참조.

있음을 취하고, 불[火]은 화염이 위로 향함을 취하고, 분(粉)은 결백을 취하고, 쌀[米]은 능히 기름[能養]을 취하고, 보(黼)는 능히 잘라냄을 취하고, 불(黻)은 선과 악이 서로 등짐을 취한다."[9]라고 하였다. 옛날 사람들은 이상의 덕목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해당 덕목에 어울리는 문안을 새겨 넣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위관자(爲官者)의 도덕과 품행에 대한 사람들의 희망과 요구를 반영하였다.

문양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도덕적 상징성 때문에 어떤 문양이나 할 것 없이 가려지는 것은 금물이었다. 따라서 명대에는 문양들이 갖는 의미를 두루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의와 하상의 길이, 장문의 분포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이는 명대의 착장 순서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면복은 마땅히 착장 순서에 따라 하상을 먼저 입고 나중에 상의를 입어야 했다. 하지만 이 순서를 따를 경우 길고 넓은 상의에 의해 하상의 장문이 가려지게 된다. 이 때문에 가정 황제는 상의가 하상의 장문을 가린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신하들은 예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장문은 "의(衣)가 6장, 상(裳)이 6장으로 위아래가 균등하고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으므로 의가 상을 가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10] 라고 하였고, 결국은 가정 황제의 주장에 따라 영락 3년에 제기된 "의(衣) 8장, 상(裳) 4장(衣八章, 裳四章)"의 배치를 수정하는 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의와 하상이 각각 6장으로 바뀌었으며 상의(上衣)의 길이가 원래보다 짧아져 "아래가 상(裳)과 가지런해졌으므로"[11] 의(衣)가 상(裳)을 가리지 않고 장문이 또한 가려지지 않는 목적을 이루었다. '그림 4'는 『대명회전(大明會典)』에 나오는 하상(下裳)의 그림으로서 '화(火), 종이(宗彝), 조(藻), 분미(粉米), 보(黼), 불(黻) 6장'이 그려져 있다.

면복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의 착장법은 복잡하지 않다. 우선 상(裳)을 착용한다. 하상은 앞치마처럼 윗쪽 양끝에 고름[織帶]이 하나씩 있다. 앞으로부터 뒤로 둘러 허리 뒤에서 두 고름을 묶는 방식으로 착용한다. 그리고 상의를 입는다. 즉 교령의(交領衣)를 착용하는 과정인데, 이때 관건은 양쪽 옷깃을 고정하는 일이다. 먼저 안자락[內衽]의 옷깃을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돌려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감싼 후에 왼쪽 겨드랑이 아래와 안자락의 끝부분에 있는 고름[織帶]을 서로 묶는다[12](그림 5). 나중에 상의의 왼쪽에 놓여있는 겉자락[外襟]을 오른쪽으로 돌려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감싼 뒤에 겨드랑이 아래쪽과 깃[衽]의 끝에 놓여 있는 두 고름[織帶]을 묶는다. 이상으로 의(衣)와 상(裳)의 착장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면복의 부속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9) 『尙書正義』(十三經注疏(1980). 中華書局. p.142.): "顧氏取先儒等說: 以爲日、月、星取其臨照; 山取能興雲雨; 龍取變化無方, 華取文章, 雉取耿介, ……藻取有文, 火取炎上, 粉取潔白, 米取能養, 黼取能斷, 黻取善惡相背."

10) 明世宗實錄 卷一零一(1962). 臺灣歷史語言研究所据北平圖書館紅格抄本影印本. p.2387: "衣六章、裳六章, 上下適均, 義各有取, 衣自不容掩裳."

11) 明世宗實錄 卷一零一(1962). 臺灣歷史語言研究所据北平圖書館紅格抄本影印本. pp.2387-2388: "與裳要下齊."

12) 이와 유사한 방법은 江西省博物館等編(2010). 江西明代藩王墓. 文物出版社. p.135을 참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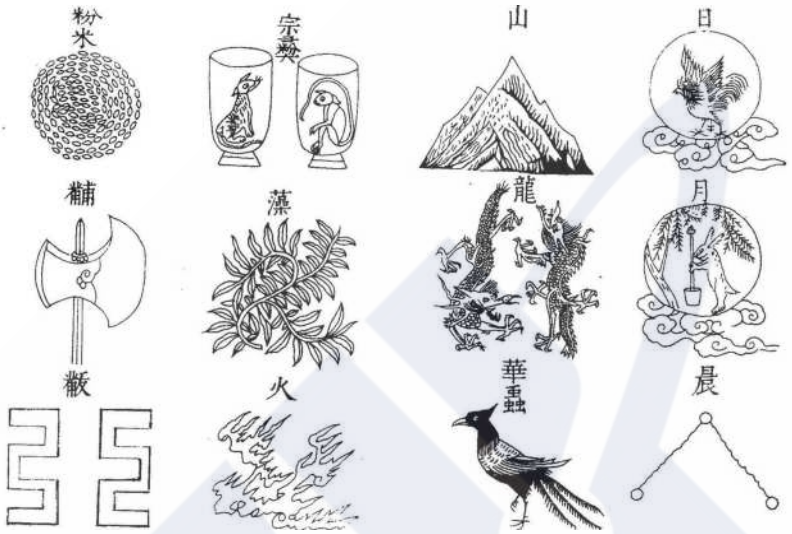


그림 3. 십이장문(十二章紋)
From.『三才圖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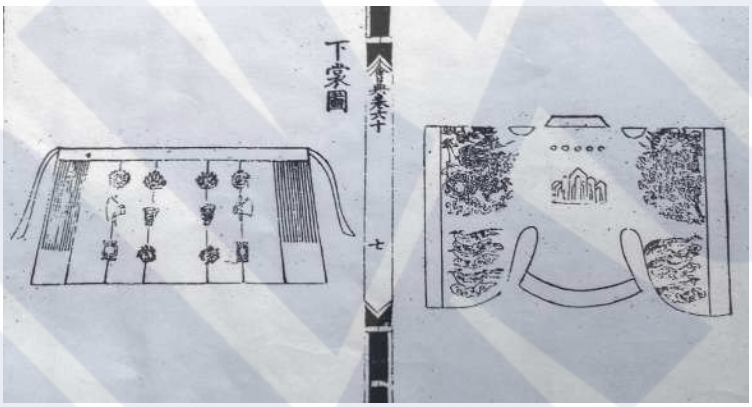


그림 4. 상의(上衣) 6장, 하상(下裳) 6장의 6장 면복
From.『大明會典』



그림 5. 고름이 부착된 중단

4) 폐슬(蔽膝), 옥패(玉佩), 수(綬)

폐슬, 옥패, 수는 면복의 바깥쪽에 착용하는 패식(佩飾)이다.

폐슬은 면복과 함께 착용했을 때 '불(芾)'이라고 하고, 기타 예복과 함께 착용했을 때 '필(韠)'이라고 한다. 위가 좁고 아래가 넓으며 몸 앞쪽 아래에 착용하는 앞치마 형태의 예복이다. 『시경(詩經)』『소아(小雅)-채숙(采菽)』의 "붉은 폐슬[赤芾]은 무릎에 있고, 행전[邪幅]은 아래에 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정현(鄭玄)은 "불(芾)은 태고적 폐슬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면복에는 '불(芾)'이라고 부르고, 기타 복식에는 '필(韠)'이라고 한다. 가죽[韋]으로 만드는데, 위의 너비가 1척이고, 아래 너비가 2척이며 길이는 3척이다."[13]라고 전(箋)을 달았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폐슬은 옛사람들이 착용했던 복식의 근본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기(禮記)』『예운(禮運)』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注)에는 "옛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다. 먼저 앞을 가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뒤를 가리는 것을 알았다. 후대의 왕이 가죽을 직물[布帛]로 바꾸었지만 앞가리개만 남게 되었다. 옛 도(道)를 중시하고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또한 불(芾)의 기원을 말해주는 것이다."[14] 라는 내용이 있다. 불(芾)은 그 쓰임에 있어서 색상과 장문의 구분이 있는데, 천자는 붉은색[朱色]에 용(龍), 화(火), 산(山) 3장을 그린다. 명대 면복에 사용된 폐슬은 옛 제도와 흡사하였으며 단지 장식에 쓰인 장문이 시기에 따른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15] 착용시 폐슬 윗부분에 있는 끈고리[懸鼻]를 혁대에 통과시켜 몸 앞쪽에 고정시키면 된다(그림 6).

옥패(玉佩)는 대패(大佩) 또는 잡패(雜佩)라고 한다. 대패(大佩)란 곧 한 조(組)로 된 옥패식(玉佩飾)이다. 윗부분에 '형(衡/珩)'이라는 긴 호형(弧形)의 옥이 놓여 있고, 그 아래에 구슬[蠙珠]을 꿴 세 가닥의 줄을 늘어뜨린다. 양쪽 두 줄의 아래쪽에 각각 '황(璜)'이라는 반달형 모양의 옥을 하나씩 달고, '형'과 '황'의 사이에 '거(琚)'라는 네모난 옥을 단다. 가운데 줄의 아래에 타원형 옥인 '충아(冲牙)'를 달고 형과 충아 사이에는 원형 옥인 '우(瑀)'를 단다. '우(瑀)'와 양쪽의 '황(璜)' 및 기타 옥들 사이는 구슬[蠙珠]로 연결하는데, 이로써 곧 대패(大佩)가 구성된다(그림 7). 『시경(詩經)』『정풍(鄭風)-여왈계명(女曰鷄鳴)』에는 "그대가 오는 줄을 알면 잡패(雜佩)를 줄 것이며, 그대가 사랑하는 줄을 알면 잡패(雜佩)를 줄 것이며, 그대가 좋아하는 줄을 알면 잡패(雜佩)로 보답하리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한(漢)의 모형(毛亨)이 "잡패(雜佩)는 형(衡), 황(璜), 거(琚), 우(瑀), 충아(冲牙)의 종류이다."[16] 라고 전(傳)을 달았다. 명대의 옥패는 기본적으로 옛 제도와 비슷하다. 착용시 고리가 달려 있는 두 조(組)의 옥패를 몸 양옆 혁대에 하나씩 걸어 내려뜨린다(그림 8).

---

13) 『毛詩正義』(『十三經注疏』(1980). 中華書局. p.489.): "赤芾在股, 邪幅在下."; "芾, 太古蔽膝之象也. 晃服謂之'芾', 其它謂之'韠', 以韋爲之, 其制上廣一尺, 下廣二尺, 長三尺."

14) 『禮記正義』(『十三經注疏』(1980). 中華書局. p.1416.): "古者, 田魚而食, 因衣其皮. 先知蔽前, 後知蔽後. 後王易之以布帛, 而猶存其蔽前者. 重古道, 不忘本, 是亦說芾之元由也."

15) 명대 폐슬이 홍무연간에는 火, 山, 龍 3장, 영락연간에는 藻, 粉米, 黼, 黻 4장을, 가정 이후에는 龍, 火 2장이었다. 『明史』 卷六十六(1974). 中華書局. pp.1615-1618.

16) 『毛詩正義』(『十三經注疏』(1980). 中華書局. pp.340-341.): "知子之來之, 雜佩以贈之. 知子之順之, 雜佩以問之. 知子之好之, 雜佩以報之."; "雜佩, 珩、璜、琚、瑀、冲牙之類."

수(綬)는 신분을 나타내는 한대(漢代)의 인끈[印綬]에서 유래하였다. 한대의 수대(綬帶)는 다른 색상들로 구성된 좁은 띠이다. 색의 가짓수와 길이에 따라 신분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였다.[17] 수(隋), 당(唐), 양송(兩宋)을 거쳐 명대에 이르기까지 수(綬)는 다양한 색의 직물(織物)과 옥환(玉環)으로 구성된 장방형의 장식물로 변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명사(明史)』 『여복지(輿服志)』에 "(홍무 16년) 대수(大綬)는 적(赤) · 황(黃) · 흑(黑) · 백(白) · 표(縹) · 록(綠)의 여섯 가지 색이다. 소수(小綬)는 세 조(組)이고 색은 대수(大綬)와 같으며 사이에 옥환(玉環) 3개가 장식되어 있다."[18] 라는 내용이 있다. 착용시 혁대(革帶)로 대수(大綬) 윗부분의 고리를 통과한 후 이를 허리 뒤에 늘어뜨림으로써 혁대에 고정시킨다(그림 9).



그림 6. 폐슬(蔽膝)
From. 『大明會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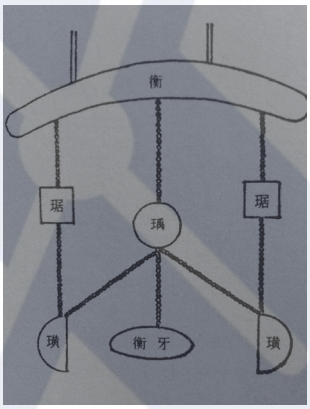


그림 7. 대패(大佩)



그림 8. 정릉(定陵)에서 출토된 옥패(玉佩)
From. 정릉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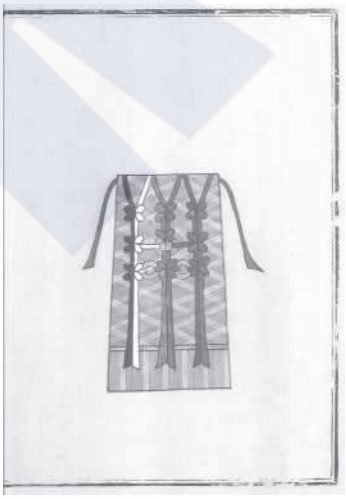


그림 9. 수(綬)
From. 『明宮冠服儀仗圖』

17) 자세한 내용은 『後漢書』 志第三十(1975). 中華書局. pp.2673-3674 참조.
18) 『大明會典』 卷六十, 臺灣新文豊出版公司影印明抄本(1976): "(洪武十六年)大綬六采, 用赤、黃、黑、白、縹、綠, 小綬三, 色同大綬, 間施三玉環."

5) 대대(大帶)와 혁대(革帶)

넓고 큰 면복은 띠로 허리 부분을 묶어야만 정간(精幹)하고 몸에 맞는데[合體], 대대가 곧 면복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 대대는 면복의 허리 위치에 착용하였으며, 사백(絲帛)으로 만들어진 넓은 띠이다. 주로 소색(素色)이며 띠와 테두리의 색상을 달리하여 등급의 차이를 나타냈다. 고대에 지존(至尊)인 천자(天子)가 사용한 대대는 소대(素帶)로써 안쪽은 붉은색[朱紅]이고전체가 곤연(滾緣: 가선)으로 처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예기(禮記)』『옥조(玉藻)』에 "천자는 소색의 띠이며 안감이 붉은색[朱]이며 곤연이 있다."[19] 라는 기록이 있다. 명대 황제의 대대 또한 겉은 소색이고 안은 붉은색[朱]이며 위 · 아래 양쪽 태두리는 각각 붉은색 비단[朱錦]과 녹색 비단[綠錦]으로 된 가선[緣邊]을 둘렀다[20](그림 10).

대대의 위에는 혁대를 묶었다. 『예기(禮記)』『옥조(玉藻)』의 '혁대(革帶)' 항목에 대하여 정현(鄭玄)은 "무릇 패물은 혁대에 묶는다."[21]라고 주(注)를 달았는데, 이는 혁대가 예복에서 하는 기능이 허리에 차는 물품을 거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초기의 혁대는 제작 기술[制作工藝]상의 이유 때문에 미관(美觀)상 좋지 못하였고, 한때는 대대로 싸서 사용하기도 하였다.[22] 즉, 착용 순서에 있어서 먼저 혁대를 착용하고 그 위에 대대를 착용하였다. 명대의 혁대는 이미 미적 측면의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대의 바깥쪽에 착용을 하였으며 이는 옥패(玉佩), 수(綬) 등을 거는 작용도 하였다. 『명사(明史)』『여복지(輿服志)』에 "(홍무) 혁대. 패옥의 길이가 3척 3촌이다."라는 기록이 있다[23](그림 11).

명대의 혁대의 사용과 관련하여 언급해 둘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다. 영락 연간에 있었던 한 차례의 면복제도 개정에서 명(明) 태종(太宗) 주체(朱棣)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면복의 구성물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혁대를 제외시켰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가정조(嘉靖朝)에 이르러서야 혁대를 면복 구성물 중의 하나로 복귀시켰다.[24]



그림 10. 대대(大帶)
From. 『明宮冠服儀仗圖』

그림 11. 혁대(革帶)
From. 『明宮冠服儀仗圖』

19) 『禮記正義』(『十三經注疏』(1980). 中華書局. pp.1480-1481.): "天子素帶, 朱裏, 終辟."
20) 『明史』 卷66(1974). 中華書局. p.1616 참조.
21) 『禮記正義』(『十三經注疏』(1980). 中華書局. p.1481.): "凡佩係於革帶."
22) 孫機: 『中國古代的革帶』(『中國古輿服論叢』(1993). 文物出版社. p.204.) 참조.
23) 『明史』 卷66(1974). 中華書局. p.1616: "(洪武) 革帶. 佩玉, 長三尺三寸."
24) 『明世宗實錄』 卷101, 臺灣歷史語言研究所据北平圖書館紅格抄本影印本(1962). pp.2386-2387 참조.

6) 버선[襪]과 석(舃)

면복에 사용되는 버선[襪]은 직물을 꿰매서 만든 긴 원통 모양의 버선이다. 버선[襪] 위쪽의 뒷부분에는 두 가닥의 끈[織帶]이 있는데 버선[襪]을 다리에 묶는 역할을 했다(그림 12).

석(舃)은 면복에 사용하는 겹바닥의 예혜(禮鞋)로서 바닥과 신울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바닥은 두 층으로 되어 있으며 위층은 가죽[皮]이나 비단[帛]을, 아래층은 나무를, 그리고 신울 부분은 직물[布帛]을 재료로 하였다. 신울과 바닥 사이는 곤연(滾緣, 가선)으로 장식된 '억(繶)' 이 있다. 혜(鞋) 앞부분의 좌우 양쪽에는 각각 하나의 작은 구멍이 있는데, '구(句)' 또는 '구(絇)' 라고 부른다. 이 구멍은 기(綦)를 거는 용도와 함께 신중할 것을 환기시키는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다. 신 입구 둘레에 장식된 가선이 있는데 이를 '준(純)' 이라고 한다. 천자와 제후들은 주로 붉은색[赤色]의 석을 착용한다. 『주례(周禮) · 천관(天官)』의 "구인(屨人)은 왕이나 왕후의 신는 구(屨)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데, 적석(赤舃), 흑석(黑舃), 적억(赤繶), 황억(黃繶), 청구(青句) 등을 만든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정현(鄭玄)은 "겹바닥은 '석(舃)' 이라고 하고, 홑바닥은 '구(屨)' 라고 한다. ……석은 세 등급이 있는데, 적석(赤舃)은 상등(上等)으로 면복에 신는 '석(舃)' 이다. 『시경』에 '왕이 한(韓)나라 제후에게 현곤(玄袞)과 적석(赤舃)을 하사하였다.' 라고 했으므로 제후가 왕과 같은 것이다."[25]라고 주(注)를 달았다.

명대 면복의 석도 붉은색[赤色]이었는데,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홍무(洪武) 시기에 출현한 '석(舃)' 으로 흰색 바닥, 붉은색 신울, 붉은색 신코, 그리고 흰색 안감으로 된 예혜(禮鞋)이다(그림 13). '그림 13' 의 '석(舃)' 은 송나라 섭숭의(聶崇義)의 『신정삼례도(新定三禮圖)』에 그려진 '석(舃)' 과 매우 흡사하다(그림 14). 이는 명 태조 주원장이 명대 초기에 복식제도를 제정할 당시 주로 당송 시기의 옛 제도를 이어받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대의 석과 형태가 좀 다르다. 바닥이나 안감의 색은 원래 그대로 유지를 하였으나 신목이 크게 높아졌으므로, 형태상 화(靴)의 모양에 근접한다. 이러한 형태의 '석(舃)' 은 영락 3년에 생겨나서 명대 후기까지 줄곧 유지되었다. 우리는 만력 15년에 책자의 형태로 간행된 『대명회전(大明會典)』에 기록된 황제 면복의 석(그림 15)과 만력 24년에 만력제가 일본 국왕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게 하사한 석(그림 16)을 통하여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상 명대 황제의 예복 중 등급이 가장 높은 면복을 중단, 외의 및 그 밖의 장식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명대 황제의 예복 중 가장 흔히 입는 예복인 상복의 착용 상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25) 『周禮注疏』(『十三經注疏』(1980). 中華書局. p.693.): "舃屨人掌王及后之服屨, 爲赤舃、黑舃、赤繶、黃繶、青句."; "復下曰舃, 單下曰屨. ……舃有三等, 赤舃爲上, 冕服之舃. 『詩』云: '王錫韓侯, 玄袞赤舃' , 則諸侯與王同."



그림 12. 면말(綿襪)
From. 정릉 출토



그림 13. 석(舃)(洪武)
From. 『明宮冠服儀仗圖』



그림 14. 석(舃)
From. 섭숭의(聶崇義)의 『三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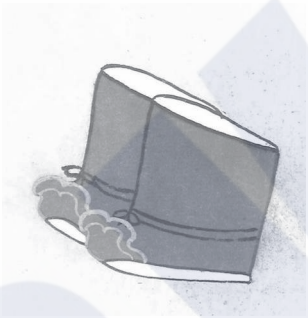


그림 15. 석(舃)(永樂)
From. 『明宮冠服儀仗圖』



그림 16. 萬曆帝가 豊臣秀吉에게 하사한 석
From. 日本京都博物館 소장

2. 상복(常服)

상복은 명대 황제의 예복 중 격이 비교적 낮으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착용하는 예복이다. 국가의 비교적 큰 행사 때 면복, 통천관복, 변복을 착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행사나 일상생활을 할 때 주로 상복(常服)을 착용한다. 예복 가운데서 격이 낮은 것인 만큼, 구성에 있어서도 보다 간단하다. 상복은 익선관(翼善冠), 중단(中單), 원령포(圓領袍), 혁대(革帶), 버선[襪], 화(靴)로 구성된다.

1) 익선관(翼善冠)

익선관은 절상건(折上巾)이라고도 부른다. 복두(幞頭)의 한 종류이며, 복각(幞脚)이 위로 접혀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송(宋)의 조언위(趙彦衛)는『운록만초(云麓漫鈔)』에서 "복두의 제도는 원래 '건(巾)' 이라고 하나 예전에는 '절(折)' 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3척의 조견(皂絹)을 뒤로 하여 머리를 감쌌다.진송(晉宋) 때는 '막(幕)' 이라고 불렀다. 후주(後周) 무제(武帝) 때 네 각을 잘라내고 '복두(幞頭)' 로 명명하였는데, 매일 머리에 감쌌다. 또 '절상건(折上巾)' 이라고도 한다. ……두 각은 앞면 위쪽에 고정했는데 이는 '무(武)' 를 본받은 것이고, 두 각은 뒤로 늘어뜨렸는데 이는

'문(文)'을 본받은 것이다."[26]라고 하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당(唐) 태종(太宗)이 최초로 이것을 착용했다고 한다.[27] 명대의 익선관은 오사(烏紗)를 겉감으로 하고 절각(折角)은 위로 향하며, 명대 중후기에는 관체(冠體) 뒤턱의 앞면에 금룡(金龍)이 장식된 경우가 많았다(그림 17). 『명사(明史)』 『여복지(輿服志)』에 "황제 상복. 홍무 3년에 정하였다. 오사절각향상건(烏紗折角向上巾)이다. ……영락 3년에 다시 정하였다. 관은 오사(烏紗)로 덮고 뿔을 꺾어 위로 향하게 한다. 그 후에 '익선관(翼善冠)'이라고 명명하였다."[28]라는 기록이 있다. 익선관은 관혈(冠穴)이 깊으므로 이를 고정시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필요없이 직접 착용이 가능하다.



그림 17. 익선관(복제품)
From. 정릉 출토

2) 중단(中單)

명대 황제가 착용하는 상복의 받침옷[衬衣]도 또한 교령우임(交領右衽)의 것이며 흰색이 주를 이룬다. 착용법은 면복의 중단과 같다.

3) 원령포(圓領袍)

원령우임(圓領右衽)의 형태이며, 보통 소매가 좁고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온다. 깃의 형태가 전통적인 교령(交領) 형태의 예복과는 크게 구분된다. 이는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한대(漢代)에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에 유입된 것이다. 문헌과 고고학적인 자료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원령포(圓領袍)는 일찍 수대(隋代)로부터 중국의 관복으로 사용되었다.[29] 그리고 당대(唐代)에는 이와 관련하여 "당(唐) 고조(高祖) 때에 이르러 자황색[赭黃] 포와 건대(巾帶)를 상복으로 하였다. ……친왕(親王)이나 3품, 그리고 이왕후(二王後)는 자색의 대과능라(大科綾羅)를 착용하고, 5품 이상은 붉은색[朱]의

26) (宋)趙彦衛(1998). 『云麓漫鈔』 卷三. 中華書局. p.39: "幞頭之制, 本曰巾, 古亦曰折, 以三尺皂絹向後裹發, 晉宋曰幕. 後周武帝遂裁出四脚, 名曰幞頭, 逐日就頭裹之. 又名折上巾, ……二角係於上前, 法武也; 二角垂於後, 法文也."

27) 『당회요(唐會要)·여복(輿服)』 상(上)에는 "貞觀八年五月七日, 太宗初服翼善冠."이라는 내용이 있다. 『唐會要』(上冊) 卷31(1955). 中華書局股份有限公司. p.578.

28) 『明史』 卷66(1974). 中華書局. p.1620: "皇帝常服. 洪武三年定, 烏紗折角向上巾. ……永樂三年更定, 冠以烏紗冒之, 折角向上, 其後名翼善冠."

29) 『구당서(舊唐書)·여복지(輿服志)』에는 "(燕服)隋代帝王貴臣, 多服黃文綾袍, 烏紗帽, 九環帶, 烏皮六合靴. 百官常服, 同於匹庶, 皆著黃袍, 出入殿省. 天子朝服亦如之, 惟加十三環以爲差異."라는 기록이 있다. 『舊唐書』 卷45(1975). 中華書局. p.1951.

소과능라(小科綾羅)를 착용한다. 6품, 7품은 녹색을, 8품, 9품은 청색을 착용한다."[30]라는 기록이 발견된다(그림 18). 그러나 문헌에서 이러한 둥근 깃의 호복(胡服)을 '원령(圓領)'이라고 직접적으로 기술하기 시작한 것은 송대(宋代)부터이다. 『송사(宋史)』의 기록에 따르면, "난삼(襴衫)은 백포(白布)로 만들며 깃이 둥글고 소매가 크다. 아래에는 횡란(橫襴)을 두어 하상(下裳)을 상징하게 했고, 허리부분에 주름이 있다."[31]고 한다. 그 이후로 원령포는 줄곧 요(遼), 금(金), 원(元), 명(明) 등 시기에 연속해서 관복으로 사용되었다. 명대의 원령포가 황제에게는 상복으로 사용되었지만, 관원들에게 있어서는 공복(公服)과 상복 두 가지 용도로 쓰였다. 명대에 사용된 원령포는 트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두 종류가 있는데, 트임이 없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황제의 원령 상복은 주로 황색(黃色)이 사용되었는데, 청색(靑色: 짙은 남색[深藍])과 같은 기타 색이 사용된 경우도 있다. 포(袍)의 앞뒤와 양어깨 부분에는 가로 놓이거나 바로 놓인(或行或正) 반룡(盤龍)이 장식되어 있다[32](그림 19).

원령포는 깃이 원령(圓領)의 형태이므로 면복과 같은 교령(交領) 형태의 옷과 그 착장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 고름[織帶]과 매듭단추[扣袢]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착장한다. 우측 소금(小襟: 안길)의 깃 끝부분에 두 가닥의 고름[織帶]이 있는데, 우선 소금을 왼쪽으로 두른 후에 깃에 달린 고름과 포(袍) 안쪽의 고름을 서로 결합한다(그림 20). 이는 교령 예복의 착장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 다음, 왼쪽의 대금(大襟: 겉길)을 목 앞을 지나 오른쪽으로 두르는데, 깃에 장착된 숫단추[扣袢]와 포(袍)의 어깨 부분에 장착된 암단추[扣鼻]을 서로 결합한다(그림 21). 이로써 원령포의 착장이 마무리된다.



그림 18. 원령포를 입은 당대(唐代) 남자
From. 陝西唐墓 출토 벽화



그림 19. 용무늬가 장식된 황제의 상복
From. 『明宮冠服儀仗圖』

30) 『新唐書』 卷24(1975). 中華書局. p.527: "至唐高祖, 以赭黃袍、巾帶爲常服. ……親王及三品、二王後服大科綾羅, 色用紫. 五品以上服小科綾羅, 色用朱. 六品、七品服用綠. 八品、九品服用靑……."
31) 『宋史』 卷153(1977). 中華書局. p.3579: "襴衫, 以白布爲之, 圓領大袖, 下施橫襴爲裳, 腰間有辟積."
32) 『大明會典』에 "常服(永樂三年)……袍黃色, 盤領(圓領)窄袖, 前後及兩肩各金織盤龍一."이라는 기록이 있다. (明)李東陽等撰·申時行等重修(1976). 『大明會典』 卷六十, 臺灣新文豊出版公司影印明抄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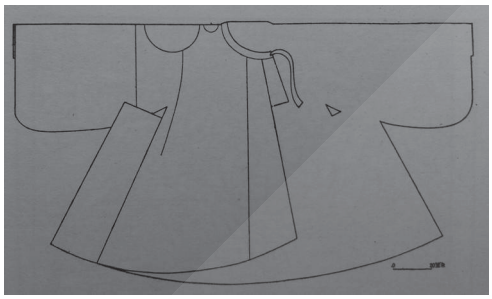


그림 20. 끈이 부착된 원령포
From. 정릉 보고서



그림 21. 어깨 위치에 구(扣)와 번(袢)이 결합된 명(明) 희종(熹宗)의 좌상(坐像)
From. 타이베이(台北) 고궁(故宮) 소장

4) 혁대(革帶)

복식 제도의 규정에 의하면 명대 황제의 상복에는 옥패(玉佩)나 수(綬)와 같은 예복의 부속품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혁대가 무게를 감당해야 할 부담이 없으므로 직접 허리에 착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명대 황제의 상복에 사용하는 혁대와 조신(朝臣)들이 착용하는 혁대는 재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색 또한 다르다. 황제의 혁대는 홍색 정(鞓)을 사용하고 신하들은 청색 정을 사용했다.

5) 버선[襪]

버선[襪]의 형태는 면복의 버선[襪]과 동일하나 색상에 대한 요구는 없다. 일반적으로 흰색이다.

6) 화(靴)

명대에 상복과 함께 착용하는 화(靴)는 중국 전통 복식이 아니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전국(戰國) 시대의 조무령왕(趙武靈王)이 호복(胡服)을 받아들이면서 전래된 것이라고 한다. 이른 시기의 화(靴)는 관복(官服)이 아닌 군복(軍服)과 함께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양가만(楊家灣)의 한묘(漢墓)에서 출토된 군사용(軍士俑)이 신고 있던 것이 곧 화(靴)이다(그림 22). 수대(隋代)에 이르러서야 화(靴)가 비로소 관복으로 사용되었다. 명대의 황제와 조신들이 착용한 화(靴) 양식은 거의 동일한데, 모두 신목이 높고 검은색[黑色]이다(그림 23).

지금까지 황제의 예복 중 면복과 상복의 구성 및 착장 순서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고고학적인 출토 유물과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회화 자료들을 중심으로 면복과 상복의 중단 속에 착용한 '내의(內衣)'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그림 22. 화(靴)를 신은 한용(漢俑)
From. 楊家灣 출토



그림 23. 상복 화(靴)
From. 『明宮冠服儀仗圖』

Ⅲ. 명대 황제 예복 중 내의에 대한 고찰과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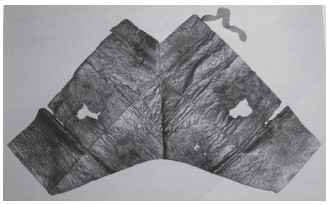
1. 고고학적 유물 현황

수많은 중국 고대 문헌 중에 제왕의 내의(內衣)와 관련된 기록은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들을 빌어 연구하고 고찰할 수밖에 없다. 대충 계산하더라도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에서 발견된 명대 무덤은 거의 1,000개에 달한다. 그중에 복식과 관련된 무덤은 100여 개인데, 본고에서 다루게 될 제왕의 예복, 특히 내의(內衣)의 착장법과 관련된 내용의 발굴은 더욱 적다. 이하는 필자가 명대 무덤 중에서 착장 순서나 착장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 것이다. 무덤의 주인은 제왕(帝王), 관원(官員), 향신(鄕紳) 등으로서 옷의 등급, 품질, 풍속에 등에 있어서 일정한 사회적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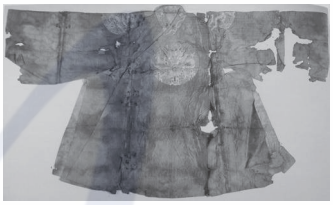
1) 고찰 대상 1: 북경(北京) 명대(明代) 정릉(定陵) 만력황제(萬曆皇帝)의 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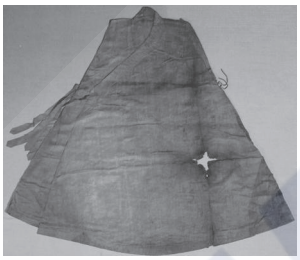
정릉(定陵)은 고고학사에서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발굴한 황제의 능묘(陵墓)이다. 출토된 복식에는 홑[單], 겹[夾], 솜[棉]의 사계절 옷 총 385건이 있다.[33] 이중 만력제와 관련된 복식은 관건(冠巾), 의포(衣袍), 상고(裳褲), 폐슬(蔽膝), 옥대(玉帶), 행전[膝襪], 버선[襪], 화(靴) 등이 있다. 출토 당시 만력제가 착용하고 있었던 복식은 익선관(翼善冠), 원령포(圓領袍), 중단(中單), 바지[褲], 옥대(玉帶), 화(靴) 등으로 매우 적었다. 나머지는 모두 무덤의 부장품[隨葬品]으로 놓여있었다(그림 24).

3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等編著(1990). 『定陵』 上冊. 文物出版社. p.81.


바지[褲]


금익선관(金翼善冠)


용포(龍袍)


깃과 소매가 없는 받침옷


옥대(玉帶)


화(靴)

그림 24. 정릉에서 출토된 유물

2) 고찰 대상 2: 산동(山東) 명대(明代) 노황왕(魯荒王) 주단(朱檀)의 무덤

1970년에 발굴된 노황왕(魯荒王)의 무덤에서 다양한 사계절 복식 80여 건이 출토되었다. 이중에는 관(冠), 건(巾), 모(帽), 포(袍) 및 포를 만드는데 쓰인 옷감, 바지[褲], 대과(帶銙), 버선[襪]을 만드는데 쓰인 옷감, 깔창(鞋墊) 등이 포함된다(그림 25). 당시 주단(朱檀)의 몸에 착용하고 있던 복식으로 상복인 원령포 한 벌, 교령내의(交領內衣) 한 벌과 옥대(玉帶) 하나뿐이다.[34)]

34) 山東省博物館等編著(2014). 『魯荒王墓』 上冊. 文物出版社. pp.285, 292.



그림 25. 노황왕(魯荒王)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3) 고찰 대상 3: 강서(江西) 익선왕(益善王) 주익인(朱翊鈏) 부부의 합장묘(合葬墓)

1979년에 발굴된 명대 익선왕 주익인 부부의 합장묘이다. 관(冠), 포(袍), 예살(曳撒), 화(靴), 금구(金扣)를 포함하여 홑[單], 겹[夾]으로 된 복식 10여 건이 출토되었다. 당시 주익인이 입고 있었던 것은 용포(龍袍), 옥대(玉帶)와 원통 모양의 목이 높은 화[高筒靴]이다[35](그림 26).

35) 江西省博物館等編著(2010). 『江西明代藩王墓』. 文物出版社. p.134.



그림 26. 익왕(益王)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4) 고찰 대상 4: 강소(江蘇) 태주(泰州) 명대(明代) 서번(徐蕃) 부부의 합장묘(合葬墓)

1981년에 발굴된 명대 서번 부부의 합장묘이다. 비록 명대 제왕의 무덤은 아니지만, 묘주인은 명대 공부(工部) 우시랑(右侍郎)을 지냈던 높은 관직의 사람이다. 무덤의 발굴이 비교적 규범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출토 당시의 복식 상황에 대한 기록도 비교적 소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대 제왕 복식의 착장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참고할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묘에서 출토된 남자 복식으로는 건(巾), 포(袍), 삼(衫), 오(襖), 철릭[帖裏], 상(裳), 바지[褲], 요대(腰帶), 행전[膝襪], 버선[襪], 화(靴) 등이 있다. 홑[單], 겹[夾], 솜[棉]으로 된 사계절 복식을 묘주인 서번(徐蕃)이 전부 착용하고 있었으며, 이중 의(衣)와 상(裳)만 하더라도 여덟 벌이 된다[36](그림 27).

36) "泰州博物館(1986).『江蘇泰州市明代徐蕃夫婦墓清理簡報』,『文物』, 第9期"에 실림.



방건(方巾), 요대(腰帶), 장삼(長衫), 오(襖)



보복(補服)



상(裳), 바지[褲], 행전[膝襨], 화(靴)



철릭[帖裏]

그림 27. 강소(江蘇) 서번(徐蕃)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5) 고찰 대상 5: 호북(湖北) 장무(張懋) 부부의 합장묘(合葬墓)

1983년에 발굴된 지방 향신(鄕紳) 장무 부부의 합장묘로서 명대 백성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이 또한 무덤이 발굴이 규범적으로 이루어졌고 출토 복식에 대한 기록도 비교적 자세하게 되어 있다. 출토된 남자 복식에는 건(巾), 포(袍), 철릭[帖裏], 상(裳), 바지[褲], 요대(腰帶), 버선[襪], 혜(鞋)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홑[單], 솜[棉]으로 된 복식들이었으며 발굴 당시 모두 묘주인인 장무가 직접 착용하고 있었다. 이 또한 여덟 벌이다[37](그림 28).

37)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編著(2007). 『張懋夫婦合葬墓』. 科學出版社. pp.14-20.



그림 28. 장무(張懋)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2. 예복의 중단 속에는 기타 내의(內衣)를 착용했을까?

이 문제를 답하기에 앞서 내의(內衣)의 역사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고대 사람들은 내의도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내의 중 상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선진(先秦) 시대에 몸에 닿는 내의(內衣)는 흔히 '설의(褻衣)'라고 하였다. 『순자(荀子)』『예론(禮論)』의 "설의(褻衣)의 밖에 세 벌의 외의(外衣)를 입고 홀판(笏板)을 요대(腰帶)에 사이에 끼워 넣으며 요대(腰帶)를 조르는 고리를 따로 두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왕선겸(王先謙) "설의는 몸에 직접 닿는 옷이다."[38]라고 주(注)를 달았다. 한대(漢代) 내의의 상의는 '한유(汗襦)', '한의(汗衣)', '택(澤)', '유(襦)' 등으로 불렸다. 『방언(方言)』에 "한유(漢襦)는 …… 함곡관(函谷關)으로부터 동쪽 지역에서는 갑유(甲襦)라고 한다."[39]라고 되어 있다. 또한 『석명(釋名)』『석의복(釋衣服)』의 "한의(汗衣)는 몸과 가까우며 한구(汗垢)를 흡수하는 옷이다. 『시경』에서는 이를 '택(澤)'이라고 부르는데, 하였는데, 한택(汗澤)을 흡수하는 것이다."라는 기록에 대하여 필원(畢阮)은 "『詩經(시경)』『秦風(진풍)-舞衣(무의)』에 '그대와 '택(澤)'을 함께 한다'라는 기록이 있고, 정씨(鄭氏)는 '택(澤)은 설의(褻衣)로서 때와 가깝다.'라는 내용의 전(箋)을 달았으며, ……『광아(廣雅)』에는 '택포(澤袍)는 장유(長襦)이다'[40]라는 기록이 있다."는 내용의 소(疏)를 달았다.

본고에서 살펴본 다섯 무덤의 묘주인은 제왕이든 기타 계층의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남성 묘주인들은 중단 안에 내의(內衣)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대(漢代)부터 송대(宋代)에 이르기까지의 문헌자료, 회화자료, 문물 등에는 내의에 관련된 기록이나 표현이 있었다. 예를 들면, 한대(漢代) 문헌 속에 기록된 '소의(小衣)', '포복(抱腹)', 즉 후대의 '두두(兜肚: 배두

38) (淸)王先謙撰·沈啸寅等整理(2012), 『荀子集解』 卷13, 中華書局, p.357.(원문 1: 說褻衣, 襲三稱, 縉紳而無鉤帶矣. 원문 2: 褻衣, 親身之衣也.)
39) (漢)楊雄撰·周祖謨校箋(1993), 『方言校箋』 4, 中華書局, p.26.(원문: 漢襦, ……自關而東謂之甲襦.)
40) (東漢)劉熙撰·(淸)畢阮疏証·王先謙補(2008), 『釋名疏証補』 卷5, 中華書局, pp.175-176: "汗衣, 近身受汗垢之衣. 『詩』謂之'澤', 受汗澤也." 畢阮 疏: "『詩·秦風·舞衣』: '與子同澤.' 鄭箋: '澤, 褻衣, 近汗垢.' ……『廣雅』: '澤袍, 長襦也.'"

렁이)' 가 그러하다.[41] 또 북제(北齊) 양자화(楊子華)의 『북제교서도(北齊校書圖)』에 사인(士人)이 '포복(抱腹)' 을 입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다(그림 29). 이외에 북송(北宋)의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에도 '포복(抱腹)' 을 입은 인물이 나타난다. 남송(南宋) 시기에도 북제(北齊) 시대와 유사한 남성의 내의가 발견된다. 강소(江蘇) 금단(金壇) 주우(周瑀)의 무덤에서 곧 이와 유사한 남성의 내의가 출토되었다[42](그림 30). 남성 내의의 착장 풍속이 명대에 이르러 변화가 일어난 듯하다. '포복(抱腹)' 과 같은 내의는 고사하고 이보다 크고 긴 반소매류 내의마저도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지 명대 소설에 실려 있는 삽화나 춘궁화(春宮畵) 속에 일부가 반영되었을 뿐이다. 기타 그림이나 출토 유물에서는 유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이를 대신하여 나타난 것이 곧 장의(長衣)류의 내의이다. 그러나 이러한 풍속은 명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라 당대(唐代) 이후부터 줄곧 보이던 것이다. 예를 들면, 당(唐) 손위(孫位)의 『고일도(高逸圖)』에는 건(巾)을 쓰고 더위를 피하는 남자가 나타나는데, 무더운 날씨 때문에 외의(外衣)를 벗어 몸에 걸치고 있다. 벌거벗은 몸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내의(內衣)는 입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1). 이외에 오대(五代)의 고굉중(顧閎中)의 『한희재야연도(韓熙載夜宴圖)』, 송(宋) 무명씨의 『유마도(維摩圖)』, 원(元) 전선(錢選)의 『부취도(扶醉圖)』, 명(明) 선종(宣宗) 주첨기(朱瞻基)의 『무후고와도(武侯高臥圖)』, 명(明) 진홍수(陳洪綬)의 『인물도(人物圖)』(그림 32) 등과 같은 자료들에 출현하는 주인공들의 복식들에서도 중의(中衣) 속에 입는 '포복(抱腹)' 류의 '설의(褻衣)' 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실례들을 통하여 우리는 짧은 형태의 내상의(內上衣)를 입는 풍속이 명대에 그다지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몸에 직접 닿는 내의를 선택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길이가 긴 단의(單衣)를 더욱 선호하였다. 이는 아마 보다 간편하고 편리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내의를 착용하는 풍속은 명대에 이미 어느 정도 변화를 겪었으며, 기장이 보다 긴 형태의 내의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림 29. 포복(抱腹)을 입고 있는 사인(士人)
From. 『北齊校書圖』

41) "(東漢)劉熙撰·(淸)畢阮疏証·王先謙補(2008). 『釋名疏証補』 卷5. 中華書局. pp.171-172."에 실린 '小衣', '抱腹' 부분 참조.
42) "鎭江博物館等(1977). 『江蘇金壇南宋周瑀墓發掘簡報』, 『文物』, 第7期"에 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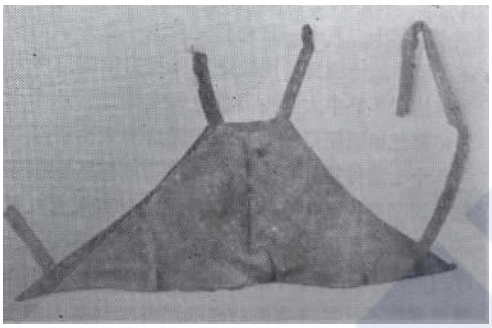


그림 30. 송대(宋代) 포복(抱腹)
From. 주우(周瑀) 무덤 출토 유물



그림 31. 위에 내의를 입지 않은 사인(士人)
From.『高逸圖』



그림 32-1. 오대(五代)
고굉중(顧閎中)의『韓熙載夜宴圖』



그림 32-2. 송(宋) 무명씨의
『維摩圖』



그림 32-3. 원(元) 전선(錢選)의
『扶醉圖』



그림 32-4. 명(明) 주첨기(朱瞻基)의『武侯高臥圖』



그림 32-5. 명(明) 진홍수(陳洪綬)의『人物圖』

그림 32. 위에 내의를 착용하지 않은 역대 인물의 화상(畫像)

이어서 내의 중 '아랫도리[下裳]'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내의의 아랫도리[下裳]는 주로 '바지[褲]'를 의미한다. 옛날에는 '고(絝)' 또는 '고(袴)'라고도 썼다. 『설문(說文)』에 "고(絝)는 경의(脛衣)이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단옥재(段玉裁)는 이에 대하여 "오늘날의 이른바 투고(套褲)이다. 좌우 양쪽에 각각 하나의 가랑이가 있으며, 옷을 두 개의 가랑이로 나눈다."[43]라고 주(注)를 달았다. 그리고 한대(漢代)의 유희(劉熙)는 『석명(釋名) · 석의복(釋衣服)』에서 "고(絝)는 과(跨)이다. 다리에 하나씩 따로 끼워넣는다."[44]라고 하였다. 이상 두 문헌의 기록은 옛날의 바지[褲子]가 후세의 것과 달랐음을 의미한다. 당(襠)이 없는, 즉 개당(開襠: 밑이 트임)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그림 33). 서한(西漢)에 이르러서야 당(襠)이 있는 바지[褲子]가 나타났다. 『한서(漢書) · 상관황후전(上官皇后傳)』의 "곽광(霍光)은 상관황후(上官皇后)가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하여 후사를 잇기를 바랐다. 황제가 건강하지 못했으므로 주변 사람들과 의사들이 모두 곽광(霍光)의 의사를 맞추어 방사(房事)를 금할 것을 간언하였다. 비록 궁인(宮人)과 사령(使令)들이 모두 궁고(窮絝)와 다기대(多其帶) 차림이었으나……"라는 기록에 대하여 당(唐)의 안사고(顔師古)는 "궁고(窮絝)는 앞뒤에 당(襠)이 있는 것으로 가랑이 사이가 통하지 못한다."[45]라고 주(注)를 달았다.

이상 언급한 것은 당(襠)이 있거나 없는 두 종류의 바지[褲子]이다. 이들은 형태상 바짓가랑이 부분이 비교적 길다는 특징이 있다. 이외에 바짓가랑이 부분이 조금 짧은 종류의 바지[褲子]가 있는데, '곤(褌)' 또는 '독비곤(犢鼻褌)'이라고 부르며 합당고(合襠褲)에 속한다. 사유(史游)의 『급취편(急就篇)』에 나오는 '곤(褌)'에 대하여 당(唐)의 안사고(顔師古)는 "합당(合襠)을 곤(褌)이라고 하는데, 이는 몸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다."[46]라고 주(注)를 달았다. 『사기(史記)』『사마상여전(司馬相如傳)』에 서한(西漢)의 문부(文賦) 작가(作家)인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사랑을 좇아 탁문군(卓文君)과 함께 도망갔다가, 나중에 생활고에 못 이기게 되자 부부가 술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다. 노동의 편리함을 위하여 사마상여는 "독비곤(犢鼻褌)을 입고 보용(保庸)과 함께 거리에서 그릇을 씻으며 일을 하였다." 남조(南朝) 송(宋)의 배인(裴駰)은 그의 『집해(集解)』에서 위소(韋昭)의 말을 인용하여 "이제 3척의 천으로 독비(犢鼻)와 유사한 것을 만든다."[47]라고 하였다.

이러한 짧은 형태의 바지[褲子]를 착용하던 습관은 명대에 이르러 일부 변화를 겪은 듯하다. 짧은 형태의 '곤(褌)'은 여전히 명대 여성의 내의, 그리고 농민이나 도부(挑夫)와 같은 보통 남성 노동자의 겉옷으로 폭넓게 이용되었다. 예를 들면, 명대 구영(仇英)의 명대판(明代版)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에는 짧은 형태의 바지[褲子]를 착용한 노동자들이 대거 등장한다(그림 34). 그러나 '곤(褌)' 형태의 짧은 바지[褲子]를 남성의 내의로 착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드문 현상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선 논의에서 소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남성 내의의 아랫도리[下裳]로는 무엇을 착용했을까? 명대 문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명대의 생활백과(生活百科)류 서적에 그려진 삽도를 통하여 발견되는 바가 있었다. 예를 들면, 명대 왕기(王圻)의 『삼재도회(三才

43) (漢)許愼撰·(淸)段玉裁注(2006). 『說文解字注』 糸部. 浙江古籍出版社. p.654: "絝, 脛衣也."; "今所謂套褲也, 左右各一, 分衣兩脛."
44) 王先謙(1984). 『釋名疏証補』 卷五. 上海古籍出版社. p.252: "絝, 跨也, 兩股各跨別也."
45) 『漢書』 卷97(1975). 中華書局. p.2960; 光欲皇后擅寵有子, 帝時體不安, 左右及醫皆阿意, 言宜禁內, 雖宮人使令皆爲窮絝, 多其帶, ……; 窮絝, 有前後襠, 不得交通.
46) (漢)史游. 『急就篇』 卷2, 光緒6年, 福山王氏刊本; 合襠謂之褌, 最親身者也.
47) 『史記』 권11(1973). 中華書局. p.3000; 自着犢鼻褌與保庸雜作, 滌器於市中; 今三尺布作形如犢鼻矣.

圖會)』에 기록된 인체(人體) 삽도는 그 당시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었던 아랫도리[下裳]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중 비교적 많이 보이는 그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裳) 종류의 짧은 치마[短裙]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긴 형태의 바지[褲]이다(그림 35). 양자가 함께 내의 중 아랫도리[下裳]의 조합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살펴본 다섯 무덤에서 묘주인이 입고 있었던 하상의 모습과 흡사하다. 익선왕(益宣王)의 무덤에서는 바지[褲子]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외에 나머지 네 무덤에서는 모두 긴 바지[長褲]가 출토되었다. 그중 만력제(萬曆帝), 서번(徐蕃)과 장무(張懋)의 무덤에서 출토된 바지[褲子]는 모두 묘주인의 몸에 직접 닿은 채로 착용하였다. 길이는 95~116cm 사이였으며 합당(合襠) 형태이고 허리 부분에는 끈이 묶여 있었다. 이중 만력의 무덤에서 출토된 긴 바지[長褲]에서는 바지끈[褲帶]과 바지끈[褲帶]이 통과할 수 있는 고리[褲袢]가 달려 있었는데, 지금의 바지와 거의 다름이 없다(그림 36). 이외에 상(裳) 종류의 짧은 치마[短裙]도 발견되었다. 서번(徐蕃)과 장무(張懋)의 무덤에서는 길이 55.5cm와 63cm의 짧은 치마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삼재도회(三才圖會)』 삽도의 인물이 하상으로 착용했던 짧은 치마와 일치한 것이다. 그러나 몸과 직접 닿은 복식인 짧은 바지[短褲] 즉 '곤(褌)'은 다섯 개의 무덤 중 어느 것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외에 만력(萬曆)과 서번(徐蕃)의 묘에서 같지 않은 수량의 '행전[膝襪]'이 출토되었는데, 형태는 두 개의 곧은 통모양으로 나눠져 있고, 길이는 20~31cm 사이이다. 뒷부분에는 끈이 달려 있어 착용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작용을 한다(그림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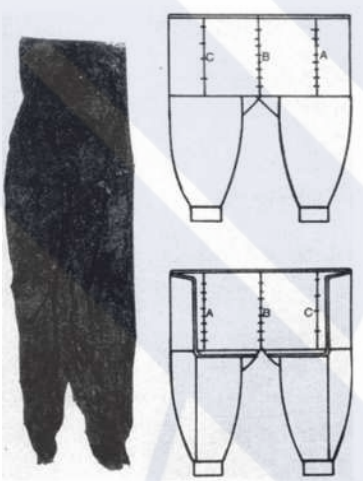


그림 33. 호북(湖北) 마산(馬山)의 전국(戰國) 시기 무덤에서 출토된 개당고(開襠褲)
From. 湖北 馬山 戰國墓 出土



그림 34. 짧은 바지[短褲]와 외의를 착용하고 있는 노동자
From. 명(明) 구영(仇英)의 『仿淸明上河圖』



그림 35-1. 짧은 치마[短裙]를 내의로 착용한 남자



그림 35-2. 긴 바지[長褲]를 내의로 착용한 남자

그림 35. 짧은 치마[短裙]와 긴 바지[長褲]를 내의로 착용한 남자
From.『三才圖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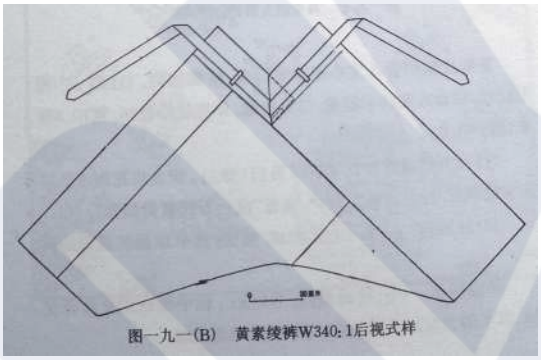


그림 36. 정릉에서 출토된 긴 바지[長褲] 형태의 내의
From. 정릉 보고서



그림 37. 서번(徐蕃)의 무덤에서 출토된 행전[膝襪]

3. 명대 황제 예복 중 내의 착장법에 대한 추정

본고에서 대상으로 살펴본 다섯 무덤 중 묘주인이 입고 있었던 내의, 그리고 명대 회화자료에서 관찰된 내의 관련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아래의 특징들이 포착된다.

(1) 묘주인의 몸에 직접 닿은 내의는 대부분 긴 형태의 상의와 하상이며, 이와 더불어 짧은 치마 형태의 하상도 일부 발견된다.

(2) 긴 형태의 내의 속에 '포복(抱腹)'이나 '곤(褌)'과 같은 옷을 착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3) 제왕이든 관서(官庶)와 같은 일반인이든 직접 몸에 닿은 채로 착용한 복식들에는 중단(中單), 철릭[帖裏], 장고(長褲), 단군(短裙) 등이 있었다. 이중에는 단의(單衣)와 바지[褲]를 함께 착용한 경우가 보다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정릉의 만력 황제와 호북

장무의 무덤에서 묘주인들은 중단(中單)과 장고(長褲)를 함께 착용하고 있었다. 강소 서번의 묘에서 남자 묘주인은 철릭[帖裏]과 장고(長褲)를 함께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삼재도회(三才圖會)』 삽도 인물은 단군(短裙)과 장고(長褲)를 함께 착용하였다. 한 가지 분명히 지적해야 할 점이라면, 묘주인들의 장의(長衣)는 모두 장고(長褲)의 바깥쪽에 착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장고(長褲) 속에 넣은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특징과 함께 회화자료들에서 찾아지는 증거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우리는 명대 황제 예복 중 내의의 착장법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내의의 상의는 긴 형태의 것이고 하상으로는 장고(長褲)와 단군(短裙)이 모두 가능했을 것이다. 다섯 무덤의 묘주인이 서로 다른 등급, 서로 다른 유형의 복식을 착용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긴 형태의 상의와 바지, 그리고 짧은 형태의 치마를 택했다. 송대(宋代) 이전에 자주 보였던 '포복(抱腹)', '곤(褌)'과 같은 내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은 명대의 회화자료에 표현된 내용과도 일치했으므로 본고의 결론을 위해 중요한 증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황제를 포함한 명대 남성의 예복에는 '포복(抱腹)'이나 '곤(褌)'과 같은 종류의 내의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의 검토 과정을 통하여 명대의 황제 및 기타 관민(官民)에게 있어서 예복의 내의로 긴 형태의 상의와 바지, 그리고 짧은 형태의 치마를 착용한 것은 하나의 풍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Ⅳ. 명대 황제 예복의 기본 조합

예관(禮冠)을 제외하고, 복식 착용에 있어서 다섯 무덤의 묘주인들로부터 또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곧 입고 있는 옷들이 벌수와 수량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수복(首服), 족의(足衣), 혁대(革帶)를 제외한 의(衣)와 상(裳)만 하더라도 많게는 여덟 벌이나 되는데, 서번 무덤과 장무 무덤의 묘주인이 그러하다. 그리고 적게는 한 벌만 입은 경우도 있는데, 익왕 주익인의 무덤이 그러하다. 이처럼 최대와 최소의 양 극단을 보이고 있는 착의 상황은 모두 명대 예복의 착의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닐 것이다.

첫째, 다섯 무덤의 묘주인들이 입고 있는 옷의 수량과 벌수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 상장의식(喪葬儀式)을 베푼 친척들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해 마련한 것일 수 있다. 고대 중국에는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처럼 하라(事死如事生)"는 풍속이 있다. 즉, 사람이 죽은 뒤 저승에서의 생활은 살아생전 인간 세상에서의 생활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죽은 사람을 위하여 사계절에 입을 옷을 충분히 준비해 주거나 또는 전부를 입혀주거나 아니면 일부를 입혀주고 일부는 수장품의 형식으로 관에 넣어주는 것 등의 행위가 바로 이와 연관된 것이다. 만력제와 노황왕의 무덤을 예로 살펴보더라도 일부는 몸에 착용한 채로, 그리고 일부 솜[棉]·겹[夾]·홑[單]의 옷 및 옷감들은 수장품의 형식으로 관에 놓여 있었다.[48] 그러나 서번과

4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等編著(1990). 『定陵』 上冊. 文物出版社. pp.43-95; 山東省博物館等編著, 『魯荒王墓』 上冊, 文物出版社, 2014年, 22-67쪽.

장무의 옷들은 모두 착용하고 있었다.

둘째, 내외 두 벌의 형태는 명대 예복 가운데서 가장 흔히 보이는 의상 조합이다. 옛날 사람들이 착용한 복식의 벌수를 살펴본다면, 밖으로 드러나는 상의(上衣)는 보통 1~3벌 사이이다. 이중 예복은 두 벌이 가장 보편적이다(그림 38). 이러한 모습은 고대의 인물화나 묘주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옷에서 더욱 일반적으로 드러나는데 만력제나 노왕이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 곧 용포(龍袍)와 중의(中衣)의 이중 조합이다. 만력의 무덤에서는 만력이 착용하고 있던 한 벌의 옷뿐만이 아니라, 세트로 구성된 예복 여러 벌이 더 발견되었는데 이들 또한 중단과 상의의 조합 형태인 것이다.[49] 이러한 현상들은 내외 두 벌의 예복 구성이 명대에는 아주 보편적이었음을 말해준다. 가을이나 겨울에 입는 예복의 경우 특별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길이가 다양한 겹옷[夾衣]이나 솜옷[綿衣/棉衣]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했다. 우리가 예로 든 다섯 무덤에서 출토된 사계절 복식이 바로 아주 명백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즉, 날씨가 어떻든 간에 착용한 복식의 벌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서번과 장무 무덤의 묘주인들처럼 여덟 벌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현실생활에서는 아주 드물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설신어(世說新語) · 숙혜(夙惠)』에 "진(晉) 효무제가 나이 12세였는데, 겨울인데 낮에 솜옷[複衣]을 입지 않고 단지 홑으로 된 저고리 5~6종류만 입었다."[50]라 했는데, 황제가 겨울에 면의(綿衣)를 입지 않고 오직 대여섯 벌의 단의(單衣)만 입고 있는 행위가 대신들을 걱정시켰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만약 이처럼 대여섯 벌을 입은 것이 비정상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졌다면 서번과 같은 묘주인이 살아생전에 여덟 벌을 입은 데 대해서는 보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외에 고고학적인 관찰이나 역대 회화 자료들에서도 많아야 서너 벌(그림 39) 정도의 옷을 걸쳤을 뿐이다. 따라서 더 많이 입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림 38-1. 송대 황제의 초상
From. 타이베이 고궁 소장



그림 38-2. 명(明) 세종(世宗)의 화상(畵像)
From. 타이베이 고궁 소장

그림 38. 내외 두 벌의 상의(上衣)를 착용한 황제의 초상

49) 자세한 내용은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等編著(1990). 『定陵』 上冊. 文物出版社. pp.255-257의 표 참조.
50) (南朝宋)劉義慶等撰·徐震堮校箋(1884). 『世說新語』 卷下. 中華書局. p.324: "晉孝武年十二, 時冬天, 晝日不着複衣, 但着單練衫五六重."



그림 39-1. 여러 벌의 상의를 입은 한용(漢俑)
From. 江陵 鳳凰山 167墓 出土



그림 39-2. 세 벌의 상의를 입고 있는 송(宋) 휘종(徽宗)의 『聽琴圖』



그림 39-3. 네 벌의 상의를 입고 있는 명(明) 성조(成祖)의 좌상(坐像)
From. 타이베이 고궁 소장

그림 39. 여러 벌의 상의를 입은 인물상

셋째, 중단(中單)은 절반의 예복이다. 중단은 예복 가운데서도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극히 적고, 또한 그 기능에 있어서도 받침옷이나 땀을 흡수하는 정도의 옷으로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전통 예복 중에서 공식적인 복식 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예복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중단은 면복(冕服), 피변복(皮弁服), 무변복(武弁服), 상복(常服)과 같은 다수 예복의 받침옷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예복 기능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단은 전통 예복의 중요한 구성 부분의 하나로서 명대 초기에 태조 주원장(朱元璋)은 "한관(漢官)의 위의(威儀)를 되돌리자"[51]는 관념을 대대적으로 선양함으로써 예복에 쓰이는 중단은 반드시 전통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즉 중의는 반드시 교령우임(交領右衽)식이어야 하며 몸통 부분이 원대의 풍속처럼 주름이 잡힌 형태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또한 다섯 무덤 중 세 무덤에서 예복의 받침옷으로 중단을 이용한 원인이 된다.

넷째, 계절의 바뀜에 따라 옷을 교체하였다. 주지하듯이 중단의 기본형식은 교령우임(交領右衽)이며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은 중단의 깃 부분이다. 보다 표준적이라고 판단되는 두 벌의 예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후가 적합한 춘(春) · 하(夏) · 추(秋)는 그렇다 할지라도 한랭한 겨울에는 두 벌의 옷만으로 어떻게 추위를 견뎌냈을까? 혹자는 중단을 면의(綿衣)식으로 개량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솜[木花]이 들어간 옷은 중국의 복식 전통을 따른다면 마땅히 '중단(中單)'이 아닌 '오(襖)'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예복 제도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대의 제왕(帝王)과 관원들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을까?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는 명대 정릉에서 출토된 복식들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 만력 무덤에 대한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에서 '중단'일 것으로 추정된 특별한 형태의 옷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52] 이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깃과 소매가 없는 대금(對襟) 형태의 옷이다. 대금한 곳에는 마주 묶기 위한 세 쌍의 고름[織帶]이 달려 있었으며, 옷에는 솜[木

51) 『明太祖實錄』 卷26, 臺灣歷史語言研究所据北平圖書館紅格抄本影印本(1962), p.403: "恢復漢官威儀."

52) 발굴 보고서에는 "출토된 중단 재질은 단(緞), 주(紬), 능(綾)이 있다. 사(紗)는 없었으나 겹옷과 솜옷이 모두 있었다. 계절에 따라 홑옷, 겹옷, 솜옷을 적절하게 바꿔 입었는지, 그리고 중단(中單)으로 뭉뚱그려 지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等編著(1990), 『定陵』 上冊, 文物出版社, p.91." 참조.

花]이 들어 있었다(그림 40). 다른 한 종류는 깃이 없고 소매가 길며, 대금(對襟)에 끈이 달려 있는 겹옷 형태이다(그림 41). 명대 복식과 관련된 문헌들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예복들에 관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기록이 없다면, 또 어찌하여 황제의 무덤에서 여러 벌이나 발견이 되었을까? 이들은 아마 예복에서 방한 작용을 하는 받침옷 정도로 쓰였을 것이다. 이것을 착용함으로써 기후 변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깃이 없는 방한용 받침옷을 깃이 있는 예복과 중단의 사이에 착용함으로써, 중단과 깃이 겹쳐지는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방한의 목적도 이루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족의(足衣)의 착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다섯 무덤에서 출토된 족의로는 화(靴)와 운두혜(雲頭鞋)가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예복에 신는 신은 계절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버선[襪]을 통하여 온도의 변화를 조절했다. 예를 들면, 만력의 무덤에서는 홑[單] · 겹[夾] · 면(棉) 등 다양한 계절에 쓰이는 버선[襪]이 10족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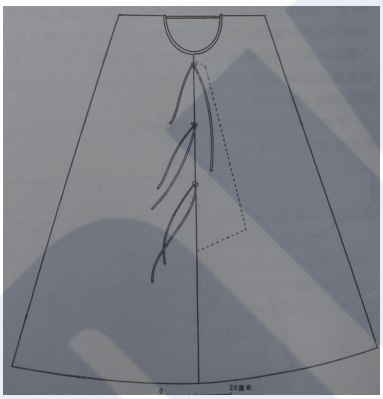


그림 40. 명(明) 정릉에서 출토된 깃과 소매가 없는 받침옷
From. 정릉 보고서



그림 41. 명(明) 정릉에서 출토된 깃이 없고 소매가 긴 형태의 받침옷
From. 정릉 보고서

V. 결 론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명대 황제 및 그 이외 사람들의 사계절에 따른 예복의 착용 상황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수복(首服)을 제외하고 예복 상의(上衣) 안에 입는 것은 받침용의 중단이었다. 기후의 변화에 따라 예복의 상의와 중단 사이에 면옷이나 겹[夾]옷(깃이 없고 소매가 길거나 짧은 형태의 옷 또는 깃과 소매가 모두 없는 받침옷)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하체에 착용하는 내의 또한 기후의 상황에 따라 홑[單] 또는 면으로 된 긴 바지와 짧은 치마를 착용하였으며, 외의(外衣)는 긴 형태의 하상이었다. 그리고 의(衣)와 상(裳)의 밖에는 혁대와 같은 부속품을 착용하였다. 예복에 착용하는 족의(足衣)는 화(靴)를 제외하면 모두 버선[襪]을 통하여 기후의 변화에 대응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들을 통하여 기후의 변화에 따라 조절할

있는 내 · 외의(內 · 外衣) 조합을 갖추게 된다. 또한 명대 예복의 벌수 및 내 · 외의 조합은 보통 1~3벌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중에서도 바깥의 예복과 예복 안의 중단으로 구성된 두 벌 조합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였다.

본문의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명대 황제 예복의 내 · 외의 상황과 조합을 2장의 내용과 함께 결부했을 때, 우리는 명대 황제의 면복과 상복의 실제 착용 상황을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면복(冕服)

① 수복(首服): 면관(冕冠).
② 상의(上衣):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순서(a.교령우임식의 소매가 긴 중단, b.기후의 변화에 따라 조절하는 받침옷(깃이 없고 소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대금(對襟)의 겹옷 또는 면옷), c.교령우임식의 상의.)
③ 하상(下裳):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순서(a.기후의 변화에 따라 조절하는 홑바지[單褲], 또는 솜바지[棉褲]와 단군(短裙)의 조합. b.긴 형태의 하상.)
④ 요대(腰帶):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순서(a.대대(大帶), b.혁대(革帶)(영락 3년~가정 8년에는 혁대를 착용하지 않았음.))
⑤ 부속품[附件]: 혁대로 무게를 부담함(a.몸 정면의 복부 위치에 폐슬을 착용함, b.몸 양옆 허리 위치에 각각 하나의 옥패(玉佩)를 착용함, c.몸 뒤쪽 허리 위치에 수(綬)를 착용함.)
⑥ 족의(足衣): a.버선[襪], b.석(舃)(그림 42)



그림 42. 면복을 착용하고 있는 진(晉) 무제(武帝)
From. 閻立本『歷代帝王圖』

2) 常服

① 수복(首服): 익선관(翼善冠)

② 상의(上衣):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순서(a.교령우임의 소매가 긴 중단, b.기후의 변화에 따라 조절하는 받침옷(깃이 없고 소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대금(對襟) 겹옷 또는 면옷), c.원령포(圓領袍))

③ 하의(下衣): 기후의 변화에 따라 조절하는 긴 형태의 홑바지[單褲] 또는 솜바지[棉褲].

④ 요대(腰帶): 혁대(革帶).

⑤ 족의(足衣): a.버선[襪], b.화(靴)(그림 43)

(보충 설명 : 오늘날 우리가 흔히 용포(龍袍)라고 하는 것이 명대 복식 제도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상복포(常服袍)' 라고 지칭해야 할 것이다. 복식 제도에서 용포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청대(淸代)부터이다. 청대에는 황제나 황태자만 용포 착용이 허락되었다. 이외의 황자(皇子)는 용포를 입지 못하고 오직 용괘(龍褂)만 입을 수 있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용포(龍袍)나 용괘(龍褂)의 착용이 금지되었다. 명대 황제의 예복 중에 용무늬가 많이 보이는 포(袍)로 '연(거)변복(燕(居)弁服)' 이 더 있다. '연변복(燕弁服)' 의 경우 옷의 앞뒤뿐만이 아니라 깃이나 소매 부분에도 용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그림 43. 상복을 입고 있는 명(明) 선종(宣宗)
From. 臺北故宮藏畵

마지막으로 황제 예복 중 유독 내의에 관한 기록이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면복을 포함하여 중국 고대의 각종 황제 예복은 역대 통치자나 예관(禮官), 유신(儒臣)들에 의해 끊임없이 수정되고 재해석되었다. 즉 형태면에서의 수정뿐만이 아니라 내용 해석에 있어서도 변화를 경험하였다. 사학자들에 의해 일일이 기록된 이러한 수정과 해석들은 우리가

역대 제왕의 예복을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앞선 논의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록된 내용은 황제의 통천관복(通天冠服), 피변복(皮弁服), 연변복(燕弁服), 상복(常服)의 중단, 외의, 부속품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외에 예복의 내의와 관련된 내용들은 문헌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아래의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이천년 동안 유가사상(儒家思想)이 중국 문화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고대 복식의 상당한 부분이 유가의 함축적[含蓄]이고 내향적[內斂]인 풍격을 반영하였다. 복식과 관련된 여러 문헌 기록들 속에는 단지 복식예의(服飾禮儀)나 예의(禮儀)와 관련된 내용만 기록했을 뿐, 보다 사적인 것인 내의(內衣)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심지어 선진(先秦)이나 명대에 전문적으로 황제의 각종 예복의 착장을 담당했던 '사복(司服)'이나 '상의감(尙衣監)'의 기록들에서도 내의에 관한 기록은 생략되고 있다. 『세설신어(世說新語)』『임탄(任誕)』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위진(魏晉) 죽림칠현(竹林七賢) 중의 한 사람이었던 원함(阮咸)은 7월 7일 쇄의일(晒衣日)에 햇볕에 쬘 만한 옷이 없어서 내고(內褲)를 대신으로 걸었다가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했다. 이에 개성이 넘쳤던 원함(阮咸)은 "용속함을 면치 못했다"[53]는 말로 응대하였다. 이 이야기는 중국 고대 사람들이 내의를 기피한 풍속이 있었음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일반 백성의 내의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꺼려하는데, 황제의 예복으로 사용되었던 내의는 더할 나위 없이 개인의 은밀한 부분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둘째, 중국 고대 사람들이 내의를 개인의 은밀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의식은 직접적으로 역사 문헌의 기록에 영향을 주었다. 각 시대의 문헌 속에서 설령 내의에 관한 기록이 찾아진다고 하더라도 예복과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된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은 간고한 노동, 찌들어져가는 생활, 또는 체면을 세울 수 없는 차림 등과 관련된 맥락에서 보인다. 예를 들면, 위에서도 언급했던 사마상여가 생활의 핍박에 못 이겨 '독비곤(犢鼻褌)' 차림으로 노동했다는 이야기나 구영(仇英)의 명대판(明代版)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에 나오는 노동자들이 그러하다. 일반 상황에서는 내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황제의 내의와 관련된 내용은 더더욱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커다란 금기였다.

이상의 두 가지 점이 아마도 황제 예복의 내의와 관련된 기록이 역대 문헌들 속에서 잘 찾아지지 않았던 일부 원인이었을 것이다.

53) (南朝宋)劉義慶等撰·徐震堮校箋(1884). 『世說新語』 卷下. 中華書局. p.393: "未能免俗."

참고문헌

『十三經注疏』(1980). 中華書局.
『史記』(1973). 中華書局.
『漢書』(1975). 中華書局.
『後漢書』(1975). 中華書局.
『舊唐書』(1975). 中華書局.
『新唐書』(1975). 中華書局.
『宋史』(1977). 中華書局.
『明史』(1974). 中華書局.
(淸)王先謙撰 · 沈啸寰等整理(2012).『荀子集解』. 中華書局.
(漢)楊雄撰 · 周祖謨校箋(1993).『方言校箋』. 中華書局.
(漢)史游.『急就篇』, 光緖六年, 福山王氏刊本.
(漢)許愼撰 · (淸)段玉裁注(2006).『說文解字注』. 浙江古籍出版社.
(東漢)劉熙撰 · (淸)畢阮疏証 · 王先謙補(2008).『釋名疏証補』. 中華書局.
(南朝宋)劉義慶等撰 · 徐震堮校箋(1884).『世說新語』. 中華書局.
『唐會要』(1955). 中華書局股份有限公司.
(宋)趙彦衛(1998).『云麓漫鈔』. 中華書局.
『明實錄』, 臺灣歷史語言研究所据北平圖書館紅格抄本影印本(1962).
(明)申時行等(1976).『大明會典』, 臺灣新文豊出版公司影印明抄本.
(明)王圻等(1988).『三才圖會』. 上海古籍出版社.
鎭江博物館等(1977).『江蘇金壇南宋周瑀墓發掘簡報』,『文物』第7期.
泰州博物館(1986).『江蘇泰州市明代徐蕃夫婦墓淸理簡報』,『文物』, 第9期.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等編著(1990).『定陵』. 文物出版社.
孫機(1993).『中國古代的革帶』,『中國古輿服論叢』. 文化出版社.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編著(2007).『張懋夫婦合葬墓』. 科學出版社.
江西省博物館等編(2010).『江西明代藩王墓』. 文物出版社.
山東省博物館等編著(2014).『魯荒王墓』. 文物出版社.

Study on the Wearing of the Imperial Traditional Attire in the Ming Dynasty

- Focusing on the emperor's Myoenbok and Sangbok -

Zhao Lianshang
Institute of history,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The emperor's robe represents the highest rating in the ancient Chinese attires. Emperor's robes whose features are different from that of each other not only concentrate the institution, courtesy, culture, and aesthetic appreciation on one spot but also show well the image of emperor's power in the feudal country. The solemn and colorful Myoenbok, King's ceremonial attire and the practical Sangbok, King's everyday attire are considered the most typical robe. Rulers of many generations preferred Myeonbok by its distinctive quality and rich symbolism since the establishment of Myeonbok institution in Zhou Dynasty, which continued consistently to the late Ming Dynasty. Practical Sangbok was incorporated into the Chinese official uniform system in Sui Dynasty, from which it became more and more popular. To date, the researches on the composition and history of robes, including Myeonbok and Sangbok have been conducted in depth and a certain achievements have been attained. However, the specific wearing of Emperor's robe, including Myeonbok and Sangbok, has hardly mentioned. Therefore, while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yeonbok and Sanbok which are the most typical in the Emperor's robes in Ming Dynasty, its primary purpose is to examine the wearing of the outer and inner attire of Emperor's robe and accessories in Ming Dynasty through the combined way of literatures and artifacts.

Keyword : Ming Dynasty, Emperor, Formal dress, Myeonbok, Sangbok, Clothes-wearing

일본 근대 황실전통의상의 구성과 착장에 대하여

우에키 도시코
분카가쿠엔대학

논문요약

일본 황실에는 긴 전통을 갖는 독자적인 복식이 있다. 이 황실전통의상은 중국에서 가져온 복식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의 풍토나 일본인의 사고방식 등에 맞춰 10세기 후반에 성립되었다. 그 특색은 넉넉한 형태의 의복을 몇 장이나 겹쳐 입는 것에 있다. 황실전통의상은 현대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근대 황실전통의상의 구성과 착장에 대하여 다루기로 하였다.

남성의 정장은「소쿠타이(束帯)」라고 칭한다. 처음에「고소데(小袖)」를 착용하고「오오쿠치(大口)」,「히토에(単)」,「아코메(袷)」,「우에노하카마(表袴)」,「시타가사네(下襲)」,「호(袍)」의 순서로 착용하며「세키타이(石帯)」로 마무리한다. 부속품에는「간무리(冠)」, 허리에 차는「다치(太刀)」와「히라오(平緒)」, 품에 넣는「히오우기(檜扇)」와「다토우가미(帖紙)」, 손에 드는「샤쿠(笏)」, 신을 것인「시토우즈(襪)」와「가(鞋)」가 있다.

여성의 정장은「이쓰쓰기누(五衣)・가라기누(唐衣)・모(裳)」라고 칭한다. 처음에「고소데(小袖)」를 착용하고「나가바사마(長袴)」를 입는다. 그 위에「히토에(単)」,「이쓰쓰기누(五衣)」,「우치기누(打衣)」,「우와기(表着)」의 순서로 겹쳐 입으며 그리고「가라기누」와「모」를 착용한다. 부속품으로는 머리 장식인「가미아게구(髪上具)」, 손에 드는「히오우기(檜扇)」가 있으며 버선인「시토우즈(襪)」가 있다.

주제어 : 일본 근대, 황실, 전통의상, 소쿠타이(束帯), 이쓰쓰기누(五衣), 가라기누(唐衣), 모(裳)

Ⅰ. 들어가며

일본 황실에는 긴 전통을 갖는 독자의 복식이 있다. 일본 전통복식이라고 하면 일반에게「기모노(着物)」가 알려져 있으나, 황실 전통의상은「기모노」와는 다른 계통의 복식이다. 황실 독자의 복식이 구성된 것은 10세기 후반의 일로 다소의 변천은 있었으나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왔다.

주어진 테마는「일본 근대 황실전통의상의 구성과 착장에 대하여」인데 우선 처음에 일본 황실 전통의상이란 어떠한 복식인가, 그 성립과 특색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그리고 근대 황실전통의상의 착용 상황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구성과 착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투고일 : 2016. 3. 14 심사개시일 : 2016. 3. 20 심사완료일 : 2016. 5. 7 게재확정일 : 2016. 5. 13

Ⅱ. 일본 황실전통의상이란?

1. 황실전통의상의 성립

일본 황실전통의상이 성립된 것은 10세기 후반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7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서 일본은 당(唐)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문화(大陸文化)의 섭취에 힘썼는데 10세기부터 12세기에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을 국풍문화(国風文化)라고 부른다. 한자(漢字)를 대신하여 가나(仮名) 문자가 나타나 국문학이 발전하고 회화나 조각, 건축 등도 일본적인 특징이 현저해지고 복식도 중국적인 것에서 일본적인 것으로 변화해 갔다. 일본은 선진국의 문화를 수용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의 풍토나 일본인의 사고방식, 관습 등을 더해 일본의 것으로 소화해 간다고 하는 역사가 있는데, 황실 전통의상의 성립도 이와 같은 역사의 흐름 안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아래의 사진은 13세기에 그려진 「삼십육가선에마키(三十六歌仙絵巻)」의 일부로 황실 전통의상을 착용한 유명한 가인(歌人)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1], 2[2]).



그림 1. 「소쿠타이(束帯)」를 착용한 오시코치노 미쓰네(凡河躬恒). 모사본(模写本)
From. 분카가쿠엔 복식박물관 (文化学園服飾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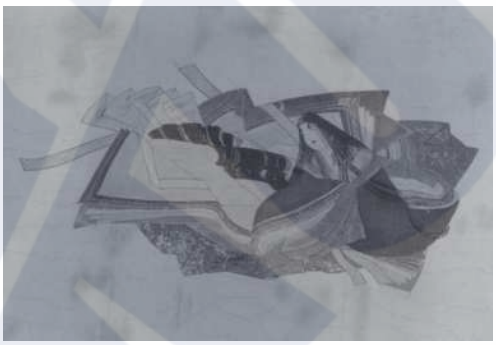


그림 2. 「당(唐)의상」을 착용한 고오기미(小大君). 모사본(模写本)
From. 분카가쿠엔 복식박물관 (文化学園服飾博物館) 소장

2. 황실 전통의상의 특색

10세기 후반에 성립된 황실 전통의상은 다소의 변천은 있으나 현대에 그대로 이어져 그 기본적인 특색은 변하지 않았다. 사진은 남성의 정장 「소쿠타이(束帯)」와 여성의 정장 「이쓰쓰기누(五衣)・가라기누(唐衣)・모(裳)」로 20세기 전반에 황족이 착용한 것이다. 황실 전통의상의 특색에 대하여 이 의상을 보면서 설명하고자 한다(그림 3, 4).

1) 898-922, 헤이안 시대(平安時代;794-1185) 전기의 가인・관인(官人)
2) 940-1005 or 950-1011, 헤이안 시대 중기의 여류 가인





그림 3. 소쿠타이(束帯).
가야노미야 쓰네노리(賀陽宮恒憲) 왕 착용
From. 분카가쿠엔 복식박물관 소장





그림 4. 이쓰쓰기누(五衣) · 가라기누(唐衣) · 모(裳).
야노미야 도시코(賀陽宮敏子) 왕비 착용
From. 분카가쿠엔 복식박물관 소장

황실 전통의상의 큰 특색은 넉넉한 형태의 의복을 몇 장이나 겹쳐 입는 것에 있다. 그리고 남녀 모두 하카마(袴;겉에 입는 주름 잡힌 하의(下衣))를 동반한 투피스 형식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되는 재료는 거의 견(絹)으로 문양은 기하학적인 것이 많고 이들은 조직에 의해 나타나며 단위 문양으로 반복되어 있다.

황실 전통의상은 색의 배합이 중시된 것도 큰 특징이다. 겹쳐 입는 의복의 색의 배합이나 한 장의 의복의 겉과 속의 색 배합을 중시하여 이것을 「가사네 이로메(重ね色目, 겹쳐 입는 색의 조화)」라고 부르고 있다.

「가사네 이로메」는 주로 일본의 사계절 각각의 자연의 색깔을 도입한 색의 배합으로 이 명칭에도 식물의 이름이 많이 사용되어 계절감이 담긴 것이었다. 또한 문양이나 색깔은 신분이나 연령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Ⅲ. 일본 근대의 황실 전통의상의 착용 상황

10세기 후반에 성립된 황실 전통의상은 13세기 이후에 정권이 궁정 귀족에서 무가(武家)로 바뀌자 점차 퇴색해가나, 궁정 귀족사회 안에서는 계승되어 장군이나 고위 무가의 예복으로서도

착용되었다. 또한 근세에는 단절되었던 옷차림을 부흥시키는 움직임도 보여 이것을 「재흥의 옷차림(ご再興の装束)」이라 부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 황실 전통의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19세기 중반 이후에 일본은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근대화를 추진, 복식에 있어서도 양복(洋服)이 주류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있으나 천황이나 귀족은 특별한 의식에 한정하여 황실 전통의상을 착용하였다. 이들 의식으로는 천황의 즉위식, 황족의 결혼식이나 성인식 등이 있는데 이때 황실 전통의상이 착용된 사진을 몇 점 소개한다.

1. 천황의 즉위식 의상

다음 2장의 사진은 쇼와(昭和) 천황의 즉위식 때의 황실전통의상이다. 왼쪽은 천황으로 남성의 정장인 「소쿠타이」를 착용하고 있다. 의복 색은 황로염(黄櫨染)이라고 부르는 노란색을 띤 갈색이고, 문양은 오동나무 · 대나무 · 봉황 · 기린을 조합한 것으로 이 색과 문양은 천황만 사용하는 것이다. 오른쪽 사진은 황후로 여성의 정장인 「이쓰쓰기누 · 가라기누 · 모」를 착용하고 있다(그림 5, 6).



그림 5. 「소쿠타이」를 착용한 쇼와(昭和) 천황. 1928년
From. 메이지천황 사진첩간행회(明治天皇御写真帖刊行会). (1928).『고타이레이기념사진첩 (御大礼記念写真帖)』



그림 6. 「이쓰쓰기누 · 가라기누 · 모」를 착용한 황후. 1928년
From. 메이지천황 사진첩간행회(明治天皇御写真帖刊行会). (1928).『고타이레이기념사진첩 (御大礼記念写真帖)』

다음의 사진도 즉위식에 착용된 황실전통의상이다. 모두 다이쇼(大正) 천황의 즉위식 때의 황족의 사진으로 남성은 「소쿠타이」, 여성은 「이쓰쓰기누 · 가라기누 · 모」를 착용하고 있다(그림 7, 8).

즉위식에 있어서는 황족은 남녀 각각 거의 같은 황실전통의상을 착용했다.



그림 7.「소쿠타이」를 착용한 후시미노미야 사다나루(伏見宮愛) 친왕(親王). 1915년
From. 博文館.(1915).『다이요(太陽) 고타이레이기념(御大礼記念)』



그림 8.「이쓰쓰기누 · 가라기누 · 모」를 착용한 히가시후시미노미야 가네코(周子) 비(妃). 1915년
From. 간다 도요호(神田豊穗)저 · 발행.(1935).
『황실황족성감(皇室皇族聖鑑) 다이쇼(大正) 篇』

2. 결혼식 의상

근대에 황실전통의상은 결혼식에도 착용되었다. 왼쪽 사진은 다이쇼 천황의 황후, 오른쪽은 쇼와천황의 황후의 결혼 때의 것으로 각각 정장인「이쓰쓰기누 · 가라기누 · 모」를 착용하고 있다(그림 9, 10).



그림 9.「이쓰쓰기누 · 가라기누 · 모」를 착용한
황태자비 세쓰코(節子). 1900년
From. 간다 도요호(神田豊穗)저 · 발행.(1935).
『황실황족성감(皇室皇族聖鑑) 다이쇼(大正) 篇』



그림 10.「이쓰쓰기누 · 가라기누 · 모」를 착용한
황태자비 나가코(良子). 1924년
From. 東京社.(1927).『황족화보(皇族画報)』

다음 사진도 결혼 때의 것이다. 2장 모두 황족의 것으로 즉위식과 마찬가지로 남성은「소쿠타이」, 여성은「이쓰쓰기누 · 가라기누 · 모」를 착용하고 있다(그림 11, 12).



그림 11.「소쿠타이」를 착용한 가야노미야 쓰네노리 왕과
「이쓰쓰기누 · 가라기누 · 모」를 착용한 도시코 왕비. 1921년
From. 간다 도요호(神田豊穗)저 · 발행.(1935).
『황실황족성감(皇室皇族聖鑑) 다이쇼(大正) 篇』



그림 12.「소쿠타이」를 착용한 구니노미야
아사아키라(久邇宮朝融) 왕과「이쓰쓰기누 · 가라기누 · 모」를
착용한 도모코(知(とも)子(こ)) 왕비. 1925년
From. 東京社.(1925).『황족화보(皇族画報)』

Ⅳ. 근대 황실전통 의상의 구성과 착장

다음은 본 논문의 주제인 「일본 근대 황실 전통의상의 구성과 착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황족 남자의 정장인 「소쿠타이」와 황족 여자의 정장인 「이쓰쓰기누 · 가라기누 · 모」를 중심으로 실물 자료의 사진과 착장 순서를 나타내는 사진(가와바타 사네히데(河鰭実英) 편, 1953)을 이용하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실물 자료의 사진은 이미 소개한 남성 정장인 「소쿠타이」와 여성 정장인 「이쓰쓰기누 · 가라기누 · 모」인데 일부는 이들 1세트 이외의 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들 의상은 착장 순서를 나타내는 사진 의상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다.

먼저 「소쿠타이」, 다음에 「이쓰쓰기누 · 가라기누 · 모」를 다루고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의복과 부속품을 소개하고 이들이 어떻게 장착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소쿠타이

1) 「소쿠타이」의 구성

소쿠타이를 구성하는 의복에는 「시로코소데(白小袖)」、「오오쿠치(大口)」、「히토에(単)」、「아코메(袷)」、「우에노하카마(表袴)」、「시타가사네(下襲)」、「호(袍)」가 있다. 그리고 부속품에는 쓰는 것인 「간무리(冠)」, 손에 드는 「샤쿠(笏)」、품에 넣는 「다토우가미(帖紙)」와 「히오우기(檜扇)」, 신을 것인 「시토우즈(襪)」와 「가(鞾)」、허리에 차는 「세키타이(石帯)」、「다치(太刀)」、「히라오(平緒)」가 있다.



가야노미야 쓰네노리 왕 착용
(시로코소데(白小袖;흰색 무지의 통소매 옷 · 시토우즈(襪,; 버선) 제외)
From. 분카가쿠엔복장박물관 소장

2) 「소쿠타이」의 착장

시로코소데(白小袖)



① 먼저 속옷으로 슈반(襦袢;속옷)을 몸에 걸치고 다음에 시로코소데를 착용한다.

시토우즈(襪)



② 시토우즈를 신는다.

간무리(冠)



③ 간무리를 쓴다.

오오쿠치(大口)



④「오오쿠치(大口)」라고 부르는 하카마(袴)를 입는다.「오오쿠치」는 원래 속옷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①~④
시로코소데 · 시토우즈 · 간무리 · 오오쿠치

히토에(単)



⑤「히토에(単)」를 입는다.「히토에」는 문자 그대로 안감이 없는 홑옷 차림의 의복이다.「오오쿠치」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속옷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다.

아코메(袷)



⑥「아코메(袷)」를 입는다.「아코메」는「히토에」와 같은 형태이나 안감이 붙어 있다. 본래는 방한(防寒)에 대비하여 필요한 매수를 겹쳐 입었다.

우에노하카마(表袴)



⑦「우에노하카마(表袴)」는「히토에」와「아코메」를 착용하기 전에 발만 통과해두고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끌어올려 허리 끈을 묶는다.「우에노하카마」는 앞 트임으로 앞뒤에 가에리마치(返り襠)라고 하는 가늘고 긴 띠로 된 천이 붙어 있어서 움직이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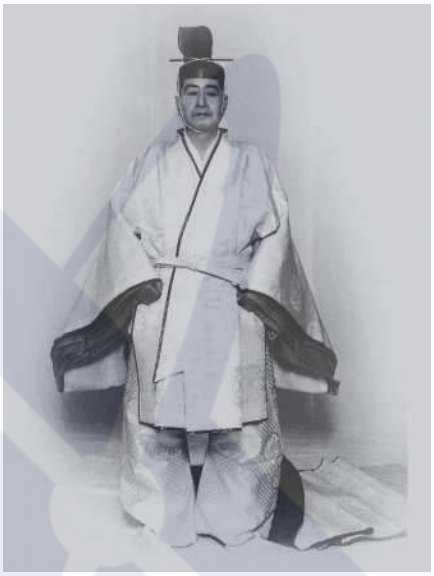


①~⑦
시로코소데 · 시토우즈 · 간무리 ·
오오쿠치 · 히토에 · 아코메 · 우에노하카마

시타가사네(下襲)



⑧「시타가사네(下襲)」를 입는다.「시타가사네」 앞부분은「히토에」나「아코메」와 같은 모양이나 뒷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이 부분을「교(裾)」라고 부르며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길이가 정해져 있다.



①~⑧
시로코소데 · 시토우즈 · 간무리 ·
오오쿠치 · 히토에 · 아코메 · 우에노하카마 · 시타가사네

호(袍)



⑨ 호「(袍)」를 입는다. 호는 마루에리(盤領;옷깃을 안자락의 윗부분으로부터 등으로 돌려, 겉자락의 위쪽 끝까지 원형으로 만든 방식) 폭이 넓고 길이가 긴 의복이다. 길은 2폭, 소매는 1폭 반으로 만들고 전신(前身)은 껴서 품을 만들고 뒷길은「가쿠부쿠로(格袋)」라고 하는 주머니 모양의 시접이 달려 있다. 호는 신분에 따라 색깔과 문양 정해져 있으며 근대 황족의 호는 색이 검고 문양은 운학(雲鶴)으로 되어 있다.



①~⑨
시로코소데 · 시토우즈 · 간무리 · 오오쿠치 · 히토에 ·
아코메 · 우에노하카마 · 시타가사네 · 호

3) 소쿠타이의 부속품

의복의 착장이 끝난 후에 부속품을 몸에 지닌다. 「세키타이(石帯)」는 「호」를 착용한 후에 허리에 차고 다음에 「다치(太刀)」를 「히라오(平緒)」라고 부르는 띠로 동여 매고 왼쪽 허리에 늘어뜨린다. 「히라오」는 다치를 늘어뜨리기 위함과 동시에 장식품이기도 하며 일부를 배 부분에 늘어뜨린다. 그 다음에 「다토우가미(帖紙)」에 「히오우기(檜扇)」를 끼워 품에 넣고 「샤쿠」를 지닌다. 그리고 부츠인 「가(鞾)」를 신는다.

샤쿠(笏)



위의(威儀)를 바로하기 위하여 손에 쥐는 것이다. 원래는 의식 등의 복잡한 작법을 종이에 써서 안쪽에 붙여 두기 위한 것이었다.

세키타이(石帯)



호(袍) 위에서 허리에 묶는 띠. 검은 옻칠 가죽 제품으로 마노나 비취 등이 달려 있다. 마노나 비취 등이 붙은 혼타이(本帯)라고 부르는 부분을 등에 대고 실을 서로 엮어서 만든 끈을 앞으로 돌려 묶고 다른 한 끈을 본체와 등 사이에 끼워 넣는다.



다치(太刀)



위의를 바로하기 위한 것으로 히라오(平緒)라고 부르는 띠를 사용하여 왼쪽 허리에 늘어뜨린다.

다토우가미(帖紙)



겹친 종이를 접어 히오우기(檜扇)를 끼워 품에 넣는다.

히라오(平緒)



다치를 늘어뜨리기 위한 띠이다. 원래는 한 줄의 띠였는데 허리에 두르는 부분과 장식을 위해 앞에 늘어뜨리는 부분으로 분리되게 되었다.

히오우기(檜扇)



노송나무 얇은 널빤지를 잇대어 꿰맨 부채. 황족의 경우에 널빤지 수가 25매로 정해져 있었다.

가(鞾)



가죽 검은 옻칠로 상방(上方) 꽃무늬 비단을 붙인다.
우에노하카마 안에 넣는다.

2.「이쓰쓰기누 · 가라기누 · 모」

1) 「이쓰쓰기누 · 가라기누 · 모」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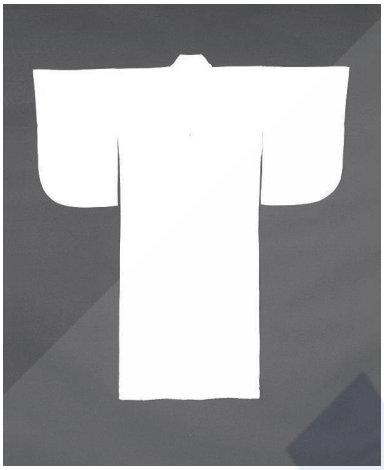
「이쓰쓰기누 · 가라기누 · 모」를 구성하는 의복에는 「시로코소데(白小袖)」, 「나가바사마(長袴)」, 「히토에(単)」, 「이쓰쓰기누(五衣)」, 「우치기누(打衣)」, 「우와기(表着)」, 「가라기누(唐衣)」, 「모(裳)」가 있고 머리 장식인 「가미아게구(髪上具)」, 시로코소데와 함께 사용하는 「하카마시타오비(袴下帯)」, 손에 쥐는 「히오우기(檜扇)」, 버선인 「시토우즈(襪)」가 있다.



가야노미야 도시코 왕비 착용
(나가바사마 (長袴;옷자락이 길어 발을 덮고도 뒤로 끌리는 하카마 · 시토우즈(襪; 버선) 제외)
From. 분카가쿠엔복장박물관 소장

2) 「이쓰쓰기누 · 가라기누 · 모」의 착장

시로코소데(白小袖)



① 먼저 머리를 묶는다. 시토우즈를 신고 속옷으로 슈반(襦袢;속옷), 시로코소데 등을 몸에 걸치는데 이들 착용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시로코소데는 하카마시타오비로 묶는다.

가미아게구(髪上具)



시토우즈(襪)



하카마시타오비(袴下帯)





① 가미아게구 · 시토우즈 · 시로코소데 · 하카마시타오비

나가바사마(長 袴)



② 「나가바사마」를 입는다. 나가바사마는 옷차림을 뒤로 길게 빼는 하카마이다. 줄도 길어 착용자의 오른쪽에서 한쪽 고리로 묶는다.



①, ② 가미아게구 · 시토우즈 · 시로코소데 · 하카마시타오비 · 나가바사마

히토에(単)



③「히토에(単)」를 입는다. 남성의「히토에」와 마찬가지로 안감이 달려있지 않은 홑옷 차림의 의복이다. 남성의「히토에」는 허리까지의 길이이나 여성의 것은 길고, 옷자락을 끈다.



①~③
가미아게구 · 시토우즈 · 시로코소데 · 하카마시타오비 · 나가바사마 · 히토에

이쓰쓰기누(五衣)



④「이쓰쓰기누(五衣)」를 입는다.「이쓰쓰기누」는 명칭대로 5장의 옷(우치키(袿;겹으로된 웃옷의 한가지)을 겹친 것인데, 몸통은 1장으로, 옷깃, 옷깃의 하단부터 옷자락 끝까지의사이, 소맷부리, 옷자락 등 5장이 겹치도록 만들어진다. 원래는 5장으로 한정되지 않고 더 많은 매수를 입는 경우도 있었는데, 5장으로 정해졌다.「이쓰쓰기누」는 색의 배합이 중요시되고 그 재료는 안감이 연둣빛 그라데이션이 된「연두빛 향기(萌黄の匂い)」라는 가사네이로메(重ね色目;여러옷색깔의 조화)가 사용되고 있다.



①~④
가미아게구 · 시토우즈 · 시로코소데 · 하카마시타오비 · 나가바사마 · 히토에 이쓰쓰기누

우치기누(打衣)



⑤「우치기누(打衣)」를 입는다.「우치기누」는 본래 다듬이돌로 때려서 광택과 부드러움을 낸 것에 의한 의복의 명칭이나, 곧 이와 같은 가공은 하지 않게 되었다. 근대에는 전체의 배색을 잡는 것으로 착용되고 있다.



① ~ ⑤
가미아게구 · 시토우즈 · 시로코소데 · 하카마시타오비 · 나가바사마 · 히토에 · 이쓰쓰기누 · 우치기누

우와기(表着)



⑥「우와기(表着)」를 입는다.「우와기」는 표면이 눈에 띄게 하기 위하여 화려한 직물이 사용되고 있다. 이 재료는「깃코몬(亀甲文;육각형을 기본으로 하는 기하학무늬)」의 붉은 색 바탕에「구멍에 8잎 국화문양」을 흰색으로 짜내며 안감에 노란 평견(平絹)을 사용하고 있다.



① ~ ⑥
가미아게구 · 시토우즈 · 시로코소데 · 하카마시타오비 · 나가바사마 · 히토에 · 이쓰쓰기누 · 우치기누 · 우와기

가라기누(唐衣)



⑦「가라기누」를 입는다.「가라기누」는 상반신에 입는 의복으로 뒤쪽 길이 앞쪽 길보다 짧게 만들어져있다. 또한 소매 폭은 아래에 입는 의복이 보이도록 폭이 좁게 되어 있다.

모(裳)



⑧「모」를 우시로고시(後ろ腰; 하카마의 뒤쪽의 허리끈이 허리에 닿는 부분)에 댄다.「고고시(小腰)」라고 부르는「가라기누」와 같은 보라색 직물의 끈을 앞에 둘러 묶는다.「모」에는 스리에(摺絵;염색에 쓰이는 풀을 천에 문질러 발라 만든 무늬)로 문양이 나타나고 뒤로 빼는 끈에는 자수가 놓여져 있다.

히오우기(檜扇)





⑨「히오우기(檜扇)」를 쥔다.「히오우기」는 노송나무의 얇은 널빤지를 잇대어 꿰맨 것으로, 6색의 장식끈이 달려 있다. 안에 금이나 은을 사용한 그림이 그려져 있으나 펼칠 수는 없다.



① ~ ⑦
가미아게구 · 시토우즈 · 시로코소데 · 하카마시타오비 · 나가바사마 · 히토에 · 이쓰쓰기누 · 우치기누 · 우와기 · 가라기누 · 모



① ~ ⑧
가미아게구 · 시토우즈 · 시로코소데 · 하카마시타오비 · 나가바사마 · 히토에 · 이쓰쓰기누 · 우치기누 · 우와기 · 가라기누 · 모 · 히오우기

V. 나오며

본고에서는 일본 황실전통의상의 성립이나 특색에 대하여 언급하고 일본 근대의 황실전통의상의 구성과 착장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일본 황실전통의상은 성립 당시와는 사회 상황이 현저히 바뀌었으나, 현대에도 천황을 비롯하여 황족, 궁중 관계자, 신직(神職) 등의 사이에서는 의식이나 제례 등에 착용되고 있다. 천 년이나 긴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본인의 사고 방식이나 미의식이 단적으로 나타난 복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지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황실전통의상을 현대 일반 일본인에게는 특별한 복식이어서 보통은 볼 수 없다.

참고문헌

河鰭実英編(1953). 装束図譜(故実叢書). 明治図書出版.
川上繁樹(1994). 公家の服飾(日本の美術339). 至文堂.
鈴木敬三(1995). 有識故実図典. 吉川弘文館.
仙石宗久(1995). 十二単のはなし. 婦女界出版社.
高田倭男(1995). 服装の歴史. 中央公論社.
近藤好和(2007). 装束の日本史　平安貴族は何を着ていたのか(平凡社新書) . 平凡社.

The Structure and Wearing of Japan's Imperial Traditional Attire in the second half of 19th century and the first half of 20th century

Toshiko Ueki
Bunka Gakuen University

Japan's Imperial Household has a long tradition of defined clothing and accessories. Although deriving from China, it was the combination of the Japanese philosophy and the climate in the second half of the 10th Century which the Imperial traditional dress was establishe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attire is layering of several pieces to create a loose form. The Imperial traditional attire's legacy has survived until the present age. Here is an explanation of the Imperial traditional attire in the second half of 19th century and the first half of 20th century will follow.

The males formal attire is referred as 'Sokutai'. First the 'Kosode' is worn. In the following order items of the 'Ōkuchi','Hitoe','Akome', 'Uenohakama','Shitagasane' and 'Hou' are worn followed by the 'Sekitai' tied around the waist. Additional items are the 'Kanmuri', 'Tachi', 'Hirao', 'Hiougi', 'Tatougami','Shaku' and 'Ka' on his feet.

The female attire is referred to as 'Itsutsuginu, Karaginu, Mo'. First the 'Kosode' is worn. Next the 'Nagabakama' is put on, layered on top by way of overlapping with the 'Hitoe', 'Itsutsuginu', 'Uchiginu' and finally the 'Uwagi'. In addition the 'Karaginu' and 'Mo' are worn. Additional are decorative items of the 'Kamiagegu' and 'Hiougi.

Key word : the second half of 19th century and the first half of 20th century in Japan, Imperial Household, traditional attire, Sokutai, Itsutsuginu, Karaginu, Mo

간행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한국복식』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간행횟수)『한국복식』은 매년 5월과 12월 총 2회 간행한다.

제 3 조 (논문투고)

①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고 심사가 완료된 원고만 게재한다.

② 공동 필자일 경우, 제1필자와 구분해서 표기해야 한다.

제 4 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한국복식』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인은 박물관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회는 편집인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그 자격은 전문연구자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인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연 2 회 이상 개최하며 투고 논문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과 기타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 5 조 (논문심사)

심사에 통과된 논문에 한해 발행인은『한국복식』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규정을 따른다.

제 6 조 (지적소유권)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박물관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제 7 조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약함)의 학술지인 『한국복식』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투고 논문은 다음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① 분야, 분량, 형식 등의 적합성 여부 검토.
②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 평가.

제 3 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②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③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

제 4 조 편집위원회를 통과한 논문은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심사를 받는다.
① 심사위원진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 과정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 심사위원은 다음 절차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⑴ 절차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소정양식에 기재한다.
② '게재불개(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⑵ 평가기준
① 논문의 독창성
② 학문적 기여도
③ 논문체계와 서술의 논리성
④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⑤ '원고작성지침'의 준수 여부

제 6 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① A · A · A / A · A · B : 게재

② A · A · C / A · B · B / A · B · / B · B · B / B · B · C : 수정 후 게재

③ A · A · D / A · B · D / A · C · C / A · C · D / A · D · D / B · B · D / B · C · C / B · C · D / C · C · C / C · C · D : 수정 후 재심사

④ B · D · D / C · D · D / D · D · D : 게재불가

제 7 조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 게재의 可、否를 통보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의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8 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9 조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투고규정

1. 투고대상

투고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에는 연구 논문, 자료 및 연구동향 소개 등이 포함 된다.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연구결과도 게재될 수 있다.

2. 투고 요령

① 투고논문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원고를 다음 주소로 발송한다(접수: ckafka@dankook.ac.kr).

②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논문의 제목과 투고자 인적사항(이름, 소속, 직위)은 국 · 영문으로 병기한다. 공동연구인 경우 주저자는 맨 앞에 넣고, 교신저자는 기호(*)로 표시한다.

③ 논문을 투고할 때는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줄 간격 160, 글자크기 11, 신명조, 편집용지는 한글 2007 이상 기본꼴). 이때 논문의 저자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④ 각주 · 참고문헌 · 기타 자료 인용과 표 작성을 비롯한 자세한 원고작성 요령은 『한국복식』 원고 작성 지침을 참조한다.

4. 원고채택 및 영문초록 작성

① 매호 간행 2개월 전에 도착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 절차(편집규정 참조)를 거친 뒤 게재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②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국문 및 영문 저자명(교신저자 표시)과 소속을 기재하고 워드프로그램 파일로 제출한다. 논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영문 저자명과 소속만 기재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경우, 필자는 국문 초록과 200 단어 이내의 영문 초록, 5개 이상의 국 · 영문 핵심어, 참고문헌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5. 기타

①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한국복식』 해당호 3부와 별쇄 10부를 필지에게 제공한다.

②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므로 타 인쇄물에 사용할 경우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본 학회에 보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투고자는 논문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문의 및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한국복식』 편집위원회

전화 : (031) 8005-2393 전자우편 ckafka@dankook.ac.kr

본문에서 인용한 출처를 표시할 때는 '저자-연도' 방식을 사용하고, 본문에서 인용된 출처의 전

참고문헌 작성 규정

체 목록을 맨 마지막에 참고문헌으로 표시한다.

1. 본문에서의 참고문헌 인용양식

⑴ 본문에서 인용자료의 저자를 밝히는 경우

본문 문장 중간에 인용출처를 밝히는 경우에는 「이름(연도)」로 표기하며 문장을 마친 후, 인용출처를 밝히는 경우에는 「(이름, 연도)」로 표기한다.

① 저자가 2명 이하인 경우는 저자명을 모두 적는다.

[예] Lee and Kim(2011)은 · · · 하였다.

하위문화의 특징은 · · · 이다(Lee & Kim, 2011).

② 저자가 3명~5명인 경우 처음 인용에서는 저자명을 모두 적는다.

[예] Hong, Johns, Smith, and Branden(2008)은 하위문화의 특징은 · · · 이라고 하였다.

동일한 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

[예] 하위문화의 특징은 · · · 이다(Hong et al., 2008).

③ 저자가 6명 이상인 경우

[예] Hong et al.(2008)은 · · ·

· · · 하였다(Hong et al., 2008).

⑵ 두 가지 이상 참고문헌을 괄호()안에서 밝히는 경우

앞 저자이름을 기준으로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예] 선행연구들(Albert & Kolins, 2006; Edwin, 1998; Pepperberg et al., 1990)은 · · ·

⑶ 저자가 기관인 경우

기관명을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기관명이 약자로 사용될 경우에는 첫 번째 인용에서는 기관명을 적은 후 약자를 괄호()안에 기재 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약자만 기재한다.

[예] 첫 번째 인용 시: National Institute of Retailing(NIS)는 패션산업의 · · · 라고 하였다(NIS, 1999).

[예] 두 번째 인용 시: NIS는 · · · 라고 하였다(NIS, 1999).

⑷ 번역서를 인용하는 경우

원저자명을 기재하고, 원저의 발행연도/역서의 발행연도를 같이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 · · 라고 하였다(Frings, 2003/2011).

(5) 저자가 없는 신문 · 잡지 기사의 경우

저자명 대신 기사의 제목을 따옴표로 표기한다. 단, 기사제목이 긴 경우에는 제목 앞 몇 글자를 keywords 형식으로 표시한다.

[예] · · · 이라고 하였다("New style comes", 2004).

(6) 저자가 없는 서적(사전, 안내책자, 보고서 등)의 경우

저자명 대신 서적제목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 · · 이라고 하였다(Complete gide to sewing, 1987).

(7) 다른 문헌에 인용된 자료를 재인용하는 경우

자료의 원저자명을 기재하고 어느 문헌에서 재인용했는지 괄호 안에 재인용의 출처를 밝힌다.

[예] Seidenberg and Mc Clelland의 연구(Coltheant et al. 재인용, 1993) · · ·

(8) 법조항인 경우

법령명의 경우 띄어쓰기를 하며「」안에 표기한다.

[예] · · ·「Mental Health Systems Act」(1988) · · ·

[예] · · · (「Mental Health Systems Act」, 1988) · · ·

(9) 특허인 경우

특허 번호와 특허권 발행 연도를 기재한다.

[예] · · · Korean Patent No. 10-1071481(2011) · · ·

· · · (U.S. Patent No. 123,445(1988)) · · ·

(10) 그림의 출처 인용

인용되는 그림 및 시각적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출처는 본문 속에서 표시된 그림(Fig.) 제목 밑에「From. 저자.(연도).p.-.http://www.costumeculture.or.kr」로 표기하고 참고문헌에는 참고문헌 정리양식에 따라 출처를 표기한다.

[예] Fig. 그림제목

From. 저자.(연도).p.10.http://www.costumeculture.or.kr

2. 참고문헌 정리양식

(1) 학회지

① 저자가 두 명 이하인 경우

[예] Pavio, A., & Chun, J.(1994). Perceptional comparisons. Journal of Social Issues, 72(3), 524-536.

②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예] Horowits, L. M., Post, D. L., French, R. S., Wallis, R. D., & Siegelman, E. Y.(2003). The Prototype in Abnormal Psychology. Memory & Cognition, 42(1), 62-75.

(2) 신문, 잡지 기사

① 저자가 있는 경우

[예] Gardner, H.(2006, 12. 11.). Do babies sing a universal song? Psychology Today, pp. 70-76.

② 저자가 없는 경우

[예] Study finds free care used more.(2007, April). APA Monitor, p. 15.

(3) 서적

① 저자가 개인인 경우 : 저자(연도). 책 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예] Frings, G. S.(2008). Fashion from concept consumer(9th ed.). Seoul: Sigmapress.

② 저자가 기관인 경우 : 기관명(연도). 책 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예] Korean Psychiatric Association(200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Seoul: Suhaksa.

③ 저자가 없는 경우 : 책 제목(연도). 출판도시: 출판사.

[예] College bound seniors(1979). Princeton, NJ: College Board.

④ 번역서인 경우 : 원저자명이 표제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원저자명과 발행연도를 먼저 기재하고, 역자명은 책 제목 다음 괄호( )안에 적는다.

[예] Cowell, A. R.(1986). The fashion theory (J. Yoon, Trans.). Seoul: Sigma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3)

(4) 편저에 포함된 인용문인 경우

[예] Letheridge, S., & Cannon, C. R.(Eds.)(2004). Bilinguel educatio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 York: Praeger.

(5) 영어가 아닌 책: 저자(연도). 책 제목[영어번역]. 출판도시: 출판사.

[예] Praget, J., & Inhelder, B.(2006). La genése de l'idée de hansard chez l'enfant [The Origin of the idea of danger in the child].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Hong, N. Y., Shin, H. S., & Choi, J. H.(2008). 아시아 전통복식 [Traditional Costumes of Asia]. Paju: Kyomunsa

(6) 학술대회 발표논문

① 발표논문집이 발간되는 경우: 저자(연도). 논문제목. 책 제목, 권, 페이지.

[예] Thumin, F. J., Craddick, R, A., & Birclay, A. G.(2010). Meaning and compatibility of a proposed corperate name and symbol. Proceeding of the 81st Annual Convention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 835-836.

② 발표논문집이 발간되지 않은 경우: 저자(발표연월). 논문제목. 행사명, 도시.

[예] Brener, J.(2005, October). Energy, information, and the control of heart rat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Psychophysiological Research, Madison, WI.

(7) 학위논문

① 박사학위논문

[예] Choi, G. M.(2004). Helplessness, depression, and mood in endstate renal disea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② 석사학위논문

[예] Peterson, J. F.(2009). Effective management trai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8) 재인용하는 경우, 참고문헌에는 본인이 참고한 재인용 문헌을 기재한다.

(9) 인터넷 자료는 URL전체를 기재한다.

[예] Hilts, P. J.(1999, February 16). In forecasting their emotions, most people flunk out. New York Times. Retrieved November 21, 2000, from http://www.nytimes.com.

(10) 법조항

① 판례인용

[예] Lessard v. Schmidt, 349 F. Supp. 1078 (E. D. Wis. 1972).
Durflinger v. Artiles, 563 F. Supp. 322 (D. Kan. 1981). aff'd, 727 F.2d 888 (10th Cir. 1984).

② 법령명은 띄어쓰기를 하며 「 」안에 표시한다.

[예] 「Mental Health Systems Act」. (1988). 42 U.S.C. § 9401.

(11) 특허

특허를 받은 발명가의 이름, 특허 정보를 검색한 공식출처를 기재한다.

[예] Smith, I. M.(1988). U.S. Patent No. 123,445. Washington, DC: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12. 비디오/ 필름

[예] Mass, J. B.(Producer), & Gluck, D. H.(Director).(1979). Deeper into hypnosis [fil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3.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규정은 '『한국복식』 연구윤리 규정' 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복식』 간행규정 및 편집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논문의 신규성 및 작성원칙

제 3 조 (논문의 신규성)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와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기존의 논문을 확대발전시킨 것은 그 사실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 4 조(인용방법)

① 논문과 저서 등을 인용할 때에는 "원고 작성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인용하여야한다.

② 전자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학술적인 권위가 인정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전자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병기하고, 가급적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해야 한다.

제 5 조(제재)

① 투고논문이 제3조,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는 개별적 인 심사 없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7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없으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이의를 받은 편집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제 6 조 (사후심사) 『한국복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 7 조 (사후심사의 요건)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 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①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한국복식』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②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될 만한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 8 조 (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①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사후 시마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겉봉에 '사후심사요청' 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직으로 한다.

제 9 조 (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 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제 10 조 (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 4 장 사후 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 11 조 (사후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사 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2 조 (질의서의 우송) 편집회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제 13 조 (답변서의 제출) 위 제12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엔 당사자가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 5 장 사후심사 결과의 조치

제 14 조 (사후심사 확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 부 터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 15 조 (사후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후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① 연구원 홈페이지 및 차호 『한국복식』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한국복식』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② 해당 논문 필자는 향후 5년간 본지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

제 6 장 제보자의 보호

제 17 조 (제보자의 보호)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심사 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18 조 (제보자 보호 규정의 위배에 대한 조치) 위 제17조의 규정을 위배한 자는 향후 5년간 본지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

제 7 장 이의 절차

제 19 조(이의당사자)

① 표절 또는 중복게재 등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 및 게재자와 신청자는 한국복식한국학연구원 원장에게 각각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20 조 (위원의 위촉) 원장은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판정을 내린 편집위원 등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21 조 (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판정과 관련된 자료를 원장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절차는 제4장과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확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8 장 보칙

제 23 조 (규정의 개정)

①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이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4 조 (보칙) 이 규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복식』 논문 투고 신청서

투고권호	제 집	접수번호		**접수일**	
제 목	국 문				
	영 문				
Keywords (5개 이내)	국 문				
	영 문				
제1저자 (주저자)	이름(한글)		이름(영어)		
	소속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 소				
공동저자1	이름(한글)		이름(영어)		
	소 속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 소				
공동저자2 성명, 소속 전화번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지에 게재될 경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 가지게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표저자 : (인 또는 서명)

*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오.

* 보내실곳 :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Tel: 031)8005-2389, Fax: 031)8021- 7157, E-mail: ckafka@dankook.ac.kr

투고관련 사항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 16890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석기념박물관
전화번호 : 031-8002-2393
F a x　　: 031-8021-7157
E-mail　 : ckafka@dankook.ac.kr (채정민)

韓國服飾　　第35號

찍은 날　2016年　5月　25日　印刷
펴낸 날　2016年　5月　30日　發行

發　　行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TEL : (031) 8005-2389, 2390
FAX : (031) 8021-7157

印　　刷　호진커뮤니케이션즈
TEL : 02-723-7741~2
FAX : 02-723-7743



발행일 : 2016. 5. 30